

연구보고서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 방안

김희걸 · 이연숙 · 김지윤 · 임미영 · 김희량 · 강현선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 월

연구진

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희걸 (교수, 가천대학교)

연구원 : 이연숙 (조교수, 화성의과학대학교)

연구원 : 김지윤 (교수, 가천대학교)

연구원 : 임미영 (교수, 서일대학교)

연구원 : 김희량 (조교수, 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 강현선 (조교수, 군장대학교)

요약문

- 연구기간 2023년 06월 ~ 2023년 10월
- 핵심단어 협력업체, 모기업, 매뉴얼, 산업보건, 소규모 사업장
- 연구과제명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 방안

1. 연구배경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규모 대비 높은 산업재해율을 나타내고 있고,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 이직율이 높아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안전보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안정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 모기업의 협력업체(도급사업장)에 대하여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모기업인 도급사업장에서 수급사업장인 협력업체에 대하여 직접 지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모기업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기업(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됨에 따라 모기업인 원청의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효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알아보고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보건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국내외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조사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를 파악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 연구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문회의와 연구회의를 운영하였고 모기업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국내외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제도 조사

매뉴얼에 반영할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을 확인하고,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조사 하였다. 우리나라 법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과 고용노동부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외국의 사례는 영국, 미국,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요구도는 모기업의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보건관리자 9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모기업과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관리 내용, 협력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효과적 보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뷰 결과 162개의 분석 대상 문항을 도출하고 이 문항에 대하여 115개의 하위개념을 도출하였다. 115개의 하위개념을 다시 유사한 개념을 합하여 3개 주제에 대하여 총 24개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관련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38명의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선정한 협력업체의 산업보건활동 28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기업 응답자의 경우 28개 항목 중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강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적합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105명, 70.5%),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101명, 67.8%), 배치 전 검진 실시 여부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수칙 게시(98명, 65.8%) 순으로 나타났고, 협력업체의 경우 적합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55명, 64.7%),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55명, 58.8%),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43명, 50.5%) 순으로 나타나 2순위까지 모기업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3) 매뉴얼 개발

매뉴얼은 문헌고찰, 요구도조사, 자문위원 및 연구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보건관리를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실제 수행하여야 할 활동 중심으로 43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매년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는 항목을 연 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항목별 시행월, 담당자, 모기업과 협

력해야 할 항목 등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수행 항목 중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매뉴얼로 제시하였다. 매뉴얼은 연중 실시해야 하는 43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쉽게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규모 협력업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10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협력업체 특성에 따라 모기업에서 확인하고 협력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2쪽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1쪽은 매뉴얼 활용목적과 내용, 작성주기, 매뉴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2쪽에는 해당 업무 수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매뉴얼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건설업 등 이외 업종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모기업-협력업체 우수사례 개발

우수사례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 산업보건 우수사례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사례 사업장은 제조업 4개 사업장, 서비스업 2개 사업장이었다. 사례 개발은 기존 우수사례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사례나 안전보건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굴하였다.

4. 연구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결과는 소규모 협력업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효과적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와는 차별화 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협력업체에서는 자율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매뉴얼이 개발되어 다수의 사업장에서 활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추후 매뉴얼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결과가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협력업체에서는 보건관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차근차근 보건관리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모기업에도 도움이 되며 협력업체 근로자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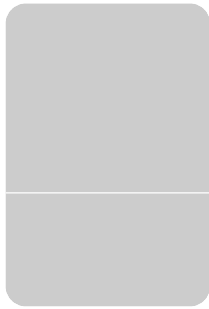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가천대학교 교수 김희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미영
 - ☎ 052) 703-0855
 - E-mail : cookmom@kosha.or.kr

목 차

I.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표	5
3. 용어의 정의	5
II. 연구방법	9
1. 연구과정	9
2. 연구추진체계	9
3. 연구방법	10
III. 국내·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17
1. 우리나라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17
2.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21

IV.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33
1. 포커스그룹 인터뷰	33
2. 설문조사	39
V.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47
1. 매뉴얼 개발 과정	47
2. 매뉴얼 개발 방향	48
3. 협력업체의 연중 보건관리 업무	49
4.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종류	51
5. 매뉴얼의 구성	52
6. 매뉴얼의 활용	53
VI.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57
1. 우수사례 사업장 개요	57
2. 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소개	61



목 차

VII. 결 론	71
1. 결론 및 제언	71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3
참고문헌	77
Abstract	83
부 록	89
1.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차근차근 매뉴얼)	89
2. 국내·외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138
3.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결과	160
4. 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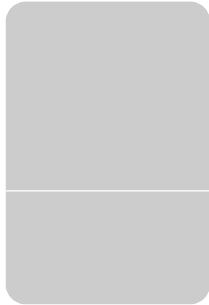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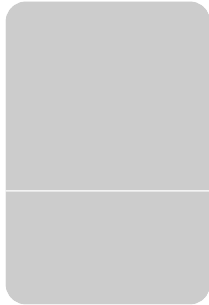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V-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석자 일반적 특성	34
〈표 IV-2〉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38
〈표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0
〈표 IV-4〉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보건관리 지원 요구	43
〈표 IV-5〉 모기업-협력업체-근로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44
〈표 V-1〉 소규모 협력업체 연중 보건관리 계획표	49
〈표 V-2〉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종류	52



그림목차

[그림 I-1]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	3
[그림 II-1] 연구과정	9
[그림 II-2]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II-3] 연구 협력 시스템	13
[그림 III-1]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평가 예시	23
[그림 III-2] 체크리스트 예시	24
[그림 IV-1] 협력업체 의사소통 흐름도	37
[그림 V-1] 매뉴얼 개발 과정	47
[그림 V-2] 체크리스트 예시	51
[그림 V-3]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예시	53
[그림 VI-1] 모기업-협력업체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결과	62
[그림 VI-2] 모기업-협력업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활동	63
[그림 VI-3] 모기업-협력업체 생활습관(걷기) 개선 활동	64
[그림 VI-4] 모기업-협력업체 생활습관(영양) 개선 활동	64
[그림 VI-5] 건강한 회사환경 조성 활동 사례	65
[그림 VI-6] 모기업-협력업체 마음건강 프로그램 활동 사례	65
[그림 VI-7] 모기업-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하는 작업환경 개선 활동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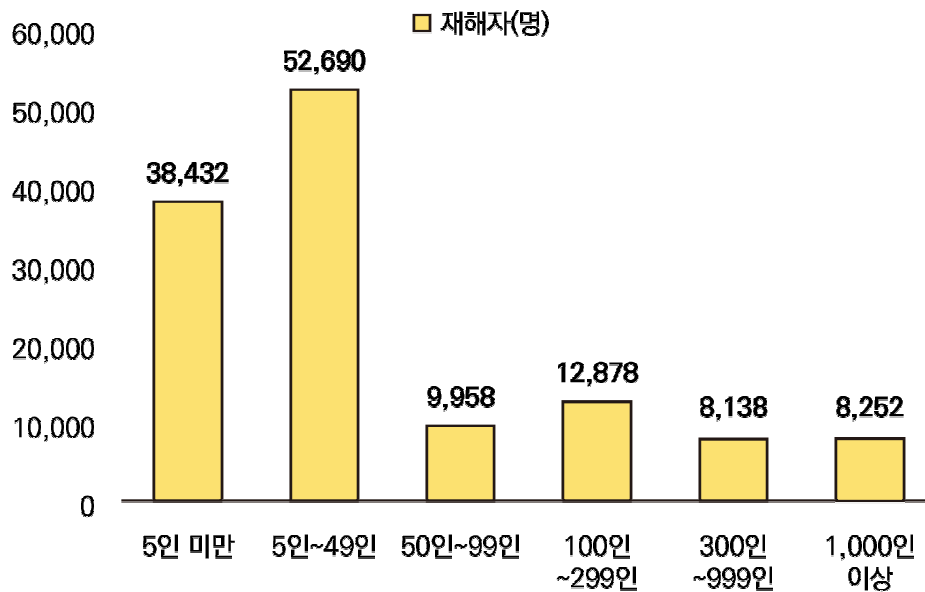
I. 서론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총 근로자수 20,173,615명 중 12,062,511명 (59.7%)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 규모도 재해자 130,34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91,12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0.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은 전체 평균 재해율이 0.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이 0.48%인 데 비하여 소규모 사업장 재해율은 0.8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1]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¹⁾

1) 출처 : 2022년 산업재해 통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보건관리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도 일부 유해·위험 업종에 한하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는 산업보건관리 위탁용역사업이나 전국에 23개의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 수에 비하여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 원청과 도급계약 등으로 계약되어 있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 상호 협력하여 보건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도급 등의 계약으로 모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기업(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주체는 모기업(원청)이며, 도급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므로 도급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기업(원청)에서 하도록 한 조치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모기업 내 뿐 아니라 지역 내 또는 전국에 산재한 경우도 있고,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모기업의 관리 범위도 업종,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여 모

업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도급업체에서는 수급사업장에 업무지시나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적인 문제도 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및 해외의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체계를 알아보고,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업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보건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표

- 국내·외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조사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를 파악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1) 모기업

이미 있던 기업에서 한 기업이 독립하여 나왔을 때, 그 모체가 되는 기업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본 연구에서는 제조·건설·용역 위탁 등을 맡겨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를 의미한다.²⁾

2) 협력업체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 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2) 안전보건공단(KOSHA),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 2022.12.31

수탁사업자와 원사업자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KOSHA, 2022,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

3)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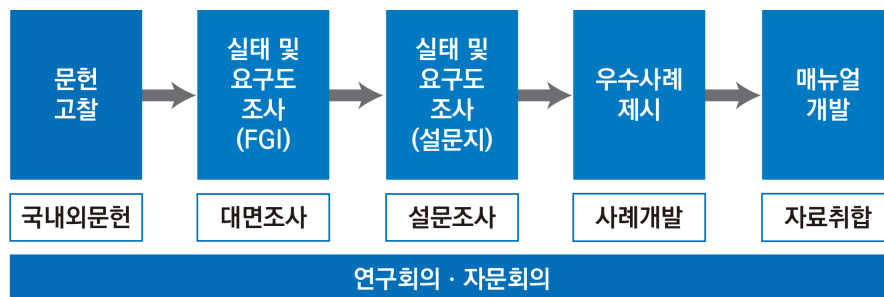
Ⅱ. 연구방법

.....

II. 연구방법

1. 연구과정

연구는 국내외 협력업체 보건관련 문헌고찰,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대한 요구도 조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등의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문헌고찰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요구도 조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모기업-협력업체 우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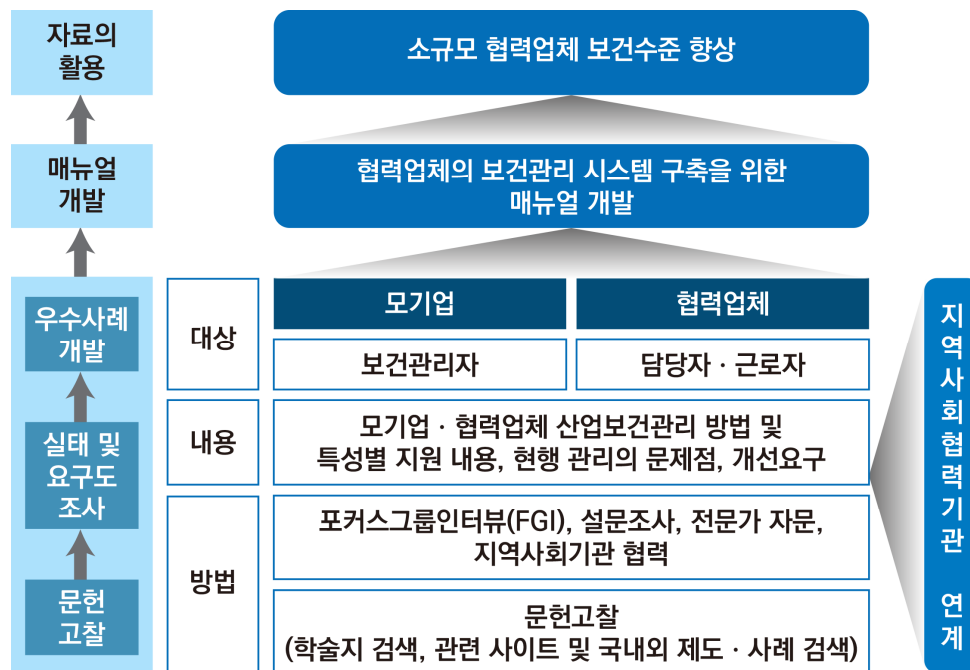


[그림 II-1] 연구과정

2. 연구추진체계

연구는 문헌고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서 쉽고 활용도 높은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였다. 문헌고찰은 학술지 검색, 관련 사이트 및 국내·외 제도, 사례 검색 등을 통하여 현재 국내외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관련 제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등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악을 위하여 보

건관리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보건관리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수사례는 보건관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과정과 안전보건강조주간의 우수사례 발표, 안전보건기관에서 추천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조사와 우수사례개발은 직업건강간호협회, 근로자건강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림 II-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방법

1) 국내 · 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제도 조사

우리나라 협력업체 관련 보건관리 제도를 도급사업장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소규모 사업장 및

협력업체 관련 제도를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검색, 관련 학술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국내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협력업체의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산업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관련 요구도 조사는 모기업의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포커스그룹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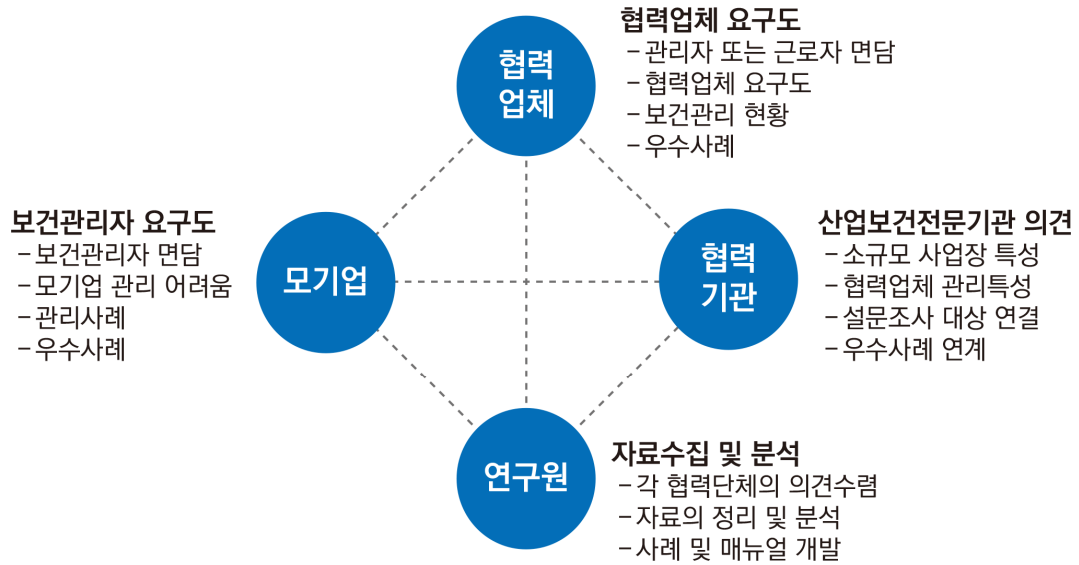
인터뷰는 연구원이 직접 대상자를 대면으로 만나 실시하였다. 모기업은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협력업체는 모기업에 속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뷰 대상 모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력업체 보건관리 경험이 있는 산업보건협회, 근로자건강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협력업체 관계자를 소개받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보건관리자의 시간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보건관리실에서 실시하기도 했으나, 주로 근무시간 외 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인터뷰가 가능한 조용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강조주간 등 여러 명이 한 번에 모이기 수월한 시간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동안에 핵심어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며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였다. 또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반복질문을 하였고, 연구원 간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모기업 보건관리자 9명, 협력업체 관계자는 3명이었다.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7명, 산업위생기사 2명이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직업건강간호협회와 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자협회의 협조를 통하여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소규모 사업장 및 협력업체 보건관리 관련 문헌고찰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보건관리 요구도를 중심으로 개발한 후, 연구회의와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주로 모기업에 관계되는 질문은 최소화시키고 협력업체에서 수행 가능한 보건관리 항목을 선정하는 문항 중심으로 수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8문항,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관련 87문항,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요구도 관련 1문항,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의사소통 관련 3문항,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관련 매뉴얼 개발 및 활용 관련 2문항 등 101문항이었다. 협력업체 보건관리 관련 89문항은 산업보건관리 항목으로의 적합성을 28개 항목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었으며 적합성, 관리주기, 담당자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구성한 것을 포함한 문항 수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간결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배치하였다.

3) 유관기관 협력

소규모 사업장 및 협력업체 특성,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보건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는 자체 보건관리 방안과 모기업에서의 지원 사항 등에 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모기업 보건관리자로부터는 면담을 통하여 협력업체 관리의 어려움과 관리 내용 및 개선안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였다. 산업보건전문기관은 직업건강간호협회,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II-3] 연구 협력 시스템

4) 회의체 운영

연구에 대한 계획과 수행과정의 점검 및 평가, 피드백 사항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하여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회의체는 연구회의와 자문회의로 구성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용역사업 담당자와 함께 개시회의를 진행하였고, 연구회의는 수시로 진행하였다. 자문회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위생기사, 보건관리자, 대학교수 등 4인으로 구성하였고 연구회의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거나 개별자문 등 수시로 자문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5) 연구분석

분석은 SAS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산업보건업무 요구도에 대한 분석은 협력업체와 모기업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기업 간 비교는 연속변수는 t검정, 명목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국내 · 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

Ⅲ. 국내·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1. 우리나라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협력업체관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①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 하도록 하고 있다. ②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③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도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명시하고 있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와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모기업의 보건관리자가 주로 협력업체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만하다 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및 교체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중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79조(협업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업체 구성에 대하여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협업체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③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에서는 작업장 순회점검 시기를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대하여는 2일에 1회 이상은 순회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의 업종에 대하여는 1주일에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4)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업체와의 공유 번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건책임자는 협력업체 선정 조건과 협력업체 관리 지침에 따라 세부 안을 마련해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침서에서는 안전보건분야에서의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상호지원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
- 협력업체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 각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 마련
- 단계별 의사소통 체계를 분명히 마련
- 계획대로 시행하는 노력을 상호 조율
- 역량 확보, 의사소통 방법, 비상 대응 절차 등 주요 사항 확인

이 지침서는 모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련 계획수립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책임소재를 결정하고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모기업은 관리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돕고 자체 인력 교육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업체 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 문서화된 안전보건 방침이 있는가?
- 독립된 안전관리 전담부서(인원)가 있는가?
- 작업절차 또는 특정한 안전 지침/지시가 있는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 종업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일반/특수)을 실시하는가?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체크리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 작업장의 공구와 도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작업자 위험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가?

5) 고용노동부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고자 하였다.

협력업체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기업 ·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1)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 · 외 협력업체

(2)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지원내용 :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 지원방법 : 모기업이 컨설팅 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 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정부(공단)와 모기업(매칭 지원 신청 모기업) 각 50% 비율로 분담

(3) 사업 내용¹⁾

- | | |
|-----------|-----------------------|
| ▪ 위험성 평가 | ▪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 · 이행 |
| ▪ 현장 기술지도 | ▪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
| ▪ 확인 기술지도 | ▪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

2.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및 정책

1) 영국

영국은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HSE는 직장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국의 국가 규제 기관이다. HSE에 의하면 모기업은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모기업과 협력

1) 자세한 사항은 부록으로 제시

업체 모두 건강 및 안전법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는 계약자를 고용할 때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적합한 하도급업체 선택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작업의 위험평가 : 위험 수준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름. 위험이 무엇이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위험 평가 수행 : 원청과 협력업체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함. 계약자는 계약된 작업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그런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고려
- 직원에게 정보, 지침 및 교육 제공. 위험 관련 통제 사항 협력업체에 전달. 계약자와 함께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지침 및 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작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책임자와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연락 장치 마련
- 계약자의 작업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통제에 대해 동의

(1) Health and Safety Guidance 159

건강 및 안전 절차에 협력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참여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 현장 규칙 및 안전 절차
- 작업복장
- 사용해야 하는 특수 장비
- 비상 시 해야 할 일
- 알람 소리, 알람 울림 방법 및 시기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	(a)	(b)	(c)
1. 우리는 현장에 누가 있는지 안다.	예	거의 대부분	가끔
2.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다.	그렇다	모른다	아니다
3. 협력업체와 업무 협의를 하기 전에 협력업체의 보건 및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확인한다.	항상	대체로	때때로
4. 보건 안전을 위한 협력업체의 업무과정을 조사하여 모기업 업무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항상	대체로	때때로
5. 우리는 계약자의 작업을 계획하고 각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항상	때때로	한 적 있음
6.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과 비상 절차를 알려준다.	반드시	때때로	드물게
7.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한다.	항상	때때로	드물게
8. 작업이 끝나면 협력업체와 보건 및 안전을 포함한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을 보관한다.	반드시	때때로	거의 안 함

합산 (a) = 8 (b) = 5 (c) = 1

다음 사이에 득점한 경우 :

56-64 매우 효과적

잘하고 있는 상태

35-55 개선 필요

일부 작업 개선이 필요함

8-34 시작해야 함

작업 개선을 실시하고 가이드에 따른 관리 필요

[그림 Ⅲ-1]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평가 예시

(2) Checklist

Health and Safety Guidance 159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현재 모기업의 접근방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합산 점수범위에 따라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 개선이 필요한 단계, 효과적이라고 진단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참고자료이고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번호	항목	시작할 필요 있음	개선할 필요 있음	효과적으로 하고 있음
정책				
1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다.			
2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3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모기업의 준비를 명시하고 있다.			
4	사고 예방 및 손실 감소 효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한다.			
조직화				
5	직원은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알고 있다.			
6	담당 직원은 협력업체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7	담당 직원은 협력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알고 있다.			
8	건강과 안전은 협력업체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9	협력업체가 건강과 안전에 능숙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10	담당직원이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협력업체 계약 논의에 참여한다.			
업무 계획				
11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작업을 논의하고 동의한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모기업의 요구 사항과 협력업체의 책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			
12	안전한 작업 절차와 현장 규칙이 있다. 협력업체는 이를 사전에 인지한다.			
13	담당 직원은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을 계획한다. 모기업은 안전 방법 진술을 요구한다.			
14	협력업체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모기업은 알고 있다.			
15	협력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 정보를 받는다.			
16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17	직원이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확인한다.			
18	협력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이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			
19	협력업체의 감독 준비를 확인한다.			
20	모기업은 협력업체에게 모든 사건/사고(사소한 것 포함)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21	협력업체가 다른 직원을 보내는 경우 모기업이 그 사실을 안다.			
검토 및 학습				
22	작업이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협력업체의 건강 및 안전 성과를 포함하여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23	검토는 향후 활용을 위해 기록된다.			
24	모기업은 검토 결과를 통하여 다음 협력업체 계약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림 Ⅲ-2] 체크리스트 예시

(3) 모기업 안전 체크리스트

다음은 IOSH(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제시하는 모기업 안전 체크리스트 사례이다. 체크리스트에서는 회사명, 위치, 업무의 특성, 일시, 업무마감 일정 등을 기입한다. 체크리스트 항목은 일반절차, 업무 장비, 유해물질, 개인 보호 장비, 작업 허가, 추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가) 일반절차

- 계약자 핸드북이 있습니까?
- 업무장소 소개를 했습니까?
- 비상 집결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응급처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까?

나) 업무 장비 관련(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발판
- 전원 액세스 장비
- 사다리
- 크레인/승강장치
- 용접/절단/연삭 장비
- 휴대용 전기 장비
- PAT(portable appliance testing)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 기타 (구체적으로)

다) 유해물질(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인화성 액체/가스
- 산화제
- 유해/자극/부식성 물질
- 납/석면
- CoSHH(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평가가 있습니까?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습니까?

라) 개인 보호 장비(다음 중 하나를 착용할 예정입니까?)

- 눈 보호
- 호흡기 보호
- 장갑
- 안전화
- 청력 보호
- 작업복
- 기타 (구체적으로)

마) 작업 허가(작업이 다음 허가에 의해 통제됩니까?)

- 갇힌 공간
- 뜨거운 일
- 지붕 작업
- 참호/굴착
- 작업 라인 바꿈
- 전기 작업

바) 추가항목(작업은 다음에 의해 제어됩니까?)

- 방법에 대한 기술
- 위험 평가
- 임상/실험실에서 일할 예정입니까?
- 오염 제거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2) 미국

미국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감독을 공유할 때 부상과 질병을 기록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관하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standard Number 1904.31에서 설명된다.

1904.31(a)

OSHA 300 로그에 노동, 간부, 시간제, 급여, 시간제, 계절 또는 이주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에 있는 모든 직원의 기록 가능한 부상 및 질병을 기록해야 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직원을 매일 감독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기록 가능한 부상 및 질병을 기록해야 한다.

1904.31(b)(1)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자영업자는 OSH 법 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04.31(b)(2)

임시 지원 서비스, 직원 임대 서비스 또는 인력 공급 서비스에서 직원을 구하는 경우 해당 직원 중 한 명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 한다. 직원을 매일 감독하는 경우 이러한 부상 및 질병을 기록해야 한다.

1904.31(b)(3)

시설 내 직원이 계약자의 직원인 경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한다. 즉, 계약자의 직원이 계약자의 일상적인 감독을 받는 경우 계약자는 부상 또는 질병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계약 직원의 작업을 매일 감독하는 경우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 한다.

1904.31(b)(4)

인력 공급 서비스, 임시 지원 서비스, 직원 임대 서비스 또는 계약자는 원청업체에서 매일 감독하는 임시, 임대 또는 계약직 직원에게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원청업체와 임시 지원 서비스, 직원 임대 서비스, 인력 공급 서비스 또는 계약자는 각각의 부상과 질병이 단 한 번만 기록되도록 귀하의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일반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OSHA에서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용주는 서면으로 된 유효한 건강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시행한다.

작업장의 안전 위험 및 이러한 위험을 시정하는 방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 구현 책임자의 신원
- 직원들과 안전보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문제
-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관행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여기에는 다음을 따르는 직원에게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규칙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한 규칙 및 적절한 조치
-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작업장 검사 수행 절차
- 서면 IIPP는 검사가 수행되는 빈도와 누가 수행하는지 설명해야 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절차
-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방법
- 직원 및 감독자를 위한 교육 및 교육
- 직원 교육 및 작업장 검사 기록(예외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고용주)

이러한 기록은 파일에 있어야 하며 검토 가능해야 한다. 일반 모기업 및 협력업체는 상해의 모든 요구 사항을 구현해야 한다.

3) 일본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안전 위생 관리체제에 의하면 협력업체를 하청업자(下請業者)로 명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하청업자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모기업(원청업체)의 의무

- 대상 : 모든 전방사업자(일의 일부를 청부인에게 청부하게 하고 있는 것 중 해당 청부계약 중 가장 선차의 청부계약에 있어서의 주문자)
- 관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노동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 상기의 관계 청부인 등에 법령 위반이 인정된 경우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실시하는 것

(2) 협력업체의 기준

특정 업종에 있어서의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가 혼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통괄 안전 위생 관리)

- 노동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책임 범위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예외 : 파견노동자)이지만, 특정 업종(건설업 및 조선업)에 있어서 원청(방사업자)과 하청(관계 계약자)의 노동자가 혼재하는 작업 현장 등에서는, 각 사업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배려해, 적법하게 작업을 진행해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원청은 '혼재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괄 안전 위생 책임자 등을, 하청은 안전 위생 책임자 등을 선임해 일정한 안전 위생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청의 역할 때문에 하청사업자의 안전위생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청이 그 사업장의 안전위생 책임을 전부 지는 것은 아니다.

☞ A사가 자재를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하에서 B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양사는 적법하게 또한 자사의 계획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자사 작업에 대한 노동자에게의 안전 지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원청은 이런 「혼재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업무

가) 통괄안전위생 책임자

- 원청사업자가 선임
- 협의조직 설치 및 운영
- 작업 간 연락 및 조정
- 작업장 순찰
- 관련 계약자가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그 외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나) 안전위생 책임자

원청사업자가 통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는 한사업자(한사)에게 1인 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며 또한 아래 업무수행

-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와의 연락
-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로부터의 연락을 관계자에게 전하는 것
-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와의 연락 중, 당해 계약자에 관한 것의 실시에 관한 관리 등

다) 전방안전위생 관리자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의 통괄 관리해야 할 업무의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총괄 안전 위생 책임자의 보좌

라) 점사안전위생 관리자

원청사업자는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통괄안전위생관리를 해야 하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통괄안전위생 책임자의 선임의무까지는 없는 중 규모의 작업현장 중 주행 도공사 등 일정한 공사에 대해 현장의 통괄 안전 위생 관리 담당자를 지도·원조하는 역할 담당.

- 최소한 월 1회,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 순찰
- 근로자의 작업 유형 및 실시 상황 파악
- 협의 조직의 회의에 참가
- 원청사업자가 작성한 작업의 공정계획, 기계·설비 등의 배치 등
- 계획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부록으로 제시

IV.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

IV.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1. 포커스그룹 인터뷰

1) 목적 및 방법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기업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는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실태와 관리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하여도 보건관리 실태와 모기업에서 지원해 주기 원하는 사항, 보건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협의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30분~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녹음자료를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는 12명이었으며, 모기업은 보건관리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이었다. 모기업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7명, 산업위생기사 2명이었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안전보건담당자 2명, 근로자 1명이었다. 참여자의 속한 사업장 업종은 제조업 6명, 서비스업 6명이었고 건설업 등 기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V-1〉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석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항목	구분	모기업	협력업체	계
성별	남	2	1	3
	여	7	2	9
연령	29세 이하	1	0	1
	30~39세	2	1	3
	40~49세	3	1	4
	50~59세	3	1	4
	60세 이상	0	0	0
직급	보건관리자	9	0	9
	안전보건담당자	0	2	2
	근로자	0	1	1
자격	간호사	7	0	7
	산업위생기사	2	0	2
	기타	0	3	3
업종	제조업	5	1	6
	서비스업	4	2	6

3) 인터뷰 결과

인터뷰는 자료는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 협력업체 관리의 어려움,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위한 개선요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162개의 분석 대상 문항을 도출하고 이 문항에 대하여 129개의 하위개념을 도출하였다. 129개의 하위개념을 다시 유사한 개념을 합하여 총 35개의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위한 상위 개념을 도출하였다.

(1) 보건관리 내용 요구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요구는 108개의 주요 인터뷰 문항을 중심으로 93개의 하위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25개의 상위개념으로 도출하였다. 이에는 주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담당자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수행의 시간배분, 교육 참여기회 제공,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원의 잦은 교체를 고려하여 신규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건관리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한 보건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보건관리의 어려움

보건관리의 어려움으로는 총 27개의 인터뷰 문항 분석을 통하여 6개의 상위 개념이 도출되었다. 상위 개념 6개 중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상담이나 산업재해처리 과정 등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적 배려가 되어 있지 않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통이 어려운 점과, 안전과 보건관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생기는 업무적 갈등을 비롯하여 모기업의 직원 수에 더하여 협력업체 직원까지 건강검진이나 건강상담을 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파견직 업무의 경우 고령 근로자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이직으로 작업자 교체가 많아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보건관리가 더 면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보건관리의 개선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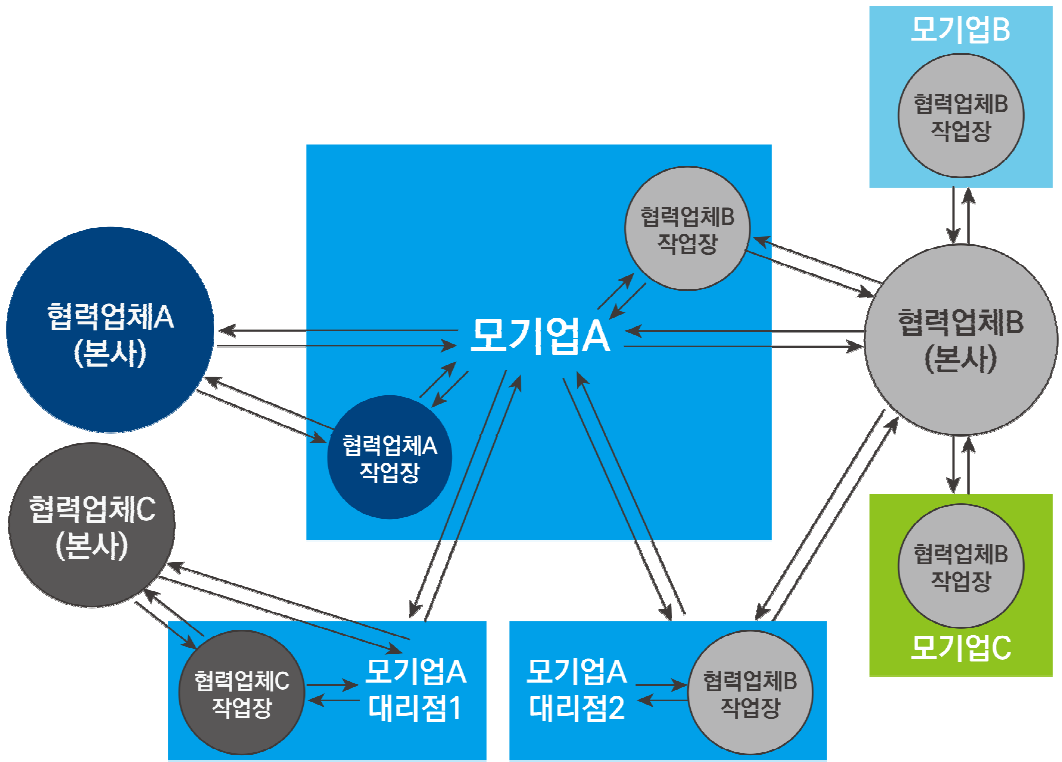
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념은 정보활용기술,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제도적 강제성 강화, 표준화된 양식 활용 등 5개의 상위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는 27개의 인터뷰 문항 중 18개의 하위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결과였다. 보건관리를 위하여 모기업-협력업체-근무배치 장소별 근로자 간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해야 한다고 하였고,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하는 데

는 도급에 의한 법 등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 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별 내용을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과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강제적 책임부여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준화된 양식을 활용하면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협력업체 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알고 보건 관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 협력업체의 특성

소규모 협력업체는 모기업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전국 단위로 산재되어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소규모 협력업체는 동일 사업주가 중기업 또는 대기업 작업장에 근로자를 파견이나 도급형식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근무 장소 또는 근무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자나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 체계도 모기업-협력업체 사업주-작업배치 현장으로 이어지는 삼중 구조를 이루거나 파견이나 도급 등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기업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정되어 있어도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직이 잦고,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모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건강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업재해 처리과정이나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체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근로자는 비교적 사고

재해 예방이 중요시되는 반면 청소, 경비, 식당 등 생산 지원관련 근로자는 고령화로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IV-1] 협력업체 의사소통 흐름도

〈표 IV-2〉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연번	도출된 개념	구분
1	계획수립	산업보건관리요구
2	관리감독자 역할인식	
3	구체적 업무지시	
4	근로자 교육	
5	모기업 감독의 부담감	
6	법의 준수	
7	보건교육	
8	보건의 중요성	
9	산업보건 지식부족	
10	산업보건관리 미흡	
11	산업보건관리 지식부족	
12	지역사회 자원활용	
13	수행 증빙자료	
14	신규작업자	
15	안전보건 조직	
16	안전보건의 협력	
17	업무관련질병 관리	
18	의사소통	
19	인식전환(근로자)	
20	인식향상(사업주)	
21	작업 전 교육	
22	재해지표관리	
23	질병자 관리	
24	출근자 관리	
25	협의체 운영	
26	개인정보 활용	산업보건 관리의 어려움
27	경제적 어려움	
28	관리감독자 업무부담	
29	근로자 고령화	
30	타 직종 간 갈등	
31	협력업체 관리의 부담	
32	정보활용기술	개선요구
33	자율 관리 시스템	
34	제도의 강제성 강화	
35	표준화된 양식 활용	
36	협력업체 범위	

※ 자세한 분석 결과 부록 참조

2. 설문조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8명으로 대상자의 연령은 20세부터 68세까지였고 평균 42.6세였으며 40대가 36.8%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203명(85.4%)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 석사, 전문대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모기업이 149명, 83.7%였으며 협력업체가 85명, 13.3%였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97명, 93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서 40,000명까지 다양했으며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59명, 24.9%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직책은 보건관리자가 167명, 73.28%로 가장 많았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를 비교한 결과, 연령은 연령 그룹 간 비교한 chi-square test와 연령 평균으로 분석한 t-test 모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모기업에 여성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1$), 학력은 대학졸업과 석사, 박사 등 고학력 집단이 모기업에 더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p<.001$). 업종을 살펴보면 모기업은 제조업이 협력업체는 서비스업이 많았으며($p<.001$), 근로자 수는 모기업이 많았으며($p<.001$), 직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동일하게 보건관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모기업은 86.5%, 협력업체는 47.0%로 그 구성비에서의 차이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1$).

〈표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8)

항목	구분	명(%) or M±SE			t or χ^2
		계 N=238	모기업 N=149	협력업체 N=85	
성별	남	35(15.0)	12(8.0)	23(27.1)	15.37
	여	199(85.0)	137(92.0)	62(72.9)	
연령	29세 이하	26(11.1)	16(10.7)	10(11.8)	2.80
	30~39	57(24.4)	41(27.5)	16(18.8)	
	40~49	83(35.5)	50(33.6)	33(38.8)	
	50~59	60(25.6)	38(25.5)	22(25.9)	
	60세 이상	8(3.4)	4(2.7)	4(4.7)	
	세(year)	42.6±9.6	42.3±9.6	43.2±9.4	-0.72
학력	고등학교졸업	10(4.2)	1(0.7)	9(10.6)	22.25
	전문대학 졸업	36(15.4)	17(11.4)	19(22.4)	
	대학 졸업	144(61.5)	96(64.5)	48(56.5)	
	대학원(석사)	37(15.8)	30(20.1)	7(8.2)	
	대학원(박사)	7(3.0)	5(3.4)	2(2.3)	
업종	제조업	93(42.5)	74(54.4)	19(22.9)	21.47
	서비스업	97(44.3)	48(35.3)	49(59.0)	
	건설업	10(4.6)	4(2.9)	6(7.2)	
	기타	19(7.6)	10(7.4)	9(10.8)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4(1.7)	0(0.0)	4(4.7)	135.92
	5~49인	59(25.3)	8(5.4)	51(60.0)	
	50~99	20(8.6)	6(4.1)	14(16.5)	
	100~299	43(18.5)	29(19.6)	14(16.5)	
	300~499	32(13.7)	31(21.0)	1(1.2)	
	500~999	31(13.3)	30(20.3)	1(1.2)	
	1,000인이상	44(18.9)	44(29.7)	0(0.0)	
직책	보건관리자	167(72.3)	128(86.5)	39(47.0)	52.69
	관리감독자	11(4.8)	2(1.3)	9(10.8)	
	일반 (생산직)근로자	4(1.7)	1(0.7)	3(3.6)	
	조(반)장	3(1.3)	0(0.0)	3(3.6)	
	현장책임자	12(5.2)	1(0.7)	11(13.3)	
	사무직관리자	17(7.4)	10(6.8)	7(8.4)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사업주)	1(0.4)	0(0.0)	1(1.2)	
	보건관련기관	10(4.3)	4(2.7)	6(7.2)	
	안전관리자	6(2.6)	2(1.3)	4(4.9)	

2) 협력업체 보건관리 내용 요구도

산업보건관리 요구도에 대한 28개 항목 중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강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보호구착용상태 확인(105명, 70.5%), 작업 전 교육(101명, 67.8%), 배치 전 검진 실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수칙 게시(98명, 65.8%)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의 경우는 보호구착용상태 확인(55명, 64.7%), 작업 전 교육(55명, 58.8%),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43명, 50.5%) 순으로 나타나, 2순위까지 모기업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응답 내용이 차이가 있는 항목은 불안정한 상태 등으로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 배치 전 검진 실시 여부,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예방을 위한 자료 게시나 정보제공,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작업장 안전·위생상태 파악(미끄럼, 낙하물, 해충 등), 모기업(원청)과 정기회의 및 회의준비(모기업 협력회의) 및 결과의 조치, 보건교육실시 및 결과의 보관,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산업보건관리 조직 구성(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응급의료비상 연락망 관리로 나타났으며, 해당 항목 모두 모기업이 협력업체보다 필요성을 더 강조하였다($p<0.05$).

3) 협력업체 보건관리 업무별 담당자

28개 보건관리 업무별 적합한 담당자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현장책임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반)장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에 대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응답 내용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작업 미숙련자 파악,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 옥외근로자 작업환경 파악 및 조치(미세먼지, 냉·온열질환 예방)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응답 내용은 관리담당자로서 현장 책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반)장으로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외 보건교육실시 및 결과의 보관에 대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담당자로서 사무직 관리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장 책임자로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응답과 다음 2순위 응답의 서열은 동일하나 그 구체적 빈도 수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p<0.05$).

4) 협력업체 보건관리 내용 중 시행 시기에 대한 요구도

확인주기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매일 확인해야 한다고 응답한 내용은 결근, 조퇴 근로자 현황 파악,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 작업 미숙련자 파악, 작업 전 교육(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칙 게시나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냉·온방 장치 가동상태), 옥외근로자 작업환경 파악 및 조치(미세먼지, 냉·온열질환 예방), 작업장 안전·위생상태 파악(미끄럼, 낙하물, 해충 등), 작업 공구 정리정돈 상태파악(적정 위치 및 정리정돈) 등의 항목이 많았다.

매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항목은 배치 전 검진 실시, 신규입사자, 작업 전환자, 뇌·심혈관질환 예방 자료 게시나 정보제공,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보건 표지판 게시 및 게시상태 확인, 모기업(원청)과 정기회의 및 회의 준비(모기업 협력회의) 및 결과의 조치, 사업장 순회점검, 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의 보관 항목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항목은 6개월마다,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산업보건관리 조직 구성(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등의 항목은 1년에 한 번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매주, 수시, 발생 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관리감독자나 근로자가 수시로 이러한 관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작업 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매일이나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결과로도 보인다.

확인주기에 대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응답 내용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MSDS) 게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MSDS) 게시의 경우 모기업은 매달 또는 매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으

나, 협력업체는 매일이나 매달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경우 모기업은 6개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개월과 발생 시에 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협력업체는 6개월, 3개월, 매달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의 경우 모기업은 매년, 발생 시 해야 한다고 하였고, 협력업체는 매년,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는 협력업체에서는 배치 전 검진, 작업환경측정,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한 실시 주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5)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보건관리 지원 내용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기업은 작업환경측정 공동실시(95명, 63.8%)와 산업보건관리 상태 점검(93명, 63.4%)이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는 보건교육 실시(55명, 64.7%)와 건강검진 공동실시(48명, 56.5%)가 가장 많았다.

〈표 IV-4〉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보건관리 지원 요구

연번	지원 항목	빈도(%)		p-value (χ^2 -test)
		모기업 ¹⁾	협력업체	
1	건강검진 공동 실시	75(50.3)	48(56.5)	.366
2	작업환경측정 공동 실시	95(63.8)	41(48.2)	.020
3	보건교육 실시	77(51.7)	55(64.7)	.053
4	건강상담 지원	66(44.3)	41(48.2)	.560
5	건강정보(자료)의 지원	73(49.0)	30(35.3)	.042
6	의사소통 창구의 운영(온라인, 정기회의 등)	74(49.7)	35(41.2)	.210
7	산업보건관리 상태 점검	93(62.4)	36(42.4)	.003
8	유소견자 관리(일반질환, 직업성질환)	58(38.9)	41(48.2)	.165

1) $p<0.05$

6)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모기업은 대면협의($p < .001$)나 온라인 화상협의(줌, 웨벳스, 영상통화 등)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 협력업체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온라인 단톡방이나 카카오톡 등 SNS 형식의 의사소통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모기업-협력업체-근로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N=238)

연번	지원항목	기업	빈도(%)					p-value (χ^2 -test)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면협의*	모기업	68(45.6)	69(46.3)	8(5.4)	3(2.1)	1(0.7)	<.001
		협력업체	20(23.5)	37(43.5)	26(30.6)	2(2.4)	0(0.0)	
2	온라인 화상협의 (줌, 웨벳스, 영상통화 등)	모기업	23(15.4)	54(36.2)	51(34.2)	18(12.1)	3(2.0)	.715
		협력업체	9(10.6)	32(37.7)	33(38.8)	8(9.4)	3(3.5)	
3	온라인 단톡방	모기업	18(12.1)	74(49.7)	39(26.1)	8(9.4)	3(2.0)	.295
		협력업체	12(14.1)	34(40.0)	31(36.5)	2(2.4)	0(0.0)	
4	온라인 채널 (밴드, 카카오톡 등)	모기업	12(8.1)	55(36.9)	61(40.9)	18(12.1)	3(2.0)	.749
		협력업체	11(12.9)	30(35.3)	35(41.2)	8(9.4)	1(1.2)	
5	사내 전용 전산망 (인트라넷)	모기업	21(14.1)	69(46.3)	38(25.5)	19(12.8)	2(1.3)	.614
		협력업체	15(17.7)	32(37.7)	28(32.9)	9(10.6)	1(1.2)	
6	개별 카카오톡	모기업	13(8.7)	52(34.9)	45(30.2)	27(18.1)	12(8.1)	.407
		협력업체	11(12.9)	20(23.5)	31(36.5)	15(17.7)	8(9.4)	
7	개별 문자(SNS)	모기업	12(8.1)	46(30.9)	54(36.2)	24(16.1)	13(8.7)	.197
		협력업체	13(15.3)	17(20.0)	35(41.2)	15(17.7)	5(5.9)	
8	개별 전화	모기업	24(16.1)	57(38.3)	39(26.1)	17(11.4)	12(8.1)	.316
		협력업체	12(14.1)	24(28.2)	32(37.7)	12(14.1)	5(5.9)	
9	메일	모기업	16(10.7)	59(39.6)	56(37.6)	13(8.7)	5(3.4)	.645
		협력업체	11(12.9)	36(42.4)	25(29.4)	11(12.9)	2(2.4)	
10	공문	모기업	29(19.5)	71(47.7)	36(24.2)	8(5.4)	5(3.4)	.780
		협력업체	17(20.0)	45(52.9)	17(20.0)	5(5.9)	1(1.2)	
11	사내 게시판 활용	모기업	21(14.1)	68(45.6)	42(28.2)	12(8.1)	6(4.0)	.626
		협력업체	12(14.1)	40(47.1)	28(32.9)	3(3.5)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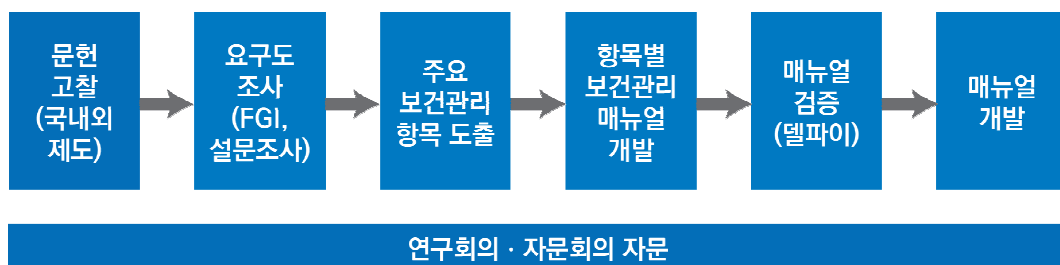
V.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V.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1. 매뉴얼 개발 과정

매뉴얼은 문헌고찰,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매뉴얼 개발의 전 과정은 연구회의 및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며 개발하였다.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소규모 협력업체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보건관리자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모기업에서의 협력업체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관리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을 거쳐서 협력업체 보건관리요구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설문문항으로 개발한 후 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협력업체의 주요 보건관리항목 43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은 연중 관리해야 할 산업보건항목으로 제시하여 시행시기와 담당자를 선정하여 연중 산업보건계획으로 활용하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1차 매뉴얼을 개발한 후 보건관리자 4인과 협력업체 직원 및 관계자 4명에게 SNS로 전송하여 검증을 받았다. 검증 내용은 보건관리자에게는 매뉴얼 내용과 체크리스트 항목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증하였고, 협력업체 관계자에게는 매뉴얼 내용의 이해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불필요한 항목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V-1] 매뉴얼 개발 과정

2. 매뉴얼 개발 방향

소규모 협력업체 담당자가 산업보건관리 내용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다. 서비스업은 산업재해 통계분류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기·가스·운수·통신이 이에 해당한다.

- 협력업체에서 자율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개발
- 잦은 이직과 산업보건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쉬운 용어로 개발
-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어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
- 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중 수행하여야 할 항목을 제시하여 개발
- 주요 업무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하여 쉽게 수행하도록 함.
-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 항목별 수행절차와 내용, 목적, 방법, 관련 근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함.
- 업무 내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역할 간 혼선을 줄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함.
- 모기업-협력업체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상호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함.
-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모기업에서의 협력이 수월하도록 함.

3. 협력업체의 연중 보건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 등에서 정한 산업보건관리 내용과 요구도 조사, 연구회의 및 자문위원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협력업체 연중 보건관리 주요 항목을 43개 업무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중 수행하여야 할 주요 항목으로 연중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연중 계획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계획표는 실시 시기, 담당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행이 되도록 하였다. 보건관리 업무별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안내하였다. 매뉴얼은 연중 보건관리 업무별로 활용 가능하도록 20개의 매뉴얼로 제시하여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중 보건관리 계획표 하단에는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연중 계획은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다.

〈표 V-1〉 소규모 협력업체 연중 보건관리 계획표

소규모 협력업체 연중 보건관리 계획표

■ 연도 : 20 년

연번	연중 보건관리 주요 업무	협력업체					모기업
		실시 시기			담당자	활용 매뉴얼 (번호)	확인 시기
		매 일	매 월	기 타			
1	관리감독자 지정			즉시	관리감독자	05	즉시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즉시	관리감독자	05	즉시
3	작업 전 근로자 교육(작업단위별)	○			조(반)장	01	매월
4	보호구착용 상태 확인	○			조(반)장	10	매월
5	작업 전, 후 스트레칭 실시	○			관리감독자	01,17	매월
6	작업 미숙련자 파악(작업변경자)	○			조(반)장	01	매월
7	작업 미숙련자 파악(신규입사자)	○			조(반)장	01	매월
8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불안정한 상태)	○			조(반)장	01	매월

연번	연중 보건관리 주요 업무	협력업체					모기업
		실시 시기			담당자	활용 매뉴얼 (번호)	확인 시기
		매 일	매 월	기 타			
9	작업장 환기상태 파악(전체환기, 국소배기 장치)	○			관리감독자	01,02	격주
10	옥내·외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냉·온방 장치 가동상태)	○			조(반)장	01,02	격주
11	넘어짐, 교통사고, 적재 안전 확인	○			관리감독자	01,02,	격주
12	작업장 작업공구 상태 파악(적정 위치, 노후, 정돈)	○			조(반)장	01,02,03	격주
13	작업장 소독(감염, 해충 등)			격월	관리감독자	01,02	반기
14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칙 게시			반기	관리감독자	17	반기
15	뇌심혈관질환 예방 수칙 제공			반기	관리감독자	18	반기
16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자료 제공			반기	관리감독자	19	반기
17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 게시(MSDS 게시)			해당시	관리감독자	03,04	반기
18	작업환경측정 실시			상반기	사업주	11	매년
19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확인			상반기	사업주	11	매월
20	배치 전 검진실시			발생시	관리감독자	12	매월
21	배치 전 검진결과 확인			발생시	관리감독자	12	매월
22	일반건강진단 실시			하반기	관리감독자	13	매년
23	일반건강진단 결과 파악 및 조치			하반기	관리감독자	13,15	매년
24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환자 치료 확인				관리감독자	13,15,16	
25	특수건강진단실시			하반기	사업주	14	매년
26	특수건강진단 결과 파악 및 조치			하반기	사업주	14,15,16	매년
27	건강상담 실시			검진후	관리감독자	15	매년
28	위험성평가 실시			하반기	사업주	03,20	매년
29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하반기	사업주	20	매년
30	옥외근로자 냉·온열질환 예방조치			반기	관리감독자	01,02	반기
31	안전보건 표지판 게시 및 게시상태 확인		○		관리감독자	04	격주
32	모기업(원청)과 협의체 회의 준비		○		사업주	06	매월
33	모기업(원청)과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주	06	매월
34	사업장 순회점검(자체 순회점검)			격일	관리감독자	02	-

연번	연중 보건관리 주요 업무	협력업체					모기업
		실시 시기			담당자	활용 매뉴얼 (번호)	확인 시기
		매 일	매 월	기 타			
35	사업장 순회점검(모기업과 순회점검)			매주	관리감독자	02	매주
36	안전보건교육 실시(근로자)			반기	사업주	16	반기
37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담당자 등 관계자)			반기	사업주	16	반기
38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보관			반기	관리감독자	16	매년
39	연락체계 공유(모기업, 협력업체, 담당자)			즉시	사업주	07	즉시
40	부상·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구급함)			즉시	관리감독자	08	즉시
41	부상·질병 시 조치(인근의료기관 확인)			즉시	관리감독자	08,15	즉시
42	산업재해 관련 통계 취합 및 보고		○		관리감독자	09	매월
4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		○		사업주	09	해당시

*** 활용방법**

- '즉시'는 사업 시작 즉시를 의미함
- '매일', '매월'에 체크된 항목은 예시이며 사업장 계획에 따라 기재함
- '기타'는 협력업체가 계획한 구체적 월을 기재하며, 필요시 모기업과 협의 후 계획
- '담당자'는 협력업체 사업주 등 관리자가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절 등 배려가 필요함
- 기타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확인
- 시기나 담당자는 예시이므로 협력업체에서 정하여 연 계획을 수립함

4.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종류

매뉴얼은 연중 산업보건관리 항목별 업무를 쉽게 접근하여 수행하고 이를 수행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 설정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요구도와 현행 법 및 자문위원 및 연구원의 의견, 문헌고찰 등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이 중 매뉴얼 번호 01~10은 소규모 협력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로 구성하였고, 11~20번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필수로 수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V-2〉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종류

매뉴얼 번호	매뉴얼 항목
01	작업 전, 후 확인 매뉴얼
02	사업장 순회 매뉴얼
03	유해·위험요인관리 매뉴얼
04	안전보건표지 관리 매뉴얼
05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
06	모기업-협력업체 협의체 운영 매뉴얼
07	의사소통 매뉴얼
08	응급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09	건강지표관리 매뉴얼(산업재해지표)
10	보호구착용 관리 매뉴얼
11	작업환경측정 매뉴얼
12	배치 전 건강진단 매뉴얼
13	일반건강진단 매뉴얼
14	특수건강진단 매뉴얼
15	건강상담 매뉴얼
16	안전보건교육 매뉴얼
17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
18	뇌심혈관질환 예방 매뉴얼
19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매뉴얼
20	위험성평가 매뉴얼

5.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은 쉽게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하는 방향성에 맞도록 총 2쪽으로 구성하여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쪽은 해당 매뉴얼에 대한 소개와 목적, 주요 내용, 실시 시기, 근거, 매뉴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쪽은 해당 매뉴얼 항목을 수행하는 절차와 쉽고 빠짐없이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다. 체크항목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비교에 제시하였고 개선 사항에 대하

여는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함께 개선하도록 하였다. 처음 개발 계획은 1쪽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로만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문위원의 자문 과정을 통하여 매뉴얼에 대한 소개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2쪽으로 개발하였다.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1. 작업 전, 후 확인]

매일 확인 매뉴얼이란?

협력업체는 모기업 내에서 일부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업전/후부터 매일 안전보건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체크리스트를 말합니다.

■ 목적

- 협력업체 작업단위별로 매일 안전보건사항 확인
- 작업자가 자주 고쳐보는 작업장의 재해예방
- 모기업과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 내용

- 매일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
 - 근로자 작업준비: 불안전 상태, 업무에 대한 인지, 위험작업에 대한 인지 등
 - 안전한 작업장: 환기 및 적정온도, 청결정도, 작업대 및 작업공간 상태, 표지판 등
 - 작업준비: 적절한 작업복착, 적정 신발, 이동 등 업무관련 질병 예방 등
- 작업 종료 후 확인 사항
 - 근무자 작업: 익일 작업 변동 사항에 대한 인지, 휴가자 현황
 - 준비된 작업장: 작업장 청결정도, 익일 작업량 및 내용 인지
 - 작업종료 방법: 익일 작업 계획

■ 작업점검

- 제조업, 서비스업 및 해당 요인이 없는 협력업체

■ 매뉴얼관리자

- 작업단위별로 협력업체에서 지정한 자, 조(반)장, 관리감독자

■ 실시시기

- 매일 작업 전, 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나 변화가 없는 경우 주기는 자율 조정 가능

■ 근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2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직 전 점검사항)

■ 고려해야 할 사항

- 제2, 3항의 별표3 관련 사항은 유해·위험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참조
- 근무일 항목과 사업장별 작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 결과에 모기업과 공유하여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함
- 매월 체크 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비엔에 대한 배려가 필요
- 신규작업자가 없거나 양호상태가 유지되면 체크리스트 작성 기간을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협의하여 주 1회 등으로 작성 주기 변경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1. 작업시작 전, 후 체크리스트]

■ 절차

```

    graph LR
    A[도입 업무협약 작성자 지정] --> B[체크리스트 내용 인지]
    B --> C[작성방법 확인]
    C --> D[체크리스트 작성]
    D --> E[작성지 서명]
    E --> F[특이사항 보고]
    F --> G[기록의 보존]
    
```

■ 협력업체명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영 요 인	미 충 족	해당 없음	미충 시 관리방안
〈작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1	오늘 할 업무내용을 근무자가 알고 있나요?				
2	오늘 처음 투입된 근무자가 있나요?				배치 전 감시 매뉴얼 확인
3	처음 투입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설명 후 작업 시작
4	질병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직원이 있나요?				관리자에 보고
5	작업자들은 작업기구나 사용이 익숙한가요?				주위사항 설명
6	작업하는 적절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나요(가솔/ 동상 등, 구멍/ 열사병 등)				필요시 보호구 제공
7	근무시작 전 스트레칭은 실시하였나요?				제한된 자료 활용
8	작업장 온도는 적절한가요?				관리자에 보고
9	계절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어 있나요? (가솔/ 동상 등, 구멍/ 열사병 등)				온열기 설치, 구멍, 열사병 예방 등
10	작업장내에 냄새나 먼지는 없나요?				청문장치, 국소배기
11	위험작업이나 위험기구, 화학물질 등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전표지 표시 부착 매뉴얼 확인
12	오늘 업무 중 예측되는 건강문제는 없나요?				관리자에 보고
〈작업 종료 후 체크리스트〉					
1	오늘 작업 후 동충 호소자는 없었나요?				자료 안내
2	작업장 바닥 미끄럼, 넘어짐 위험은 없었나요?				관리자에 보고
3	기계·기구의 청리·정돈이 양호한가요?				계 정돈
4	화학물질 보관이 적절한가요?				보관장소, 밀폐성태 확인
5	오늘 발견된 업무관련 문제는 없나요?				관리자에 보고

■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미흡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모기업 지원 사항 기재
모기업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그림 V-3]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예시

6. 매뉴얼의 활용

1) 활용 대상

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쉽고 차근차근 접근 가능한 매뉴얼로 개발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모기업-협력업체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모기업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동일 구간 내 협력업체, 모기업 외 협력업체, 전국 대리점 형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협력업체별로 매뉴얼 제작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위치와 의사소통 문제를 포함할 때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들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산업보건 수행 항목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에 의사소통 매뉴얼을 추가하여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종별, 수행항목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매일 확인 작업 전, 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매뉴얼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작업 전, 후에 체크해야 할 항목은 제시하지만 매일 하도록 권고하는 정도로 하여 작업 전, 후 확인 매뉴얼로 정정하였다.

본 매뉴얼을 활용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모기업 안전보건관리자 및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
- 모기업 내 위치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 모기업 외 전국 대리점 형식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활용방법 및 활용 시 주의점

본 매뉴얼은 규격화되어 있거나 규정에서 정한 양식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시된 체크리스트 항목은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할 경우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근거법을 찾아 확인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개발과정에서 요구도 조사 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건설업 등 기타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매뉴얼 개발 후 검증 과정은 보건관리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 일부 인원에게 대하여 검증한 결과이므로 추후 모기업-협력업체 관계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VI.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

Ⅵ.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1. 우수사례 사업장 개요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직종과 규모에 적합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시물과 직업건강협회 등에서 발간하는 직업건강 우수사례 중에서 협력업체 관리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직종별, 전략별로 6개소를 선정하였다.

1) 선정된 우수사례 개요

선정된 우수사례 사업장은 3개소의 제조업 사업장과 3개의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업, 운송물류업, 건축설비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사업장의 특성은 모기업의 안전보건 확립의 경영방침과 안전보건위원회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모기업과 협력사의 소통과 정보공유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지원과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협력업체 사업장의 현황분석과 근로자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 건강한 회사환경 구축 등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성과관리 향상에 노력하였다.

2) 선정된 우수사례 사업장 현황

우수사례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수사례 1]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모기업)로 모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총 2,300여 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본사와 협력사의 특성과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강증진 활동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과 작업공정별 환경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정착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사, 근로자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하였다. 분기 1회 협력사와 협의체 운영으로 안전토의, 조치에 대한 feedback 등 환경안전팀과 정기적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결과는 차기계획에 재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 정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수사례 2]

전자부품 제조업체(모기업)로 877명의 근로자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5개 협력업체 근로자 190명과 외부협력업체 79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모기업 보건관리자는 협력업체 건강증진사업을 주도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동기부여 전략과 동료 간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내어 근로자의 참여와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금연사업 활동에서 흡연자와 동료 비흡연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금연사업과 여성 전문형 시크릿 금연사업, 2년 미만 재흡연자 금연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대근무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작업환경 개선에 있어서 법적 준수 외에도 관련작업장의 청력보존 프로그램과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모성수유부 근로자를 위한 위험작업공정의 전환배치 등의 선행적 관리활동을 하였다.

[우수사례 3]

임직원 3,500명, 협력사 350명이 함께 근무하는 보건사업장으로 안전한 병원환경과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코로나 19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으로 근로자의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사전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협력업체와 유해화학물질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 반영, 원우협의회와 협력하여 전체 근로자와 경영진이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수사례 4]

전력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는 발전회사(모기업)로 1,200여 명의 협력사 직원과 1,233명의 본부직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특성상 보건관리실 접근성의 어렵기에 보건관리자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활동’과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시 근로자의 장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하여 안전보건 인식개선과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하였다.

[우수사례 5]

물류 서비스 운송업체로 안전, 보건, 환경 중시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 지구환경 보호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2인의 안전담당자와 1명의 소방담당, 보건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지역기관과의 연계, 참여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높였다.

[우수사례 6]

건설업체(모기업)와 건축, 전기, 소방설비 협력회사 간의 안전보건의 정착을 위해 본사, 협력사 보건관리 협의를 거쳐 신규자 배치 전 진단평가로 만성 질환, 혈관위험검사, 질환, 증상,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의 근로여건 개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모기업과의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진료예약 서비스와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활동으로 통역교육실시 활동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노사협의체가 운영되며 모기업 보건관리자의 협력업체 신규관리자의 건강검진부터 건강평가를 통한 적합한 부서배치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위험성 평가와 대책 등에 대해 협력업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3) 우수사례 활동의 성과비결의 공통점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 고용주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의 성과결과에 반영되었다.

모기업-협력사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작업환경개선 활동),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예방활동,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의 지속적 활동이 성과에 반영되었다.

- 작업부서 근로자의 의사소통 창구와 현장 근로자의 의견반영과 관리사의 현장점검, 체계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작업장과 근로자 모니터링 등의 활동으로 작업환경 위험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근로자의 의견 모기업과 협력사의 주기적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수행하고 feed back을 통해 재수행 등의 순환적 관리가 성과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2. 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소개

소통하는 건강문화 안전한 근무환경 정착

[개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으로 모기업 2,176명과 124명의 협력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 확보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에 298명의 안전관리자와 3명의 보건관리자가 협력과 소통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근로자의 요구도를 분석·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보건업무 계획에 재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재미와 흥미를 더한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자의 높은 참여율
-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 분석 결과 유소견자와 요관찰자의 증가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근로자 대상 설문과 소통창구를 통해 본사 및 협력사 근로자의 요구도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생활습관 개선, 정신건강, 전염성질환, 기타 건강 이벤트 등의 주제로 교육, 체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목표 달성 시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미와 흥미까지 제공하게 되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세부내용

- 뇌심혈관질환 예방 활동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뇌심혈관계 고위험군 관리, Heart Saver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근로자의 23%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흡연자 중 33% 정도가 금연 요구도가 있어, 지역기관과 연계하였다. 매년 초 인근 보건소와 연계하여 금연프로그램 운영하는 계획과 더불어, 1개월 성공(5만원 상품권), 6개월 성공(30만원 상당 건강검진권) 등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내 예산을 확

- 모기업 전체 근로자와 협력사 근로자들 모두는 매년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Heart Saver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근로자에게 커피 쿠폰과 Heart Saver 인증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 2022년 6개월 성공률은 2019년 대비 77% 성공률을 달성하였고 6개월 금연성공자의 인터뷰를 게시하여 전사에 홍보하였다[그림 VI-1].

Risk & Needs 분석	기획	의견반영	시행	결과&피드백
프로그램 진행 내용				
출연자 평가 실시	금연 일지 작성 (금연 어플 활용)	연수구 보건소 : 1:1 금연 상담 시행		
보건관리자 : 월압 측정 및 금연 이행 현황 확인	6개월 성공자 상품 수여식	금연 중서		

-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을 위해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결과 및 근로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작업 자세 교정과 지속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기존의 4주 프로그램을 6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좀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가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부서의 근로자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하여 계획하였다. 참여근로자에게는 테이핑 재료와 운

동용 소도구를 제공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전, 후 평가를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신뢰를 높이고,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매주 수업 영상을 공유하였다.

- 신체부담작업 부서의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활동으로 안전과 보건 제안서를 통해 의견접수 창구운영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운반고리 제작, 팔레트 리프트 도입, 예방 교육자료 게시, 손목 보호대, 마사지 건 등을 지급하였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산재율 ZERO 성과달성과 교대근무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일정 조정과 소규모그룹 운영에 대해서도 95.8%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VI-2].



[그림 VI-2] 모기업-협력업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활동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요구도 결과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2개월간 주 5회 이상 1일 만보 이상 걷기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팀 대항전으로 꾸준히 많이 걷기 등 이벤트로 인센티브 제공(1인당 최대 100만 원)과 걷기 효과, 올바른 걷기 방법 교육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전체 근로자의 32.6%가 참여하여 20%가 미션에 성공하였으며, “팀원들과 함께 걸으며 팀워크도 향상되고 체중감량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걷기 좋은 계절에 프로그램 운영, 팀 대항에 따른 경쟁 완화 방안 마련으로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연속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그림 VI-3].



[그림 VI-3] 모기업-협력업체 생활습관(걷기) 개선 활동

- 생활습관 개선으로 영양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고칼로리 음식, 당 섭취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전시와 각설탕 쌓기 게임 등의 식습관 개선캠페인 활동과 구내식당 내에 상시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비치하고 올바른 식습관 홍보물을 배포하여 근로자의 식생활습관 개선 활동을 하였다[그림 VI-4].



[그림 VI-4] 모기업-협력업체 생활습관(영양) 개선 활동

- 건강한 회사환경조성을 위해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회사 주변의 둘레길 조성, 야외 테이블, 족구장, 테니스장, 자전거 비치 등을 통해 자율적 운동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개선 활동을 하였다[그림 VI-5].



[그림 VI-5] 건강한 회사환경 조성과 활동 사례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매년 1회 마음 건강검진을 온라인 심리검사로 시행 후 개별결과를 확인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내 마음돌봄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 결과 직무스트레스 평가, 부서별 특성에 맞추어 9팀의 그룹상담 '같이의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월평균 40시간 상담) 팀원 간 화합,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맞춤형 그룹상담 활동으로 20.7% 참여자의 직무스트레스 위험군의 비율을 20.7% 감소결과를 얻었다[그림 VI-6].

소통 활동 : 꼬인 손 풀기

소통 활동 : 색종이 자르기

구분	스트레스 관리	업무태도
전체	4.6	4.15
1팀	4.5	4.15
2팀	4.2	4.3
총 평균	4.2	4.2

그룹상담 후 만족도 조사 (점수)

개념의 역사	주인 정수	원근 정수
4.23	4.33	4.4
4.23	4.3	4.2
4.25	4.35	4.3
4.25	4.33	4.3

그룹상담 후 만족도 조사 (의견)

-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동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좋았다.
-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는 즐거움도 있었다.
-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었음 새로워진 것 같았다.
-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용을 직접 움직이면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 같았다.
-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모두가 다들 함께 공평하게 참여했다.
-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되었다.
- 서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다.
- 팀원들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
- 서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 VI-6] 모기업-협력업체 마음건강 프로그램 활동 사례

- 직장 내 감염성질환 예방활동으로 전염성 대응 질환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전사에 공유하였고, 신고체계 운영과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개별 키트)을 지급하여 확산을 예방하는 활동과 인근 보건소와 연계하여 질환 발생 모의 훈련 등의 활동을 하였다.
- 건강행사 개최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 소통 이벤트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사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간이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 부스 운영으로 인바디 측정과 결과상담, 파라핀요법 체험, 자양강장제 지급 활동을 하였다. 본사와 협력사가 함께하는 소통 이벤트 활동으로 업무시간 중에 경영진들이 간식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격려와 힐링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유소견자, 요 관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1:1 건강상담 실시와 개인별 관리목표설정과 이행 여부에 대한 추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환경 요구도 조사를 근거로 위험요인을 찾아 조치하였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 포상과 홍보를 통해 결과도 공유하였다.
- 보호구 선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 구매부서와 정보공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제안서를 활용하여, 수동 이물질 검사 근로자에게는 마사지를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안전 확인, 분기 1회 협의체 시행, 안전검토 및 조치에 대한 feedback 등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접수와 환경안전팀과 정기적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
-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요구도 수렴으로, 작업환경 보완 활동을 하였고, 시설과 작업공정별 환경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정착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사, 근로자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그림 VI-7].



[그림 VI-7] 모기업-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하는 작업환경 개선 활동

※ 자세한 사례는 부록으로 제시

VII. 결 론

.....

VII. 결 론

1. 결론 및 제언

소규모 협력업체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주를 중심으로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작업장에서 일하는 반면 소규모 협력업체는 동일 사업주가 중기업 또는 대기업 작업장에 근로자를 파견이나 도급형식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근무 장소 또는 근무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자나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 체계도 모기업과 협력업체 사업주, 협력업체 사업주와 작업배치 현장, 작업현장과 모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업체도 보건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정되어 있어도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업무시간 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직이 잦고, 평균 연령이 높으며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모기업 보건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상담이나 지속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체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업 전 교육이나 안전보건상태 점검을 매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보건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

독자 등 안전보건담당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이나 인원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경우 모기업 즉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며, 이로 인하여 모기업(원청)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협력업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모기업의 이중적 감독이 부담스럽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모기업은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협력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기업의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모기업-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추가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도 한정적이고 신청 절차와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극히 제한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효한 실정이다. 법이나 정책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급의 경우 법에 따라 원청은 도급사에 대하여 직접적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모기업의 보건관리자 인터뷰 과정에서도 협력업체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한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의 4.2.6에서 모기업은 스스로 협력업체 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하여 적시에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항목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실제 현장의 상황과는 대치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는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갖춰져야 하므로 모기업의 책임과 처벌 규정의 강화뿐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력업체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함께 모기업의 감독도 점차 강화됨에 따라 산업보건전문기관으

로 대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소규모협력체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나 모기업 등이 재정적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관리 비용지원 사업이나 근로자건강센터의 확충을 통한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의 어려움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고 활동 결과를 자료로 보존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호 산업보건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누구나 산업보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소규모 사업장과 협력업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산업보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매뉴얼도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자율 산업보건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며, 모기업-협력업체 간 산업보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잦은 인원 교체와 안전보건담당자의 역할에 부담을 갖는 협력업체의 자율 보건관리를 위한 안내서로 활용될 것이다.
- 연중 수행해야 할 산업보건활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보건활동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월

하게 수행할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산업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전국 대리점으로 산재되어 있는 등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한 소통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소규모 협력업체의 담당자나 근로자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하여 산업보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활용방안

- 협력업체의 자율 산업보건활동 지침서로 활용
-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는 협력업체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가능
- 매뉴얼 중 작업 전, 후 관리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활용 정도에 따라 온라인 설문지나 앱으로 개발하여 매일 자가체크식으로 활용
- 모기업에서 협력해야 할 협력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 법에서 정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료로 활용
- 소규모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발전방안 및 매뉴얼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
- 소규모 사업장 및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고원경, 이광길, 갈원모(2013). 자동차산업 모기업-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Vol.15 No.2.-47-53
- 김수근, 이수현, 김원술, 김용규, 김현주, 채유미(2008). 모기업과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보건활동 실태 및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41 No.-303-304
- 김재원(1998). 원청업체-하청업체간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Case Study를 중심으로. 한양경영연구. Vol.10 No.-209-235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2023), 고용노동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202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미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26/1926.16>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업관련 부서 문서, https://www.dir.ca.gov/dosh/wildfire/General_Contractor_and_Subcontractor_Duties.pdf
- 바클레이사홈페이지 <https://home.barclays/content/dam/home-barclays/documents/who-we-are/our-suppliers/eng-Health-and-Safety-2018.pdf>
- 사업총괄본부-89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2023), 법제처

산업재해현황(2022), 고용노동부

송기욱, 강창욱(2008). 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추계 84-100

안전보건공단(KOSHA),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 2022.12.31

영국 HSE 홈페이지, <https://www.hse.gov.uk/toolbox/workers/contractors.htm>

오세은(2006). 모기업 · 협력업체 PARTNERSHIP. 한국산업간호협회지 Vol. 13 No.1. 32-42

유지수(2002). 자동차 업계에 있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신뢰기반 저해 요인.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2002 북악경영연구 Vol.8 No.-369-386

이경용, 이관형, 오지영, 서남규, 손두익, 갈원모, 신문진(2003). 모기업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한국안전학회지 Vol.18 No.4; 136-142

이종욱(2015). 상생협력의 대기업 성장과 협력사 성장 사다리: 삼성전자 협력사 성장 사다리 사례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37 No.1;159-176

일본 안전보건경영협회 홈페이지, https://www.aemk.or.jp/roudou_anzen/roudou_anzen2-2.html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게시 문건,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300000-Roudoukijunkyokuanzeneiseibu/0000210512.pdf>

<http://m.kbsmc.co.kr/>

<http://www.aekyung.co.kr/KR/esg/partner.do>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25dc572e0a549fe8d31bd069357e66e>

<https://www.celltrion.com/>

<https://www.cjlogistics.com/ko/tool/parcel/tracking>

<https://www.dlenc.co.kr/sustainability/coexistence/Intro.do>

<https://www.hanwhasystems.com/kr/company/win-win.do>

<https://www.khnp.co.kr/saeul/index.do>

https://www.lginnotek.com/company/domestic_campus.lgit

<https://www.poscoenc.com/>

<https://www.samsungsdi.co.kr/sustainable-management/suppliers/joint-growth.html>

Abstract

.....



Abstract

Management to improve health management for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Objective : Small businesses have a high industrial accident rate compared to the overall size of the business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have a high employee turnover rate, which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s caused by human factors, and makes it difficult to operate a stabl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due to frequent replacement of safety and health personnel. For the parent companies' partner companies (contract workplaces), the parent companie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partner company's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parent companies are prohibited from giving direct instructions to their partner companies, it is difficult for the parent companies to efficiently manag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ir partner companies. Even in this situation, as the parent companies'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ir partner companies has expand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been strengthened, the burden on the parent companies, the main contractors, for managing their partner companies is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health management plan to enable small-scale partner companies to autonomously manage occupational health.

Methods : This study established the research direc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Through this process, a manual that can be used by small business subcontractor was developed. In addition, excellent industrial health management cases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partner companies were presented to serve as role models for partner companies t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 companies and perform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Advisory meetings and research meetings were held frequently, and research was conduct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parent company, partner companies, and local community-related organizations. In the literature review, we investigated the occupational health-related systems of domestic and foreign partners, and overseas cases were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UK, US, and Japa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people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38 people.

Results : This study presented 43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tems for small-scale partner companies and developed 20 manuals that required specific management. In the literature review, we investigated the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ystems of domestic and overseas partner companies such as the UK, US, and Japan, and developed and presented five best practices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Research on the need for health and safety Demands were perform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argeting health managers of the parent company and officials of the small business subcontractor. The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e analyzed 162 interview questions, derived 129 sub-concepts, and finally derived 35 core concepts required for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focus

group interviews. The survey targeted 238 people and investigated the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content, implementation cycle, and requirements for personnel required by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and also investigated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between the parent company, small business subcontractor, and workers.

Conclusion :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are continuously needed, and in particular,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through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 companies is important for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so it is important for them to make efforts to faithfully perform their respective roles.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must have the ability to be carried out autonomously, and for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withou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r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guidance on how to approach it easily and step-by-step.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the manual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utonomous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ccupational health level of workers at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and to developing systems and policies.

Key words : Small business subcontractor, Parent company, Manual, Occupational health, Small business

무 룻

.....

부 록

1.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차근차근 매뉴얼)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차근차근 매뉴얼)

매뉴얼 발간사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는 일반 소규모사업장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기업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파견, 도급 등 다양한 계약관계에 따라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업 내에 위치한 협력업체이면서도 독립된 사업장의 형태를 유지하므로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기도 하고, 원청인 모기업의 모니터링 대상도 되므로 다양한 곳에서トライ앵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에서의 산업재해가 모기업인 원청의 책임으로 강화되며 상호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모기업 및 협력업체 모두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협력업체일수록 법이나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산업보건관리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를 위하여 우리 연구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본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소규모 협력업체 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다소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 내용을 차근차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다만 연구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소규모 협력업체일수록 담당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아 안전보건업무까지 하기는 너무 어려우므로 이 매뉴얼들이 실무에 활용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이 안전보건담당자 뿐 아니라 근로자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 매뉴얼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희결(가천대학교)

목 차

1. 매뉴얼 개발 목적	1
2. 매뉴얼 개발 방향	1
3. 연중 보건관리 업무	2
4. 매뉴얼의 구성	5
5. 매뉴얼의 종류	6
6. 매뉴얼 활용 시 주의점	6
7. 매뉴얼 종류	7

1. 매뉴얼 개발 목적

매뉴얼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쉽게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협력업체의 산업보건은 모기업인 원청과의 관련성이 크므로 상호협력하여 보건관리를 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이 모기업 책임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협력업체 스스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매뉴얼은 소규모 협력업체가 스스로 보건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담당자가 매 해 수행하여야 하는 산업보건 내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하여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하여도 업무의 흐름을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과정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본 매뉴얼을 통하여 협력업체가 점차 산업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모기업과의 안정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2. 매뉴얼 개발 방향

소규모협력업체 담당자가 산업보건관리 내용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다. 서비스업은 산업재해 통계분류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기·가스·운수·이에 해당한다.

- 협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연중 수행하여야 할 항목을 제시하여 개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개발

- 잦은 이직과 산업보건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쉬운 용어로 개발
-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어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
- 주요 업무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하여 쉽게 수행하도록 함.
-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 항목별 수행절차와 내용, 목적, 방법, 관련 근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함.
- 업무 내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역할 간 혼선을 줄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함.
- 모기업-협력업체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상호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함.
-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모기업에서의 협력이 수월하도록 함.
- 협력업체에서 자율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3. 연중 보건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 등에서 정한 산업보건관리 내용과 요구도 조사, 연구회의 및 자문위원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협력업체 연중 보건관리 주요 항목을 43개 업무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중 수행하여야 할 주요 항목으로 연중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연중 계획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계획표는 실시 시기, 담당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행이 되도록 하였다. 보건관리 업무별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안내하였다. 매뉴얼은 연중 보건관리 업무별로 활용 가능하도록 20개의 매뉴얼로 제시하여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중 보건관리 계획표 하단에는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연중 계획은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협력업체 연중 산업보건관리 계획표

■ 연도 : 20 년

연번	연중 보건관리 주요 업무	협력업체					모기업
		실시 시기			담당자	활용 매뉴얼 (번호)	확인 시기
		매 일	매 월	기 타			
1	관리감독자 지정			즉시	관리감독자	05	즉시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즉시	관리감독자	05	즉시
3	작업 전 근로자 교육(작업단위별)	○			조(반)장	01	매월
4	보호구착용 상태 확인	○			조(반)장	10	매월
5	작업 전, 후 스트레칭 실시	○			관리감독자	01,17	매월
6	작업 미숙련자 파악(작업변경자)	○			조(반)장	01	매월
7	작업 미숙련자 파악(신규입사자)	○			조(반)장	01	매월
8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불안정한 상태)	○			조(반)장	01	매월
9	작업장 환기상태 파악(전체환기, 국소배기 장치)	○			관리감독자	01,02	격주
10	옥내·외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냉·온방 장치 가동상태)	○			조(반)장	01,02	격주
11	넘어짐, 교통사고, 적재 안전 확인	○			관리감독자	01,02,	격주
12	작업장 작업공구 상태 파악(적정 위치, 노후, 정돈)	○			조(반)장	01,02,03	격주
13	작업장 소독(감염, 해충 등)			격월	관리감독자	01,02	반기
14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칙 게시			반기	관리감독자	17	반기
15	뇌심혈관질환 예방 수칙 제공			반기	관리감독자	18	반기
16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자료 제공			반기	관리감독자	19	반기
17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 게시(MSDS 게시)			해당시	관리감독자	03,04	반기
18	작업환경측정 실시			상반기	사업주	11	매년
19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확인			상반기	사업주	11	매월
20	배치 전 검진실시			발생시	관리감독자	12	매월
21	배치 전 검진결과 확인			발생시	관리감독자	12	매월
22	일반건강진단 실시			하반기	관리감독자	13	매년
23	일반건강진단 결과 파악 및 조치			하반기	관리감독자	13,15	매년

연번	연중 보건관리 주요 업무	협력업체					모기업
		실시 시기			담당자	활용 매뉴얼 (번호)	확인 시기
		매 일	매 월	기 타			
24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환자 치료 확인				관리감독자	13,15,16	
25	특수건강진단실시			하반기	사업주	14	매년
26	특수건강진단 결과 파악 및 조치			하반기	사업주	14,15,16	매년
27	건강상담 실시			검진후	관리감독자	15	매년
28	위험성평가 실시			하반기	사업주	03,20	매년
29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하반기	사업주	20	매년
30	옥외근로자 냉·온열질환 예방조치			반기	관리감독자	01,02	반기
31	안전보건 표지판 게시 및 게시상태 확인		○		관리감독자	04	격주
32	모기업(원청)과 협의체 회의 준비		○		사업주	06	매월
33	모기업(원청)과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주	06	매월
34	사업장 순회점검(자체 순회점검)			격일	관리감독자	02	-
35	사업장 순회점검(모기업과 순회점검)			매주	관리감독자	02	매주
36	안전보건교육 실시(근로자)			반기	사업주	16	반기
37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담당자 등 관계자)			반기	사업주	16	반기
38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보관			반기	관리감독자	16	매년
39	연락체계 공유(모기업, 협력업체, 담당자)			즉시	사업주	07	즉시
40	부상·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구급함)			즉시	관리감독자	08	즉시
41	부상·질병 시 조치(인근의료기관 확인)			즉시	관리감독자	08,15	즉시
42	산업재해 관련 통계 취합 및 보고		○		관리감독자	09	매월
4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		○		사업주	09	해당시

*** 활용방법**

- '즉시'는 사업 시작 즉시를 의미함
- '매일', '매월'에 체크된 항목은 예시이며 사업장 계획에 따라 기재함
- '기타'는 협력업체가 계획한 구체적 월을 기재하며, 필요시 모기업과 협의 후 계획
- '담당자'는 협력업체 사업주 등 관리자가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절 등 배려가 필요함
- 기타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확인
- 시기나 담당자는 예시이므로 협력업체에서 정하여 연 계획을 수립함

4.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은 연중 산업보건관리 주요 업무 43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쉽게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소규모협력업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10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협력업체 특성에 따라 모기업에서 확인하고 협력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매뉴얼은 총 2쪽으로 구성하였으며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쪽은 해당 매뉴얼에 대한 소개와 목적, 주요 내용, 실시시기, 근거, 매뉴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쪽은 해당 매뉴얼 항목을 쉽고 빠짐없이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수행과정을 추가로 제시하여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매뉴얼 번호	매뉴얼 항목
01	작업 전, 후 확인 매뉴얼
02	사업장 순회 매뉴얼
03	유해·위험요인관리 매뉴얼
04	안전보건표지 관리 매뉴얼
05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
06	모기업-협력업체 협의체 운영 매뉴얼
07	의사소통 매뉴얼
08	응급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09	건강지표관리 매뉴얼(산업재해지표)
10	보호구착용 관리 매뉴얼
11	작업환경측정 매뉴얼
12	배치 전 건강진단 매뉴얼
13	일반건강진단 매뉴얼
14	특수건강진단 매뉴얼
15	건강상담 매뉴얼
16	안전보건교육 매뉴얼
17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
18	뇌심혈관질환 예방 매뉴얼
19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매뉴얼
20	위험성평가 매뉴얼

5. 매뉴얼의 종류

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쉽고 차근차근 접근 가능한 매뉴얼로 개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산업보건 수행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발하고 특히 협력업체 특징을 고려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매뉴얼에 의사소통 매뉴얼을 추가하여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종별, 수행항목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매일 확인 작업 전, 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매뉴얼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포커스그룹인터뷰나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작업 전, 후에 매일 체크해야 할 항목은 제시하지만 활용의 시기는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 중 체크리스트는 협력업체 담당자나 근로자의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활용 정도에 따라 온라인 형식의 체크리스트나 앱을 활용하여 담당자나 근로자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매뉴얼을 활용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모기업 안전보건관리자 및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
- 모기업 내 위치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 모기업 외 전국 대리점 형식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매뉴얼 활용 시 주의점

본 매뉴얼은 규격화되어 있거나 규정에서 정한 양식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시된 체크리스트 항목은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거할 경우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근거법을 찾아 확인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개발과정에서 요구도조사 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건설업 등 기타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매뉴얼 개발 후 검증 과정은 보건관리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 일부 인원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이므로 추후 모기업-협력업체 관계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7. 매뉴얼 종류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1. 작업 전, 후 확인]

매일 확인 매뉴얼이란?

협력업체는 모기업 내에서 일부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업단위별로 매일 안전보건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체크리스트를 말합니다.

▶ 목적

- 협력업체 작업단위별로 매일 안전보건사항 확인
- 작업자가 자주 교체되는 작업장의 재해예방
- 모기업과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 내용

- 매일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
 - 근로자 작업준비 : 불안정 상태, 업무에 대한 인지, 위험작업에 대한 인지 등
 - 안전한 작업장 : 환기 및 적정온도, 정리정돈, 작업대 및 작업공구 상태, 표지판 등
 - 작업조건 : 적절한 작업배치, 적정 인력, 요통 등 업무관련 질병 예방 등
- 작업 종료 후 확인 사항
 - 근로자 변동 : 익일 작업 변동 사항에 대한 인지, 휴가자 현황
 - 준비된 작업환경 : 작업장 정리정돈, 익일 작업량 및 내용 인지
 - 작업조건의 변화 : 익일 작업 계획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해당 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매뉴얼관리자

- 작업단위별로 협력업체에서 지정한 자, 조(반)장, 관리감독자

▶ 실시시기

- 매일 작업 전, 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나 변화가 없는 경우 주기는 자율 조정 가능

▶ 근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조 2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고려해야 할 사항

- 근거 2의 별표3 관련 사항은 유해·위험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참조
- 제시된 항목 외 사업장별 작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 결과를 모기업과 공유하여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함
- 매일 체크 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
- 신규작업자가 없거나 양호상태가 유지되면 체크리스트 작성 기간을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협의하여 주 1회 등으로 작성 주기 변경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1. 작업 전, 후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미흡 시 관리방안
〈작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1	오늘 할 업무내용을 근무자가 알고 있나요?				
2	오늘 처음 투입된 근무자가 있나요?				배치 전 검진 매뉴얼 확인
3	처음 투입자는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설명 후 작업 배치
4	질병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직원이 있나요?				관리자에 보고
5	작업자들은 작업기구나 사용이 익숙한가요?				주의사항 설명
6	작업자는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나요?(장갑, 마스크, 귀마개 등)				필요시 보호구 제공
7	근무시작 전 스트레칭은 실시하였나요?				제공된 자료 활용
8	작업장 온도는 적절한가요?				관리자에 보고
9	계절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어 있나요? (겨울/ 동상 등, 여름/ 열사병 등)				온열기 설치, 그늘막, 쉼터 운영 등
10	작업장에 냄새나 먼지는 없나요?				창문환기, 국소배기
11	위험작업이나 위험기구, 화학물질 등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전보건 표지 부착 매뉴얼 확인
12	오늘 업무 중 예측되는 건강문제는 없나요?				관리자에 보고
〈작업 종료 후 체크리스트〉					
1	오늘 작업 후 통증 호소자는 없었나요?				치료 안내
2	작업장 바닥 미끄럼, 넘어짐 위험은 없나요?				관리자에 보고
3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이 양호한가요?				재 정돈
4	화학물질 보관이 적절한가요?				보관장소, 밀폐상태 확인
5	오늘 발견된 업무관련 문제는 없나요?				관리자에 보고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2. 작업장 순회]

작업장 순회란?

작업장 안전보건문제를 발견 및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문제나 근로자 건강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목적

- 작업 환경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의 작업조건으로 인한 건강문제 파악
- 파악된 건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내용

- 실시자
 - 도급사 관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장관리책임자, 사업주 등
- 순회 시 확인 사항
 - 작업환경 : 작업장 환기상태(전체 환기, 국소배기장치), 작업장 냉난방 상태, 화학물질 보관 등 유해위험물질이나 기구 관리상태, 기타 유해위험 작업환경
 - 작업조건 : 보호구착용, 작업대 높이, 공구의 위치, 작업자세 등
 - 근로자 작업동태 및 산업재해 직·간접 요인
 - 근로자 개선의견 수렴 등
- 준비물
 -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 실시시기

- 정기 순회점검 : 모기업과 함께 1주일에 1회 이상
 -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수시 순회점검 : 협력업체 또는 모기업과 협의된 시기에 실시
-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나 조(반)장, 모기업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실시
- 모기업은 협력업체 담당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고려해야 할 사항

- 법에서는 모기업(도급사)과 함께 작업장 순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등 순회점검 기록지에 도급사 관계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자료 보관
-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모기업과 협력하여 개선
- [03. 유해·위험요인관리] 매뉴얼과 함께 체크할 것을 권유함

[02. 작업장 순회 체크리스트]

```

graph LR
    A[순회  
계획  
수립] --> B[점검  
양식  
준비]
    B --> C[점검자  
지정]
    C --> D[점검  
사항  
확인]
    D --> E[작업장  
순회]
    E --> F[개선사항  
확인 및  
서명]
    F --> G[기록의  
보존]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미흡 시 관리사항
1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 나요?				보호구 제공, 교육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교육을 하 고 있나요?				작업 전 위험인지
3	신규작업자에 대한 작업지시가 명확히 이루어 지고 있나요?				본인의 업무 이해
4	작업 전 스트레칭은 실시하고 있나요?				스트레칭 자료 제공
5	환기상태는 적합한가요?				전체환기, 국소배기
6	작업장 온도는 적합한가요?				권장온도 확인
7	작업대, 공구 위치는 적절한가요?				불편한 작업자세 확인
8	작업장 바닥 위험요인은 없나요?				미끄럼, 넘어짐 예방
9	유해물질, 위험기구 보관은 안전한가요?				안전한 위치, 보관상태
10	안전보건 게시자료는 적합한가요?				위험성 인지
11	유해·위험 표지가 부착되어 있나요?				안전보건표지 참조
12	안전보건 개선관련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였나요?				실무자 의견 청취
13	전반적 작업장 유해·위험 예방 조치가 적절 한가요?				확인자 주관적 확인
14	기타 유해·위험 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은 없나요?				추가 확인사항 파악

■ 모기업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3. 유해·위험요인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란?

유해·위험요인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목적

-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발견 및 예방적 조치의 자료로 활용
- 위험성평가 및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법적 사항의 준수

▶ 내용

- 주요 유해·위험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고온, 저온,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 중량물취급, 작업자세, 작업형태 등
 4.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 절단, 베임, 끼임 등
 5.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6.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7. 작업방법 관련 위험요인 - 하역, 철골조립, 굴착 등
 8. 작업장소 관련 위험요인 - 추락, 미끄러짐, 물체 낙하 등
 9. 기타 위험요인 - 타인의 폭력, 작업관련 교통사고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수렴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법
 - 신규작업자 및 작업 전 조화 시간을 통한 위험성 교육
 - 작업 주의사항을 기계나 시설 등에 잘 보이도록 부착
 -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 시설 설치
 -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등

▶ 적용업종

- 제조업 및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시기

- 작업 개시 전, 반기 1회 이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항의 6. 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1항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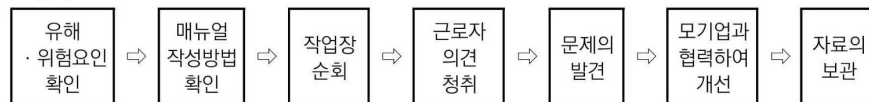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체크리스트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체크
- 모기업과 작업장순회 시 동시 확인하여 모기업과 협력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조(반)장, 관리감독자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3. 유해·위험요인관리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해당 요인
1	작업에 필요한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2	고온, 저온, 소음, 진동, 기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3	작업자세가 불편하여 생기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 중량물취급, 불편한 작업자세, 높은 기계·공구 등				
4	기계·기구, 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 절단, 베임, 끼임, 눌림 등의 위험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하단 설명 참조				
6	전기, 열(불)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7	하역, 철골조립, 굴착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8	추락, 미끄러짐, 물체·낙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9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나요? * 타인의 폭력, 작업장 내 교통사고 등				
* 작성 시 참조 - 미흡은 방호장치, 위험표시, 보호구착용 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함 - 폭발성 물질 : 화약 등 경미한 화기나 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 - 발화성 물질 : 공기에 닿아서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 - 인화성 물질 : 쉽게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 알코올, 질산암모늄, 사이안화 나트륨 등 - 부식성 물질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료를 침해하는 물질. 탄산가스 등 - 물질 구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합니다.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4. 안전보건표지 관리]

안전보건표지란?

작업장의 유해·위험 장소나 시설, 물질 등에 부착하는 경고나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 목적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인지하여 질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자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 신규작업자가 표지판을 보고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 줌

▶ 내용

- 표지의 종류
 - 금지표지 : 관계자의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화기사용금지 등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 등 위해·위험 물질이나 기구 사용 경고, 저온, 고온 경고 등
 - 지시표지 : 보호구 착용(귀마개, 마스크, 장갑, 안전모자, 안전화 등)
 - 안내표지 : 금연구역, 비상구, 대피장소, 세안 시설이나 장치 등
- 표지의 제작
 -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 표지 내 부호나 그림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의 크기로 제작
 -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
 - 야간 작업이 있는 경우 필요 시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 설치방법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나 시설, 물체에 부착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 설치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하여 표시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설치시기

- 유해·위험 물질, 기구, 시설 등이 설치된 즉시 설치
- 표지의 내용이 바뀌거나, 탈색·변형 등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교체하여 설치
- 표지의 내용이 불필요한 상황이 된 경우 즉시 제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시행규칙 별표 7~9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려해야 할 사항

- 표지판의 내용, 규격 등은 해당 법,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제작 또는 구매

- 절차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해당 유·무		표지판 설치상태		교체 필요성	
		O	X	O	X	O	X
1	출입금지 장소가 있나요?						
2	통행금지 구역이 있나요?						
3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작업이 있나요?						
4	인화성 물질이 있나요?						
5	산화성 물질이 있나요?						
6	폭발성 물질이 있나요?						
7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나요?						
8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있나요?						
9	사용금지 기계·기구가 있나요?						
10	화기 사용 금지 구역이 있나요?						
11	저온경고 구역, 기계·기구가 있나요?						
12	고온경고 구역, 기계·기구가 있나요?						
13	비상구 표시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14	기타 필요한 표지판이 있나요?						

*** 작성 시 참조**
 - 유해·위험 기계·기구 : 절단기, 프레스, 성형기, 리프트, 컨베이어 등
 - 사용금지 기계·기구 : 방호조치가 없는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공기압축기 등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X'에 체크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5.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목적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인지하여 질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자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 신규작업자가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 줌

▶ 내용

- 관리감독자 선임 : 상시근로자 5일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선임 의무

*** 미선임 시 300만원 과태료**

- 관리감독자 업무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업무 위탁 시 위탁 전문기관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7. 위험성 평가 후 개선 조치의 시행

- 관리감독자 주요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작업환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 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연 16시간의 교육 이수
-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시기

- 관리감독자 선임 시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인 경우 선임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시기 : 선임 즉시 교육 후 연 16시간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관리감독자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고려해야 할 사항

- 도급(협력)업체의 작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작업장별 선임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5. 관리감독자 업무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기계·기구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나요?				
2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나요?				
3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를 적합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요?				
4	방호장치의 필요성을 점검하였나요?				
5	산업재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나요?				
6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였나요?				
7	작업장 통로 확보를 확인하였나요?				
8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나요?				
9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보고하였나요?				
10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나요?				
11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 작성 시 참조 - 1, 2, 4, 8, 9, 10 항목은 유해·위험요인관리 매뉴얼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확인 - 3, 6, 7 항목은 순회점검 매뉴얼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확인 - 5번 항목은 안전보건지표관리 매뉴얼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확인 - 11번 항목은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여 점검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6. 모기업-협력업체 협의체 운영]

모기업-협력업체 협의체란?

협력업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도급인(모기업)과 수급인(협력업체)으로 구성된 회의를 말합니다.

▶ 목적

-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개선
-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 내용

- 협의체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 논의
- 준비물
 - 협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자료
- 회의 참석 대상
 - 모기업과 협의된 협력업체 관계자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의 면제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등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등 협력업체로 계약된 사업장

▶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법에 의한 기본 사항)
- 기타 도급사업장과 협의된 회의 일자에 개최(도급인과 합의 사항)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고려해야 할 사항

- 모기업과 협의하여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일자 등 논의
- 법에 따른 협의체 구성 사업장 또는 업무인지 확인 후 협의체 구성
- 법에 의한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6. 모기업-협력업체 협의체 운영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협약(도급) 시작 후 기본 확인사항〉				
1	모기업(도급업체)과 협력업체(수급업체) 간의 협의체 구성계획을 확인하였나요?			
2	작업 시작 일시가 확정되었나요?			
3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을 확인하였나요?			
4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연락 방법을 확인하였나요? * 작업공정 조정 등 필요시 연락			
5	협력업체(수급사)와 수급 현장 담당자 간의 연락방법을 확인하였나요? * 모기업과의 합의 사항의 전달			
6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을 확인하였나요?			
7	모기업의 연중 산업보건관리 계획을 확인하였나요? * 협력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일정 확인			
〈매월 정기회의 시 확인사항〉				
1	회의 개최 일시를 확인하였나요?			
2	회의 장소를 확인하였나요?			
3	회의 안건을 확인하였나요?			
4	회의 참석자를 지정하였나요?			
5	모기업의 당월 계획을 확인하였나요? *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6	작업장순회 매뉴얼 등 작성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자료 중 모기업 협력사항을 확인하였나요?			
7	기타 협의사항은 확인하였나요?			
* '비고'란에는 확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협의회에서 모기업 협력사항에 대하여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 모기업 협력사항 기재를 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양식에 기재하여 첨부 보관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7.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서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사소통과 정보 확보는 작업 현장의 효율성 증진과 오류 차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 조건이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기업(도급)-협력업체(수급)-작업장 단위(근로자) 간 협의하여 안전보건이 이루어지므로 상호 의사소통은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모기업(도급)-협력업체(수급)-작업장 단위(근로자) 간 효과적 의사전달
-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 작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내용

- 의사소통 방법
 - 직접 소통 : 대면 소통, 일반전화, 화상전화
 - 문자 소통 : SNS, 카카오톡 등
 - 사내소통망 : 인트라넷, 사업장별 소통망
 - 단체소통망 : 단톡방, 카카오톡채널, 밴드 등
 - 시청각방송 : 사내방송, 부서별 방송
 - 종이자료 : 건강정보 제공
 - 게시판 : 포스터 자료, 공지사항 게시
- 목적별 소통 방법
 - 회의 : 대면회의, 온라인 회의
 - 교육 :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종이자료 제공, 온라인 자료 제공
 - 공지사항 전달 : 공문서, 게시판, 시청각방송, 문자전송, 대면전달
 - 상시 정보 제공 : 포스터자료 게시, 유해·위험 작업과정 주의사항 부착
- 효과적인 의사소통(KOSHA GUIDE Z-19-2022-11-5.3)
 - (상황이해) 상대방이나 장소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다림)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해야 합니다.
 - (경청)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므로 경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요약) 상대방의 요지를 파악하여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감) 상대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타인의 관점과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적용시기

- 모기업과의 소통, 정기회의, 정기교육, 수시 업무협의, 근로자 상담 등

▶ 근거

- 조직의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19-2022)
- NCS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 고려해야 할 사항

- 장소, 거리, 시간, 대상에 따라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활용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7. 의사소통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1	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나요?			협의회, 정보의 공유, 교육, 긴급 협의 등
2	소통의 대상, 근무지, 시간을 확인하였나요?			모기업 내 소재, 전국 대리점 소재 등
3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하였나요?			대면, 온라인 등
4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을 확인하였나요?			거리, 폰이나 컴퓨터의 성능 등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확인하였나요?			문자메시지 발송 시
6	누락되는 대상은 없는지 확인하였나요?			전달에서 제외된 사람
7	정보제공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나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8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하였나요?			소프트웨어 설치 등
9	연령이나 휴대폰 성능을 고려한 방법인가요?			
10	교육이나 회의의 경우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방법인가요?			참석자 서명, 인증 등
11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나요?			회의비 지급 규정 등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 모기업과 의사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 • 모기업과 협력업체 담당자와 연락하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등 제공, 장소, 인터넷 등 공유 등 지원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고려하거나 결정한 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8. 응급대응체계 구축]

응급대응체계 구축이란?

사업장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업체는 모기업(도급)사, 협력(수급)사, 작업장 등 단일사업장보다 복잡한 비상연락망이 가동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면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목적

- 업무 중 갑자기 사고나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효과적으로 수행

▶ 내용

- 비상연락망 작성
 - 모기업(도급)사, 협력(수급)사, 작업장이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조직화하여 공유하여야 함
 -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를 포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 의료기관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
- 응급대응팀의 구성
 - 사업장 대응팀은 구급요원, 구조요원, 관리요원 등으로 각각의 인원을 배치하여 구성하여야 하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인원들을 다 갖추기에 힘들 수 있으므로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응급대응팀의 가동
 - 사고발생 → 사고확인 → 119신고 → 응급조치·발생보고(내부 비상연락망) → 재해자 이송 → 의료기관 처치 → 구두 상황보고 → 사고보고서 작성 보고 → 자료의 보존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모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 시기

- 질병, 사고 발생 즉시

▶ 근거

-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 KOSHA GUIDE H-57-20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3호), 보건복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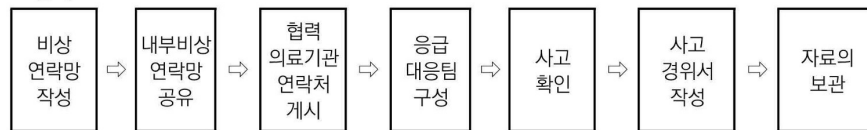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 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실(043-830-4120), 원자력안전위원회(080-004-494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제시된 비상연락망을 이용
-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됨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8. 응급대응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내부 비상연락망이 작성되어 있나요?				
2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나요?				
3	내·외부 비상연락망 자료가 공유되어 있나요?				
4	응급대응팀(직원)이 구성(배정)되어 있나요?				
5	사고경위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6	응급대응팀(직원)은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절단 시 조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나요?				
7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는 없나요?				
8	방사선 등의 특정 원인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는 없나요?				
9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 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나요?				
10	기타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9. 건강지표 관리]

근로자 건강지표관리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예방은 사소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 건강지표관리란 근로자 건강 관련 항목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 근로자 건강 변동 추이를 예측하여 예방적 조치를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산업재해의 간접요인인 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을 예방

▶ 내용

- 지표의 종류
 - 근로자 동태 변화 지표 : 결근자, 조퇴자, 신규입사자, 신규작업자
 - 뇌심혈관질환 관련 지표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지표 : 요통, 어깨, 목, 손목, 손가락 등 업무 관련 통증
 - 산업재해지표 : 재해율, 도수율, 사망만인율 등
- 지표의 산출
 - 인원수 : 확인된 사람 수(단위 : 명)
 - 비율 : 전체 인원(시간, 건)을 확인된 결과로 나누어 100, 1,000 등을 곱하여 비율로 나타낸 수(단위 : %)
 - 재해율=(재해건수/평균근로자수)×1,000
 - 도수율=(재해건수/연 작업시간)×1,000,000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해당 관리 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시기

- 근로자 동태 변화 지표 : 매일
- 뇌심혈관질환 관련 지표 : 입사 시, 건강진단 후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지표 : 입사 시, 수시 또는 반기
- 산업재해지표 : 반기 또는 연 1회

▶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위 2., 3. 항목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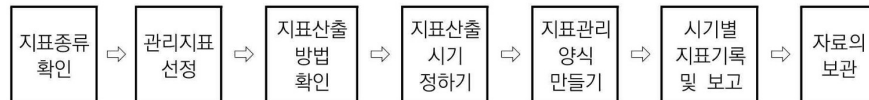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지표는 추이 관찰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 산출을 해야 함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09. 건강지표 관리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 점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발생자 수	비고
1	질병관련 결근자(휴가자)가 있나요?				
2	질병관련 조퇴자가 있나요?				
3	신규채용자가 있나요?				
4	타 작업 배치자가 신규업무로 배정된 근로자가 있나요?				
5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유소견자가 있나요?				
6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유소견자가 있나요?				
7	1주일 이상 요통 호소자가 있나요?				
8	최근 1주일 내 어깨, 목, 팔, 손 통증 호소자가 있나요?				
9	업무 중 넘어짐, 찰림, 베임 등으로 3일 이상 치료를 한 직원이 있나요?				
10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0. 보호구착용 관리]

보호구란?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 목적

-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자는 작업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함

▶ 방법

- 대상작업 파악
 - 유해 및 위험 작업별 보호 부위 확인
-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는 규격화된, 인증된 보호구를 선정하여 개인용으로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충분한 수량 구매
- 보호구 지급
 -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교육 및 보호구 지급
 - 보호구 교체 및 관리 상태 점검 : 지급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 또는 교체하여 항상 성능을 유지
 - 오염 방지를 위하여 용도에 맞고, 건조 및 소독 기능이 있는 전용 보관함을 설치

▶ 작업별 보호구 종류 예시

- | | |
|-------------------------|--------------------------|
| - 소음작업 : 귀마개, 귀덮개 | - 분진작업 : 마스크(방진, 방독 마스크) |
| - 화학물질 작업 : 장갑, 앞치마, 장화 | - 용접작업 : 안면 보호 마스크, 보안경 |
| - 주방작업 : 장화, 마스크 | - 진동작업 : 진동장갑 |
| - 겨울 옥외작업 : 방한화, 방한복 등 | |

* 유해인자별 유해정도에 따라 보호구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작업환경기관 의견을 참조하여 보호구를 구입함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보호구 착용 대상 유해 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보호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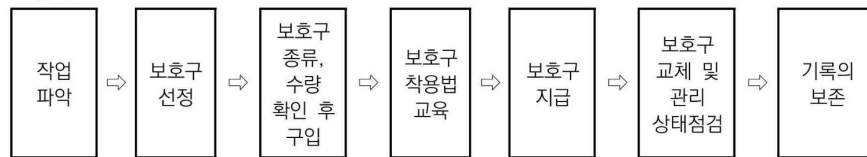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보호구 지급 수량은 해당 노동자 수에 따라 개인별로 배부하여 사용하며 주기로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지급
- 3년간 서류 기록 보존 시행(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서류)
- 별도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0. 보호구착용 관리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자를 파악하였나요?				
2	작업자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을 하였나요?				
3	보호구 종류 및 지급 수량을 확인하였나요?				
4	보호구는 개인별로 지급하였나요?				
5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을 교육하였나요?				
6	작업자는 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요?				
7	보호구 교체가 필요한 작업자가 있나요?				오염상태 등 확인
8	보호구 보관 상태 점검을 하였나요?				
9	보호구 지급대장 기록을 하였나요?				
10	보호구 구매와 지급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나요?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호구 착용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방법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
- 측정주기
 - 신규로 작업이 시작되거나 작업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 그 후 대상에 따라 매 3, 6개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측정방법
 - 작업환경측정 기관 결정(모기업과 협의하여 실시기관이나 일정 등 확인)
 - 계획에 따라 측정 실시(예비조사 실시, 시료채취, 시료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측정결과 서류는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조치사항
 -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이나 설비개선, 보호구착용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작업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해당 유해인자 발생 협력업체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제19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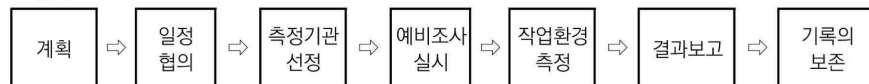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모기업 작업환경측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 가능여부 확인
- 작업장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시료측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근로자 선정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거법 참조 또는 문의기관에 문의
- 문의 기관 : 지역별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1. 작업환경측정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 주기 등을 파악하여 실시계 획수립을 하였나요?				
2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였나요? * 모기업과 협의				
3	측정기관의 예비조사 계획을 확인하였나요? * 측정 유해인자의 조사, 측정계획 협의				
4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측정을 시행하였나요?				
5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나요?				
6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나요?				
7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 지침에 보고를 하였나요?				
8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작업환경측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준비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2.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 배치 하거나 전환 배치 시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목적

-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에 노출될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 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함

▶ 내용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배치되기 전에 실시
- 검진의 실시
 -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주기 확인
 -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독려
 -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및 업무수행 적합 여부 내용 제출받음
 -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 실시
 -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
- 조치항목
 - 특수건강검진과 동일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 실시시기

- 회사별 일정에 따라 수시 검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241조 별표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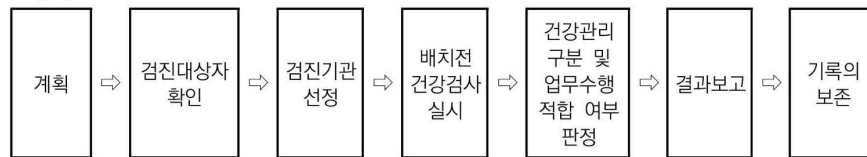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배치 전 검진은 채용검진과는 다르므로 배치 예정작업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 타 작업으로 배치하도록 함
- 이전 근무지에서 동일 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내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
- 당해 사업장 근로자 관련 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면제됨
- 모기업 건강진단 일정에 맞추어 시행 가능 여부 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거법 참조 또는 문익기관에 문의
- 기타 문의 : 지역별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2. 배치전 건강진단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신규입사자나 신규업무 배치자가 있나요?				
2	신규자의 업무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부서인가요?				
3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기간 내 대상자의 검진을 의뢰하였나요? * 작업배치 전에 검진 실시				
4	대상자에게 검진실시 안내를 하였나요?				
5	검진 결과를 확인하였나요?				
6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내용을 확인하였나요?				
7	판정 결과에 따라 작업 배치를 하였나요? *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타 작업 배치				
8	검진 결과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상담일정 안내를 하였나요? * 검진기관에서 상담하도록 안내				
9	건강진단 완료 보고를 하였나요?				
10	건강진단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해당 작업에 배치가 불가한 대상자의 적합한 작업배치가 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3.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이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란 회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 목적

- 상시 근로자 대상의 건강관리를 위함

▶ 내용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상시 근로자 전원
- 검진의 실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독려
 - 1차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도 수검 완료
 -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제출받음
 -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 실시
 -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
- 조치항목
 -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설명
 - 사후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 실시시기

- 회사별 일정에 따라 수시 검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2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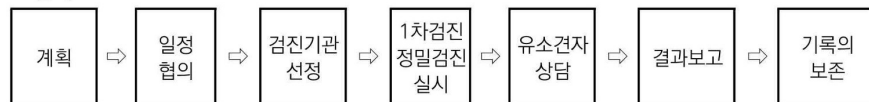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함
- 모기업 건강진단 일정에 맞추어 시행 가능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일반검진과 동시 실시하면 협력업체의 검진비용 부담이 없음
-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검진기관 지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 일반건강진단은 개인별로 인근 검진기관에서 실시 후 결과만 회사에 제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거법 참조 또는 문의기관에 문의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3. 일반건강진단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검진 실시계획수립을 하였나요?				모기업일정 확인
2	검진기관 선정을 하였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 확인				개별검진 가능
3	검진 실시 안내를 하였나요?				검진기관, 일시 등
4	1차 미수검자와 2차 검진 대상자 파악을 하였나요?				
5	1차 미수검자와 2차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독려를 하였나요?				
6	질병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나요?				
7	상담대상자에게 상담일정 안내를 하였나요?				
8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나요?				
9	건강진단 실시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나요?				
10	건강진단 완료 보고를 하였나요?				
11	건강진단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조건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 목적

-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와 그에 따른 치료를 신속히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함

▶ 내용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검진의 실시
 -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주기별로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독려
 -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제출받음
 -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 실시
 -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조치항목
 -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설명
 - 사후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 장에게 제출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확인된 협력업체

▶ 실시시기

- 회사별 일정에 따라 수시 검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241조 별표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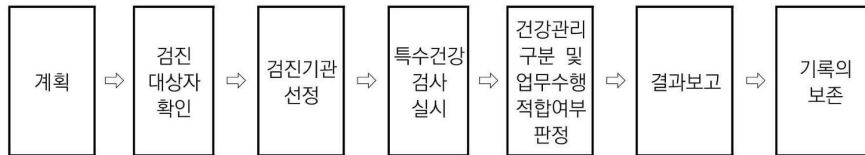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와 대상 유해인자 확인
- 모기업 건강진단 일정에 맞추어 시행 가능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선정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면 협력업체의 검진비용 절감
- 기타문의 : 작업환경측정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 허가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지청 등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4. 특수건강진단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실시계획수립을 하였나요?				모기업일정 확인
2	검진대상자를 확인하였나요?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발생 부서				작업환경측정기관 문의
3	검진실시 안내를 하였나요?				
4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였나요?				
5	결과에 따른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나요?				
6	상담대상자에게 상담일정 안내를 하였나요?				
7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내용을 확인하였나요? * 직업병 판정자 확인				직업병 판정자는 산재처리 과정 안내
8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에 따른 조치를 하였나요? * 작업전환, 작업시간 단축 등				
9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확인하였나요? * 보호구착용, 유해요인 감소대책 등				예) 소음감소대책 등
10	건강진단 완료 보고를 하였나요?				
11	건강진단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직업병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5. 건강상담]

건강상담이란?

건강검진 결과나 근로자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에 대하여 잘 청취하여 그들의 직업생활과 개인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적·개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원활한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함

▶ 방법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모든 근로자
- 건강상담시 구비조건
 - 적절한 상담장소
 - 조용하고 비밀이 보장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
 - 적절한 상담시간 확보
- 상담내용
 - 일반적 사항
 - 검진자료를 통한 일반질환 및 직업성 질환 유무 파악
 - 현 병력 청취
 - 작업상태, 유해인자 파악
 - 사회심리적 관련성 파악
 - 건강증진 활동 등 필요한 사항
- 상담내용의 기록 및 보관
 - 상담일지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보관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근로자 질병 예방이나 건강증진 활동 필요한 협력업체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함
- 상담 내용에 대해 필요시 비밀유지
- 필요시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가까운 응급의료시설과 주변 보건자원 확인
- 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위탁지원사업 신청(무료 지원)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건강상담(무료 이용)
- 모기업의 건강상담 계획과 연계하여 상담이 가능한 지 협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거법 참조 또는 문익기관에 문의
- 문의 기관 : 지역별 국가검진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5.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를 확인하였나요?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확인				
2	상담 방법을 확인하였나요? * 모기업과 협의 및 근로자건강센터 등 관내 지원기관 확인				근로자건강센터 무료이용 가능
3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시간을 확보해 주었나요?				
4	건강검진 외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파악하였나요?				
5	상담 결과 협력업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였나요? * 병원진료대상자 파악 및 진료안내 등				예) 금연, 절주 등 건강정보 제공 등
6	상담근거를 확보해 두었나요? * 관련 문서 등				예) 근로자건강센터 협조요청 문서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6.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보건교육이란 협력업체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등에 대하여 정해진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목적

-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

▶ 방법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교육 방법 선정
 - 위탁교육(외부 안전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
 - 자체교육(사업장 내에서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 등에 참여
- 교육 종류
 -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등
- 서류 보존
 - 3년간

▶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비고
근로자 교육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정기교육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직무 교육	관리책임자교육	매 2년마다 6시간 이상	신규는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및 기타 협력업체는 특별교육 시간 확인 필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안전보건교육 규정)

▶ 고려해야 할 사항

- 3년간 서류 기록 보존 권장
- 정기교육 일시 및 이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채용 시 교육 일시 및 이수증,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일지 및 이수증 확인 및 보관
- 교육 미실시 시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 위탁교육 기관은 소재지별 가까운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을 검색하여 확인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6. 안전보건교육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교육 대상을 확인하였나요?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 입사자 등
2	교육 대상별 교육시간을 확인하였나요?				
3	교육방법을 결정하였나요?				위탁/자체집체 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
4	위탁교육 시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나요?				
5	교육 일정을 확인하였나요?				
6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전달하였나요?				
7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였나요?				
8	근로자 정기교육을 하였나요?				
9	채용시 교육을 하였나요?				
10	작업 내용 변경 근로자 교육을 하였나요?				
1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근로자 교육을 하였나요?				
12	교육 미실시자에 대해 확인을 하였나요?				
13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받으셨나요? (교육이수증, 참석자 서명, 교육사진 등)				3년 보존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7. 근골격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통증, 저림, 감각이상 등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 목적

-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협력업체의 유해한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함

▶ 방법

-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표를 활용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이용(단,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제외 가능)
 - 필요시 작업측정(촬영) 방법을 이용한 부담 작업 확인
- 유해요인 조사표 및 증상조사표 작성
 - 유해요인 조사표 : 부담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작업장 상황 조사 및 작업조건 조사 등 구체적인 유해요인을 파악하는 본 조사 실시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 지난 1년 동안 증상을 느낀 통증 부위를 체크 후, 해당 통증 부위별로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현장 본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서 작성 : 작업단위별 문제점, 근로자 의견, 개선방안, 유해도 점수, 증상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으로 구성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결과 교육
 -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 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서류 : 5년간 보존(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 근골격계질환 조사는 모기업과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는 협력업체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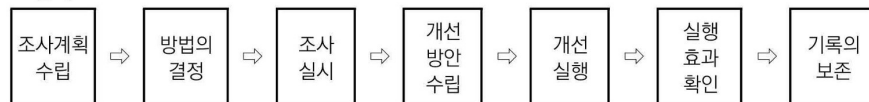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를 맞추어 실시
 - 최초 조사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조사
 - 정기조사 : 3년마다 1회(신설 시는 1년 이내) 실시
 - 수시조사 :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발생 시(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표 작업을 선정하여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5년간 서류 기록 보존 시행(해당 작업 동안 보존)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7.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있나요?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협의하였나요? * 자체조사, 모기업 협력, 외부기관 의뢰 등			
3	결정된 방법에 따라 일정을 수립하였나요?			
4	조사 시 협력업체에서 협조 또는 해야 할 일을 확인하였나요?			
5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나요?			
6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찾으셨나요? * 조사자,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모기업이 함께 노력			
7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실행하였나요?			
8	실행 결과가 만족스러웠나요? * 근로자 의견 확인 포함			
9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하였나요?			
10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5년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8. 뇌·심혈관질환 예방]

뇌·심혈관질환이란?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고용문제, 작업 변화, 장시간 노동, 인간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목적

- 업무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더욱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 방법

- 대상 확인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하는 작업자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실시(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질환 예방자료 참조)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설문조사 실시
- 뇌·심혈관 발병도 평가 결과 및 업무 적합성 평가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건강권,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 업무 적합성 평가
 - ① 통상 근무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 ② 조건부 근무 :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 ③ 병가 또는 휴직 :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 치료가 필요
 - ④ 작업 전환 : 현재의 업무 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 전환 조치 필요
- 사후관리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생활습관 개선, 질병 관리, 근무상 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및 해당 위험요인이 있는 협력업체

▶ 시기

- 2년에 1회 이상(조사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 1년 1회 이상)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 KOSHA GUIDE H-200-2018(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 위험도 평가 및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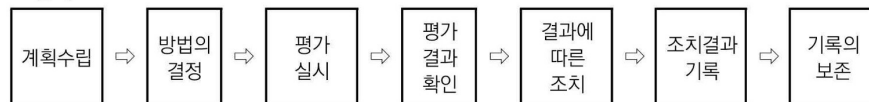
▶ 기타 고려할 사항

- 자체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모기업과 협의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8. 뇌·심혈관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1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시기를 계획하였나요?			2년에 1회 이상(발병 수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2	평가방법을 결정하였나요? * 자체평가, 모기업 협력, 외부기관 의뢰 등			
3	평가 시 협력업체에서 협조 또는 해야 할 일을 확인하였나요?			
4	평가결과를 확인하였나요?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5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찾으셨나요? * 조사자,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모기업이 함께 노력			통상근무, 조정부 근무, 병가, 휴직, 작업 전환 등
6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실행하였나요?			
7	개선결과가 만족스러웠나요? * 근로자 의견 확인 포함			
8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하였나요?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금연, 고혈압관리 등
9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9. 직무스트레스 예방]

직무스트레스란?

근무조건, 근무내용,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및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 목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 기인 산업 질병과 안전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방법

- 대상
 -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야간 작업, 교대 작업, 차량 운전 작업, 정밀기계 조작 작업자,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
- 검사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 사용(43문항 또는 단축형 24문항, KOSHA GUIDE)
- 검사 분야
 - 8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 :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 검사 후 관리
 -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 확인된 스트레스 과다 영역의 해소를 위하여 직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근로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 후 전문가 의뢰를 검토
 - 교육훈련 실시 및 건강증진 활동 실시(긴장이완 프로그램 실시 등)
 - 연 1회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실시 전·후 스트레스 수준 비교하고 건강상태를 건강진단 기록과 연계하여 검토
 - 정기적인 기업문화 점검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직무스트레스 개선 대책 시행 후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재평가한 후 사전 측정 결과와 비교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협력업체

▶ 시기

- 2년에 1회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KOSHA GUIDE H-67-2012(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

▶ 고려해야 할 사항

- 직무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검색 또는 지역본부에 문의
- 설문지로 평가한 결과는 참조할 자료이며 상담,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 또는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해야 함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19. 직무스트레스 예방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비고
1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나요? * 대상, 일정, 방법 등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야간 작업, 교대 작업, 차량 운전 작업,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2	직무스트레스 관리 주기를 확인하였나요?			2년마다
3	결정된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를 하였나요? * 자체 실시, 모기업협력, 외부기관 의뢰 등			
4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나요?			
5	설문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근로자를 전문가 의뢰를 하였나요?			
6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였나요?			
7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나요?			확인된 문제 해결 방안
8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하였나요?			
9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한 건강증진 활동을 하였나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10	자료 보존을 하였나요?			설문지, 교육자료 등
* KOSHA GUIDE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참조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목적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 수립
- 개선조치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내용

- 실시주체
 - 사업주
- 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거나 예견되는 유해·위험요인
 -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제외
- 평가의 실시
 -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성평가관련 교육을 이수 후 평가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평가 가능
- 평가절차
 - 사전준비 : 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수렴 등
 - 위험성 결정 : 위험성의 수준 파악, 허용 가능한 수준 정도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시설개선, 관리적 대책, 보호구착용 등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적용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위험성평가 대상 협력업체

▶ 실시시기

- 최초위험성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
- 정기위험성평가 :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수시위험성평가 : 기계, 기구, 작업방법 등의 신규도입 등 사유 발생 시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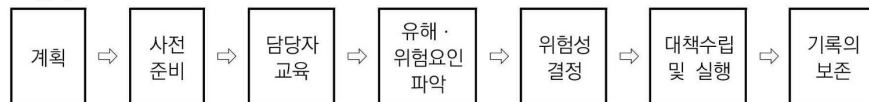
▶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시 모기업 일정에 맞추어 시행 가능여부 확인
- 평가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를 참조
- 문의기관 : 고용노동부 지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

[20.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절차



■ 협력업체명 :

■ 점검부서 :

■ 연도 : 2023년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비고
1	실시 주기를 확인하였나요?				
2	실시계획수립을 하였나요?				
3	사전준비 사항을 확인하였나요?				
4	담당자 지정을 하였나요?				
5	위험성평가 방법을 결정하였나요? * 자체평가 또는 외부기관 의뢰				모기업과 협의
6	평가방법에 따른 일정을 수립하였나요?				
7	유해·위험사항을 파악하였나요?				평소 작성한 해당 매뉴얼 자료 참조
8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나요?				
9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보고하였나요?				
10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나요?				모기업과 협력
11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실행하였나요?				
12	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였나요?				평가서류의 보존

■ 점검일 : 20 년 월 일 요일 (: ~ :)

■ 협력업체 점검자 : 직위

성명

(서명)

모기업 협력사항	모기업 협력사항	'아니오'에 체크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항 기재
	협력업체 해결사항	협력업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조치사항 기재

2. 국내 · 외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1) 우리나라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1) 법적 제도

법적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사항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본 법에서는 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2)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지침(KOSHA GUIDE Z-22-2022)

가)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업장 운영은 협력업체와의 공유 번영을 요구한다. 안전보건 책임자는 협력업체 선정 조건과 협력업체 관리 지침에서 이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서도 ‘조직의 상황 이해’, ‘내외부 이슈’ 관련 사항으로 협력업체 관리가 요구된다. 이 지침서는 안전보건분야에서의 협력업체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ISO 또는 KOSHA-MS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무담당자, 내부 심사원, 근로감독관, 그리고 사업주에 적용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지원사업 또는 협력업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리인의 역량증진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및 무재해 촉진 또는 안전 문화 정착'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담당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중략, 이하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

4.2.1 상호지원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

- (1) 협력업체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 (2) 프로젝트 전반의 주요 주체 파악 및 각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3) 전체 프로젝트 구조 내에서 단계별 의사소통 체계를 분명히 한다.
- (4) 해당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노력을 상호 조율한다.
- (5)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바) 역량 확보
 - (사) 의사소통 방법
 - (자) 비상 대응 절차

4.2.3 계획수립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책임소재 결정을 한다.

- (3) 최상의 방법은 모기업의 관리체계를 최소기준으로 삼고, 협력업체가 능력이 되는 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4.2.4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 (1)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 (3) 필요하다면, 모기업은 관리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돕고 자체 인력 교육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4.2.5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면, 각 협력업체가 업무와 관련한 위험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려할 기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4) 경영진의 의지
- (5) 의사소통 방법
- (8) 관련 통계 검토

4.2.6 모기업은 스스로 협력업체 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하며, 다음 사항 확인한다.

- (3) 연락책이 되는 근로자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미팅
- (5) 적시에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5.2.1 안전보건 방침 및 관리 분야

- (1) 문서화된 안전보건 방침이 있는가?
- (2) 독립된 안전관리 전담부서(인원)가 있는가?

5.2.2 안전 작업 수단 및 절차 분야

- (1) 작업절차 또는 특정한 안전 지침/지시가 있는가?
- (4)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5.2.3 교육/훈련 /검진 분야

-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3) 산업 안전보건 법에 따른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 (4) 종업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일반/특수)을 실시하는가?

5.2.4 안전보건 작업장 검사 분야

- (1)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체크리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 (2) 작업장의 공도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3) 작업자 위험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가?

6. 사업주의 의무

6.1 사업주(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 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부서장은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6.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설비 및 장비를 운전하도록 할 경우에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도급업체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7.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7.1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7.5 도급업체 안전교육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5.1 안전수칙

7.5.2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7.5.3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7.5.4 안전작업절차

7.5.5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7.5.6 응급조치 기구의 사용법

7.6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도급을 준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8.3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8.5 금연 구역 내에서는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관리 일반사항

8.1.1 협력업체는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담당자(또는 공사감독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시정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1.2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8.1.3 협력업체는 종업원 채용 시 지정된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자의 취업 금지 또는 근로제한을 시켜야 하며 기존 종업원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1.4 해당 업체별로 공사 직원과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1.5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 관리하여야 하는 법적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정책 사례

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 전 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다) 사업 참여 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3.2.28.(화)~2023.3.14.(화), (2차) 2023.3.30.(목)~2023.4.11.(화)
- 제출서류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 :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1차) 2023. 3. 22.(수)~2023. 3. 24.(금), (2차) 2023. 4. 14.(금)

라)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① 지원내용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② 지원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③ 지원한도

정부(공단)와 모기업(매칭지원 신청 모기업) 각 50% 비율로 분담

- 1유형 : 컨소시엄 자체 필요분야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
 - 지원한도 : 컨소시엄 당 5천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사내 · 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규모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컨설팅 과제+추가선정과제(안전보건 활동과제)
- 2유형 :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 지원
 - 지원한도 : 협력업체 당 1천만 원 한도(컨소시엄 당 2억 원 한도)
 - 지원대상 : 사내 협력업체(50인 미만), 사외 협력업체 · 지역중소기업(규모 제한 없음).
 - ※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협력업체”는 지원 제외
- 3유형 : 컨설팅 비용 지원 없음(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만 참여)

- 프로그램 작성
 1. 협력업체(사내 · 사외)와 공생협력단 구성(모기업)
 2. 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승인 신청 · 심사(계획수립 컨설팅)
 1.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2.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3. 당해 연도 신규 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 위험성 평가
 1.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지원(모기업)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 · 이행
 1.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지원계획 포함
 2. 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모기업)
- 현장 기술지도
 1. 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안전보건공단)
-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1.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 확인 기술지도
 1.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확인(공단)
 2.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1.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고용노동부, 공단)

2)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

(1) 영국

영국 Barclays 기업의 협력업체 관리 사례

구분	내용
1. 안전보건 관리	• 협력업체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H&S (보건안전) 위험을 통제 하기 위해 정의된 H&S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Barclays가 선호하는 제3자 공급업체 평가를 통해 H&S 사전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제도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낮음' 건강 및 안전 위험 등급을 달성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가 '높음' 위험으로 평가되는 경우 H&S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낮음' 위험 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역량	• 협력업체는 다음에 대한 유능한 H&S 조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들이 운영하는 관할권 - 협력업체는 자신의 활동(하청업체 포함)의 안전을 책임지고 현장에서 협력업체(및 하도급 회사)의 대표 역할을 할 유능한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훈련	• 협력업체는 Barclays 사이트에서 작업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담당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유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직원이 H&S와 관련하여 모든 작업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받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올바른 장비를 제공 받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자격증은 Barclays에서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적 규정 준수	• 협력업체는 Barclays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H&S 법률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구역의 모든 해당 H&S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 H&S 법적 요건에 대한 준수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 지역 법률을 모니터링하고 바클레이스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요건을 잠재적 영향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협력업체 관계 관리자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5. 운영과 관리	• 협력업체는 Barclays의 내부 표준, 적절한 산업 표준 및 지역 모범 사례와 같은 기타 H&S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는 직원들이 Barclays Minimum Health and Safety Operational Delivery Requirements Manual(첨부 문서 참조)에 명시된 기대치를 인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지 H&S 규제 요건이 Barclays Minimum Health and Safety Operational Delivery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지 규제 요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6. 업무에서의 안전체계	•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는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업무별 위험 평가 및 방법 명세서의 지원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별 위험 평가는 (i)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위험 및 위험을 식별하고, (ii)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환경을 식별하며, (iii) 해당 위험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안전 제어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 방법 설명은 작업이 안전한 방식으로 완료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며 위험 평가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작업과 관련된 제어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7. 하청업체 관리	• 협력업체는 자신이 임명한 하청업체가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H&S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그들이 사용하는 하청업체가 적절한 H&S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전 자격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또한 진행 중인 H&S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들이 고용하는 하청업체의 성과 및 그들이 성과에 대한 적절한 문서 증거를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점검	• 협력업체의 작업 영역/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H&S 검사를 수행하여 작업 관행, 재료 및 작업 품질을 검토하고 모든 검사를 기록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된 개선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록은 Barclays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9. 사고보고	• Barclays 건강 및 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 • 특히: 사망자, 치명적인 부상 및 시간 손실 부상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즉시 보고합니다 - 의료 사례, 응급 처치 사례 및 근접 미스

구분	내용
	•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직원,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의 활동 및/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피해(바클레이의 직원 및 고객 포함)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협력업체의 직원이 지역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사고를 지역 집행 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서 확인은 Barclays SRM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10. 보고	• 협력업체는 성과 지표를 통해 H&S 성과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다음을 정의해야 합니다(비전체 목록) - 선도적 지표[예] 법적 계획예방정비(PPM) 일정, 검사, 위험평가, 조사, 교육, 시정 조치의 완료 등] - 지연 지표[예] 건강 악화, 사고(사고 포함), 근거리 무선 통신 등] • 모든 지표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영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 끊임없는 개선. 지표는 정기적으로 Barclays SRM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2) 미국

■ Job Site Safety Checklist

미시건 주 산업안전보건국, 개별 회사별로 업무 전 산업안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며 항목은 행정적 측면, 낙상 위험 예방, 전기 사용 예방, 끼임 등의 사고 예방, 위험요인 방지(화학물질 포함) 등으로 이루어졌다. 미시건 주 작업현장 안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작업 현장 안전 체크리스트					
업무명 _____	조사관 _____	날씨 _____			
조사날짜 _____	현장감독 _____	온도 _____			
최근 조사 일자 _____	조사 유형 _____	풍속 _____			
준수	✓	준수하지 않음	X	해당 없음	N/A

Item #	Description	Status
행정		
	사고 예방 프로그램 사본이 현장에 있고 검토할 수 있습니까?	
	MIOSHA “안전 및 건강” 포스터가 직원 공용 공간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MIOSHA 300A 로그는 직원 공용 구역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필수입니다.	
	MIOSHA 301 로그가 사고 보고에 사용됩니까?	
	SDS 포스터는 직원 공용 구역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과 응급처치 키트가 현장에 있습니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재, 스크랩, 부스러기가 쌓여 보관되어 있습니까?	
	작업 현장에 화장실이 적절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작업 현장에 식수가 적절하게 공급됩니까?	
	작업 공간, 통로 및 응급처치실에 적절한 조명이 제공됩니까?	
	현장에 밀폐된 공간이 있고 밀폐된 공간 출입 절차가 있나요?	
낙상 예방		
	높이가 6피트 이상인 측면이나 가장자리가 보호되어 있습니까(지붕 또는 바닥)?	
	최소 치수가 2인치보다 큰 구멍은 덮개, 난간 또는 PFAS로 보호됩니까?	
	높이가 30인치, 너비가 18인치를 넘는 벽 개구부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계단과 계단참의 개방된 측면이 가드레일과 난간으로 보호됩니까?	
	발굴 현장은 바리케이드나 울타리로 보호되어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직선형 우물, 구덩이 또는 수갱이 난간으로 보호됩니까?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		
	개인 추락 방지 시스템 구성품은 사용하기 전에 매번 검사됩니까?	
	고정 지점이 5000lbs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제공 및 설치된 의도한 부하의 2배에 해당하는 안전 계수를 유지합니까?	
	추락 시 15분 이내에 구조할 수 있는 구조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명줄과 랜야드는 마모나 절단으로부터 보호됩니까?	
	하네스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정했습니까? (꼭 맞는 핏 - 스트랩	

	아래 손가락 2개, 등 중앙의 D링, 가슴 및 다리 스트랩이 적절하게 조정됨)	
	PFAS 구성요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호환되고 사용됩니까?	
	난간 시스템	
	상단 레일이 보행/작업 표면에서 42인치 +/- 3인치 높이에 있습니까?	
	중간 레일이 21인치 높이에 있거나 상단 레일과 보행/작업 표면 사이의 중간에 위치합니까?	
	직원이 아래에서 작업 중이고 떨어지는 재료나 도구에 부딪힐 수 있는 표면에 발가락 판 또는 기타 낙하물 보호 장치가 제공됩니까?	
	수직 난간 지지대가 8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200lbs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가드 레일이 구성 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200lbs보다 큰 하중을 받는 가드레일은 수직 지지대가 8'보다 더 가깝게 배치된 더 무거운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와이어 로프 가드레일은 눈에 잘 띄는 재료로 6피트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체인, 게이트 또는 탈착식 가드레일이 장착된 호이스팅 구역의 가드레일 시스템이 사용됩니까?	
	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구멍 주변의 가드레일 시스템에는 직원이 구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이트 또는 오프셋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천공이나 열상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을 방지하고 옷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 시스템이 표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망 시스템	
	안전망은 직원 바로 아래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리는 3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힘을 받을 때 아래의 표면이나 구조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이 그 아래에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망의 마모, 손상 또는 기타 품질 저하 여부를 최소한 매주 검사합니까?	
	그물에 떨어진 재료, 스크랩 조각, 장비 및 도구는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다음 작업 교대 전에 제거됩니까?	

	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작업 표면의 가장 바깥쪽 돌출부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됩니까? • 직원보다 5피트 이상 낮은 경우 8'-0" • 직원 아래 5피트 이상 10피트 미만인 경우 10'-0" • 직원보다 10피트 이상 낮은 경우 13'-0"	
	구멍 커버	
	커버는 언제든지 커버에 가해질 수 있는 직원, 장비 및 자재 무게의 두 배를 실패 없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직원, 장비 또는 바람에 의한 우발적인 이동으로부터 덮개가 보호되어 있습니까?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덮개에 색상이 지정되거나 “구멍” 또는 “덮개”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사다리	
	사용 중인 휴대용 사다리의 정격 정격이 Type 1 이상입니까?	
	사용 전과 위험 발생 후 사다리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합니까?	
	확장 사다리는 변위로부터 안전하고 적절한 4:1 피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작업 표면 위로 최소 3피트 이상 확장되어 있습니까?	
	계단 사다리가 평평한 표면에 설치되어 있고 완전히 열리고 잠겨 있습니까? 발판사다리를 직선사다리로 사용하거나 맨 위 계단이나 캡 위에 서지 마십시오.	
	진흙, 기름 또는 얼음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다리 가로대를 검사합니까?	
	발판	
	교대 근무가 시작될 때 유능한 사람이 비계를 검사합니까?	
	바닥판과 진흙탕 또는 기타 적절한 견고한 기초(콘크리트, 원목 데크)를 사용하여 지상 지지 비계를 세웠습니까?	
	높이가 10' 이상인 비계는 뒤쪽과 양쪽 끝의 난간으로 보호됩니까?	
	작업 층은 완전히 깔려 있거나 바닥이 깔려 있고 변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까?	
	밀폐된 비계는 바람 하중에 대해 고정되거나 묶여 있거나 버팀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발판은 최소 기초 치수 높이의 4배 이상으로 구조물에 묶여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비계 위 또는 근처에서 작업하는 직원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낙하물 보호 장치(발가락판, 스크린, 단단한 시트 등)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매달린 비계의 타이백이 구조물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달린 비계용 아웃리거는 의도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균형추를 갖추고 있습니까?	
	PFAS의 고정 지점과 수직 생명줄은 지원되는 비계 서스펜션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보호됩니까?	
전력 점검		
	임시 회로의 모든 전기 도구 또는 장비에 접지 결함 회로 인터럽트가 사용됩니까?	
	연장 코드와 후행 코드의 마모, 손상, 접지 단자 누락 여부를 검사합니까?	
	50V를 초과하는 모든 충전 부품은 접근 제한, 안전 표시 사용, 패널의 막다른 전면 또는 덮개 사용을 통해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됩니까?	
	전기 회로에서 작업해야 하는 직원은 개인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 또는 잠금/태그아웃 절차를 통해 보호됩니까?	
	전압이 흐르는 패널은 안전하고 전압을 나타내는 안전 표시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전압이 흐르는 패널은 안전하고 전압을 나타내는 안전 표시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전력선(지상 및 지하 모두)을 식별하고 안전한 거리(최소 10피트에서 최대 50K 볼트)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접지하고 이동하거나 절연하여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됩니까?	
	알루미늄 사다리와 크레인 등 최대 50K 볼트의 전력선에서 20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발전기, 압축기, 휴대용 조명 스탠드가 접지되어 있습니까?	
	임시 조명은 적절한 고정 장치로 지지되고 가드를 사용하여 보호됩니까?	
	전구가 없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임시 조명이 유지됩니까?	
충격에 의한 위험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노출된 직원은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부딪혀 떨어지는 물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재가 쌓여 있거나, 랙에 쌓여 있거나, 막혀 있거나, 연동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물질 낙하 위험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해제하기 전에 트레일러, 철도 차량 또는 트럭에 실린 화물의 안정성을 검사합니까?	
	처리할 벽돌, 블록, 포장된 제품 또는 목재 더미는 큐브 2개, 팔레트 2개 또는 높이 6피트로만 쌓이도록 제한됩니까?	
	구조물의 지붕이나 상부 바닥에 있는 자재가 보호되지 않은 외부 가장자리로부터 10피트 이내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건물이나 구조물 외부 20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자재를 버릴 때 폐기 슈트가 제공됩니까?	
	물질이 투기되는 구역은 추락 구역에서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높은 하중을 받거나 높은 하중이 통과하는 구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자재나 기타 하중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기 전에 리깅 장비의 마모나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까?	
충돌한 비행 물체		
	공압식 또는 화약식 작동식 패스너를 작동하기 전에 침투 점검을 실시합니까?	
	우발적인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압 스테이플러 및 네일러에 순차 트리거가 사용됩니까?	
	다이와 도구가 실수로 배열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압식 충격 도구에 안전 클립이나 리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구와 호스 라인 사이의 연결부와 모든 퀵 메이컵 유형 연결부에는 우발적인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패스너가 제공됩니까?	
	직원들이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치핑 또는 그라인딩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테이블 톱에는 파편이나 부러진 톱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지붕이나 위층에 보관된 자재는 바람에 의한 변위로부터 보호되는 건설 중인 구조물입니까?	
부딪혀 흔들리는 물체		
	매달린 하중은 태그 라인을 사용하여 제어됩니까?	
	크레인 및 기타 리프팅 장비 운영자가 다른 직원 근처에서 화물을 흔들 때 가청 경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전 장비의 위험을 직원에게 경고하기 위해 회전 장비 상부 구조물의 스윙 반경에 바리케이드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부딪혀 굴러가는 물체		

	직원들이 임시교통 통제지침에 따라 도로 근처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임시 교통 통제 작업 구역 및 장치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공공 통행권에서 일하는 직원은 적절한 PPE, 반사 의류를 착용하고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동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이 가해지는 경우 철도 차량, 트럭 또는 세미트레일러는 적재 및 하역 중에 고임목을 채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모바일 장비를 주차하거나 경사면에 모바일 장비를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까?	
	장비 후면의 시야가 가려진 장비를 백업할 때 기능적 백업 경보 또는 감시 장치가 사용됩니까?	
	직원이 운전하거나 탑승할 자동차에 좌석과 안전벨트가 제공되고 유지관리됩니까?	
위험에 갇히거나 위험 사이에 있음		
	위험	
	굴착 작업의 위험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검사합니까?	
	굴착 깊이가 4피트 이상이고 간격이 25피트 이하인 곳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굴착면이 적절하게 지반, 경사 또는 차폐되어 있습니까?	
	전리품 및 기타 보유 재료가 발굴지 상단에서 2피트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까?	
	굴착 상단을 따라 필요한 곳에 정지 로그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덤프트럭 뒷문의 손잡이가 덤프 시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습니까?	
	자갈, 모래, 쇄석은 돌출부와 수직면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더미나 무덤 지역에서 제거됩니까?	
	끼어들다/그 사이에	
	모든 도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안전 기능이 작동합니까?	
	모든 기계 및 장비의 벨트, 풀리, 샤프트, 기어 및 스피들이 보호됩니까?	
	도구와 장비가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작업자는 장비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 사이에 위치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까?	
	유지보수 작업 전에 장비의 움직이는 부분이 막혀 있거나, 받침대가 있거나, 지지되어 있습니까?	
	장비의 핀치 포인트가 적절하게 식별되고 보호되며 직원이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까?	

(3) 일본

■ 체크리스트 사례

일본의 아오모리 노동국에서 작성한 안전위생체크리스트 사례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하청업체의 보건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 해당하는 □(예·아니오)에 체크해 주세요.

1. 안전 위생 관리 체제	예	아니오
(1) 연간 또는 월간의 안전 위생 활동의 목표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	☐
(2) 경영 정상에 의한 안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안전 위생 추진자를 선임하고 있습니까?(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
(4) 일정한 위험 유해 업무에 작업 주임자를 선임하고 있습니까?	☐	☐
(5) 노동자로부터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	☐
2. 일상 안전 위생 활동	예	아니오
(1) 작업 개시 전에 안전 위생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	☐
(2) 4S(정리·정돈·청소·청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
(3) 위험 예지 훈련(KYT), 위험 예지 활동(KYK)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4) 히야리 모자 사례를 파악하고 확실히 개선하고 있습니까?	☐	☐
(5) 노동자는 안전 및 위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
3. 법령에 근거한 위험 방지 조치	예	아니오
(1) 비계의 설치 등에 의해 추락·전락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2) 건설 기계에 의한 재해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자산의 굴착 작업 등에 대해 토사 붕괴 재해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4) 크레인, 하역 기계 등에 의한 재해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5) 기계 설비의 정기 자주 검사·작업 개시 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4. 위험·유해요인의 제거·저감	예	아니오
(1)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 (리스크 평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2) 리스크 평가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작업 표준의 책정시에 위험·유해 요인의 저감·제거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5. 안전 위생 교육	예	아니오
(1) 면허·기능 강습 및 특별 교육에 대해 유자격자를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	☐
(2) 신규 고용 또는 작업 내용을 변경한 노동자에게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위험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6. 작업 환경·직업성 질병 예방 대책	예	아니오
(1) 아크 용접 등의 분진 작업에 의한 진폐의 방지 조치는 실시되고 있습니까?	☐	☐
(2) 유기 용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옥외 작업 등에서의 열사병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4)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의 장해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7. 건강 유지 증진 대책·멘탈 헬스 대책·과중 노동 대책	예	아니오
(1) 정기 건강 진단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
(2) 유해 업무 종사자에게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분진 작업 종사자에게 진폐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4) 건강진단의 유소견자에게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5) 노동자에게 건강 교육,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6) 노동자의 정신 건강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7) 장시간 노동자에 대해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8) 전면 금연, 공간 분연 등에 의해 수동 흡연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결과

1)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내용 요구도(FGI)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	협력업체	그러니까 매뉴얼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매달 매달 말 주에 말일 2주에는 안전보건 실시하겠다.	매뉴얼의 계획효과	계획수립
2	보건관리자	다음 달에 진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익일 업무에 대한 인지 필요	
3	보건관리자	거기는 연간 계획 같은 건 없나?	연간 계획의 수립 필요	
4	보건관리자	책임감도 있고 교육시키고 하려면 아 교육 갔다 오면은 요즘엔 잘 시키니까 업무를 알잖아요.	관리감독자 교육의 효과	관리 감독자 역할 인식
5	보건관리자	그거(교육)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마인드가 좋아졌어요.	담당자 교육의 효과	
6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이런 데 와 갖고 바쁜데 와 갖고 간 2~3시간씩 와서 하겠어요.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	
7	협력업체	고용부에서 왜 안했어 이렇게 다그치지만 (소규모 사업장 담당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담당자의 업무 한계	
8	협력업체	교육을 누가 받냐면 운영기 때문에 총무과가 있는 사람이 받아.		
9	협력업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관리감독자는 선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부적절한 선임	
10	보건관리자	원청에 있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협조적인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담당자 지위 확보가 중요	
11	보건관리자	사업주도 사업주지만 그 담당자들이 하려고 해야 하는데...	담당자 의지 중요	
12	보건관리자	매뉴얼 밑에는 항상 작성 방법도 있어야 해요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체적 업무 지시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3	보건관리자	이것까지 다 적어줘야 돼요.	꼼꼼히 기록하기	
14	협력업체	체크리스트 파트별로 딱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 상태 양호 양호 중요 중에 매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기	
15	협력업체	노인은 60세 넘은 사람이 와가지고 수건을 이것도 피부 스캔 들어가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노인의 무지	근로자 교육
16	협력업체	노동지사 잠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다 하니까	모기업 관리에 의존	모기업 감독의 부담감
17	협력업체	모기업 감독이 노동부보다 심하다.	모기업 감독의 부담감	
18	협력업체	모기업에서 자꾸 나오니까 힘들어서	모기업의 강요	
19	협력업체	모기업은 협력업체 협약 안해버린다 하면 그만이에요.	모기업의 강요	
20	협력업체	고용부에서 물질 바꿔라,,	고용부 감독사항	법의 준수
21	협력업체	고용부 점검사항 검토를 참고해서		
22	보건관리자	...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막 매뉴얼 대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유연성에 익숙함	
23	보건관리자	검진도 안 챙겨요. 검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	도급관련 법의 한계	
24	보건관리자	사내 검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저는 안 불러요.	도급관련 법의 한계	
25	협력업체	(교육을)형식적으로 하든	형식적 교육	보건교육
26	협력업체	그게 제일 (관리할 것이) 많은 게 물질안전보건자료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27	협력업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교육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형식적 보건교육	
28	보건관리자	(안전은)지적 사항이 많으면 그거를 고치려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안전 중심 인식	보건의 중요성
29	보건관리자	안전은 엄청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건 도 그 이상 일이 많잖아요.		
30	협력업체	그래서 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발 작업장 안에서 먹지 마.	투입경로에 대한 무지	산업보건 지식 부족
31	협력업체	불편해서 다 떼버린다고요 어디 갔어요 몰라 이 말아버리니까	기계 보호장치 제거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32	협력업체	그리고 또 그 전문성도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 없는 직원에 의한 교육	
33	협력업체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해. 이거 제끼고 열고 하다가 더 위험해.	보호장구 활용법 부재	
34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들이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 것 같죠 백지상태예요	교육 효과 부재	
35	협력업체	배치전 검진과 채용검진은 다른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배치전 검진 인식부족	산업보건 관리 미흡
36	협력업체	보건 교육은 안 하는 사업장은 100개면 99개는 안 하는 거고	보건교육의 미실시	
37	협력업체	신규 입사자 또 교육도 해야 되잖아.	신규입사자 교육 미실시	
38	협력업체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저기 특수검진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기 정기적이긴 하지만 기간이 인터와이 길잖아요.	작업환경측정 주기 지식부족	
39	협력업체	특수검진 안받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특수검진 미실시	
40	협력업체	따로따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스트레치 미실시	
41	협력업체	카버를 덮개를 씌우면 좀 낫지 않아요? 불편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위험해 오히려 더 위험해.	보호장치의 제거	
42	보건관리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업체는 또 그렇죠. 아예 생각도 못하잖아요.	산업보건에 대하여 모름	
43	보건관리자	청소원들을. 근데 결국은 거기서 잘 몰라요.		
44	보건관리자	일일이 다 적어주지 않으면 몰라서 못해요.		
45	보건관리자	특수검진도 잘 모를 거예요.	특수검진에 대하여 모름	산업보건 관리 지식 부족
46	보건관리자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대행에	대행기관 의존	
47	보건관리자	그러니까 대행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알려주겠죠.		
48	보건관리자	대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49	보건관리자	저희는 대행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에서 안전 대행이 오고 보건 대행이 오니까.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50	보건관리자	(대행기관과)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51	보건관리자	대행을 하고 한 군데는 보건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대행기관에서 관리	
52	보건관리자	대행에서 다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행의 편리성	
53	보건관리자	월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명확하지 않아 그냥 대행을 주면 되나 보다...	대행기관으로 전환	
54	협력업체	30명 여기 20명 60명을 대행을 하는 거야.		
55	협력업체	힘드니까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선임하거나 대행으로		
56	보건관리자	근데 이런 건 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면피가 되요.	매뉴얼의 증빙 효과	수행 증빙자료
57	보건관리자	이걸 만약에 건강관리실에 제출해 주면 우리도	매뉴얼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58	보건관리자	신규 기 입사자에 대해서 검진이라든지 교육이 돼 있는지 그것도 체크는	신규자 산업 보건사항 확인	신규작업자
59	보건관리자	(근로자가) 신규 채용됐을 때 잘 챙겨야 하는데...	신규자 관리의 중요성	
60	보건관리자	신규작업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규 작업자의 확인필요	
61	보건관리자	(근로자들이)처음 업무 하는 것이 있으니	신규 업무에 위험	
62	보건관리자	오늘은 임시 작업이라	임시 작업	
63	협력업체	(노동부 감사오면)기본적으로 보면 조직도를 봐.	안전보건조직도 확인	안전보건조직
64	협력업체	조직도를 보고 그분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조직도에 맞춰서	조직도로 역할 구분	
65	협력업체	보건 담당자 관리자 직책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역할 부여의 모호	
66	보건관리자	근데 그거는 안전 쪽이야 이렇게 (말해요)	안전과 보건의 분리 모호	안전 보건의 협력
67	보건관리자	안전 보건의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힘을 실어서 시킬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68	보건관리자	좀 전에 다른 그런 비슷한 생각했다가 이건 안전이네 싶어갖고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69	보건관리자	뭐 질병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고 난 사람밖에 모르지.	안전보건 역할 분리	업무 관련 질병 관리
70	협력업체	그렇게 급성 중독으로 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제 마셔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최근에 있었고	용기 표지 미부착 문제	
71	보건관리자	옥외작업자잖아요.	옥외작업자 관리	
72	보건관리자	온열 질환 요즘에 더우니까	온냉질환 관리 중요	
73	협력업체	20건 정도씩 평균 무조건 지게차가 맞아요 밀폐 공간 2개예요.	유해위험작업 인지	
74	보건관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교대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채널로 소통	의사소통
75	보건관리자	저는 문자 예약 문자를 많이 보내요.	문자로 소통	
76	보건관리자	카톡방이 훨씬 편하죠	카톡방 활용	
77	보건관리자	상담하도록 문자를 보내요. 미리 예약 문자를 와서 상담 의사선생님한테 상담하라고	예약문자 활용	
78	협력업체	1번 2번 1번은 1번하고 교대하고 2번은 2번끼리 교대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뭐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맞교대 작업자 간 인계	
79	협력업체	인계는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1대1로 하는 거고	맞교대 작업자 인계	
80	보건관리자	그 협력업체의 관장들을 관리하는 그쪽 물어봐야 되나	협력업체와의 소통의 모호성	
81	협력업체	경고 표지를 붙여야 되는 거부터 일단 가능한 거야	안전보건 인식 방법의 선택	
82	보건관리자	(대리점)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대리점 관리의 어려움	
83	보건관리자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채널로	카카오채널 활용	
84	협력업체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기가 저기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근로자의 관리자 의식	인식전환 (근로자)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85	협력업체	인식이 바뀌어야지 인식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위험하게 행동 안 하지	근로자의 안전의식 요구	
86	협력업체	열에 3명 와요 7명 안 와요. 귀찮다고 바쁘다고 안 와요.	건강상담의 어려움	
87	협력업체	관리 감독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주분이 그걸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	관리감독자 역할 지원요구	인식향상 (사업주)
88	보건관리자	사업주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주 관심 부족	
89	보건관리자	오늘 작업 시 주의할 사항 조금 위험한 사항 이런 걸 하면은 반장님이나 이런 거	반장님의 역할	작업 전 교육
90	보건관리자	오늘의 위험작업 이런 거 알게 할 수도...	매뉴얼의 교육 효과 기대감	
91	보건관리자	필요한 보호구까지 해놓으면은	보호구착용 확인 필요성	
92	보건관리자	뭐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기타 오늘 업무 중에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93	보건관리자	이런 거 조심해라라고 그게 안전 교육이 되잖아요	구체적 안전교육	
94	보건관리자	반장님이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대부분	반장님 역할	
95	보건관리자	비정형 작업이긴 한데 그 말이 좀 어려워지고	비정형 작업자 교육의 어려움	재해지표 관리
96	보건관리자	통계 관리하는 하죠	통계관리 업무 수행	
97	보건관리자	그 작업에서 다쳐서라든지 그런 사람 다칠 경우를 이렇게 하나 넣고	사고 건수 기록지 활용	질병자 관리
98	보건관리자	(아프다고)흔적을 남기는 거니까	질병 노출의 부담감	
99	보건관리자	안 좋은 사람이 안 좋다고 말을 할까요?	질병 노출의 부담감	
100	보건관리자	몸이 아픈 사람, 재해자가 있는지(확인이 필요)	질병자 확인의 중요성	
101	보건관리자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 체크이 안 될 거요. 다 아파야 얘기하지.	질병자 확인의 한계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02	보건관리자	실질적으로 반장님이 질환자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 않잖아요		
103	보건관리자	출근하고 2시간 이내에 건강관리실에 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자 건강상태의 확인	
104	보건관리자	거기(체크리스트)다가 지각했으면 지각 근데 그 싫어할 거예요	출근관리에 대한 부담	출근자 관리
105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은 그냥 살짝살짝 봐주죠	출근관리의 부정확함	
106	협력업체	협력업체를 한 번에 다 모아서 협의회 하는데	비효율적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107	협력업체	협력업체에 하도록 독려해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협력업체 독려	
108	보건관리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증상 호소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보건관리의 한계	

2)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의 어려움(FGI)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	보건관리자	개인 정보 때문에...		
2	협력업체	검진 과격 갖고 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 안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개인정보 활용
3	협력업체	회사는 점점 어려워들 지는데...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4	보건관리자	관리 감독자와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라인이 사실 바쁘거든요.		
5	협력업체	담당자가 그거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담당자의 시간부족	관리 감독자 업무 부담
6	협력업체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냐고		
7	협력업체	시작이 쉽지가 않지. 이제 자기 일 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	협력업체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 감독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자가 교육을 이틀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감독자 시간부족	
9	협력업체	(고령 근로자가 많아)머릿속에는 이제 딱히	나이 많은	근로자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나오지 않죠.	근로자의 어려움	고령화
10	협력업체	이게 대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주 연령층이 고령화돼요.	고령화되는 연령층	
11	협력업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이 줄어듦	
12	보건관리자	그분들은 이 핸드폰도 잘 제대로 못하시는데 안 되죠. 아직은 나이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기기 작동을 잘 못함	
13	보건관리자	파견 업체 그 사람들도 고령자잖아요.	고령자가 많은 파견근로자	
14	보건관리자	미워하고 배제하는데 어 간호사 막 이러면서... 이게 질투를 하는지	간호사의 직종 간 갈등	타 직종 간 갈등
15	보건관리자	위생 기사가... 책상도 안 주고 배치도 안 해 놓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해줬다고...		
16	보건관리자	간호사 출신들은 그래서 왜냐하면 선호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똥똥 뭉쳐가지고		
17	보건관리자	그냥 자기도 귀찮으니까(보건관리자에게 떠맡기는...)		
18	보건관리자	팀즈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을 선호하니까 배제를 하는 거야.		
19	보건관리자	기업에서는 그거 발표하는 것은 누가 누가 발표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업무성과	
20	보건관리자	내가 두세 달 엄청 고생해 놓은 거를 포장해 놓고 그런 거		
21	보건관리자	진짜 이상하다고 진짜 괴로워요.		
22	보건관리자	협력업체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 관리해요.	협력업체 관리의 부담	협력업체 관리의 부담
23	협력업체	맨날 평균적으로 40분쯤 매년 돌아가시는데	사망사고의 위험	
24	협력업체	1년에 보통 사망사고 40건 정도 나는 게 있거든요.		
25	보건관리자	아프다고 하는데 막 힘들게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대요.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26	보건관리자	사실은 직업병 그 우리 산재 났을 때 사실은 너무 너무 억울했거든요.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부담	
27	보건관리자	조금 억울한 게 많아요.		

3)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의 개선요구(FGI)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	보건관리자	개인 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의 한계	개인정보 활용
2	협력업체	검진 과격 갖고 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 안 받아서...		
1	보건관리자	업무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 근데 그거를 나도 느껴. 난 내 자신을 느껴요.	나이 들며 업무능력이 저하됨	의사소통
2	보건관리자	젊은 애들이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자기 자기 영역에 대해서 엄청 강한데	젊은 보건관리 자와의 비교	
3	보건관리자	팀즈 이런 것도 활용하려면은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보건 관리자들도 많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감	
4	보건관리자	팀즈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5	보건관리자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로 해야 해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	
6	보건관리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좋긴 할 텐데 그 시스템 구축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보건관리 시스템 기선 요구	자율 관리 시스템
7	협력업체	중처법 대상이 점점 많아질 테니 자율 안전 보건체계 구축은 필요	자율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필요성	
8	협력업체	이제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고	시스템 구축 필요	
9	협력업체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시스템화해야 하는 거지요.	시스템강화	
10	보건관리자	상담하라고 의무를 부과를 시키면(하지 않을까)	의무적 건강 상담의 필요	제도의 강제성

연번	응답자	주요 인터뷰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11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사항들이)법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법에 의존	강화	
12	보건관리자	의무로 부과하면 다 의무적으로 다	의무적 건강 상담의 필요		
13	협력업체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게 이게 딱 법을 딱 정해놔야 돼요.	법적 효력		
14	보건관리자	이거 하면은 저는 전국에 뿌려서 당장 이거 하고 싶어요.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한 기대감	표준화된 양식 활용	
15	보건관리자	청소하면은 거기에 체크하는 거 있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6	보건관리자	체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모르면은 알아라도 볼 수 있잖아요.			
17	보건관리자	구글 설문지라든지 네이버 설문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체크리스트 활용의 편리성		
18	보건관리자	작업자 몇 명 이런 걸 쓸 수 있는 칸도 넣어야...	작업자 파악의 중요성		
19	보건관리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관리가 될까 싶은 게	매뉴얼 관리의 모호함		
20	보건관리자	버스 경비 식당은 아예 아예 관리감독자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협력업체 범위 무지	협력업체 범위	
21	보건관리자	진짜 청소 돌아가신 분은 큰일 날 뻔했군요. 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면서			
22	보건관리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협력업체는			
23	보건관리자	협력업체는 저희 생산하고 관련 있는 업체인 거죠.			
24	보건관리자	건물 주인은 해당 안 돼요.	협력업체 범주의 모호성		
25	보건관리자	경비도 하던데 그렇죠.			
26	보건관리자	협의체에 경비 미화 식당 다 들어와요?			
27	보건관리자	건물주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건물주 원청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4) 협력업체 보건관리 내용 요구도(설문조사 결과)

연번	항 목	구분	필요한 정도 빈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조퇴 근로자 현황 파악	모기업	53(35.57)	60(40.27)	29(19.46)	6(4.03)	1(0.67)
		협력업체	31(36.47)	35(41.18)	16(41.18)	2(2.35)	1(1.18)
2	(불안정한 상태 등으로)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	모기업	81(54.36)	53(36.24)	13(8.72)	1(0.67)	1(0.67)
		협력업체	32(37.65)	34(35.57)	14(16.47)	3(3.53)	2(2.35)
3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작업 내용이 바뀐 근로자	모기업	83(55.70)	54(36.24)	11(7.38)	1(0.67)	0(0.00)
		협력업체	44(51.76)	30(35.29)	8(9.41)	3(3.53)	0(0.00)
4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신규 채용 근로자	모기업	85(57.05)	54(36.24)	9(6.04)	0(0.00)	1(0.67)
		협력업체	42(49.41)	34(40.00)	8(9.41)	1(1.18)	0(0.00)
5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주의사항 설명	모기업	101(67.79)	42(28.19)	5(3.36)	1(0.67)	0(0.00)
		협력업체	50(58.82)	27(31.76)	8(9.41)	0(0.00)	0(0.00)
6	배치 전 검진 실시*	모기업	98(65.77)	42(28.19)	9(6.04)	0(0.00)	0(0.00)
		협력업체	38(44.71)	35(41.18)	10(11.76)	2(2.35)	0(0.00)
7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모기업	83(55.70)	57(38.26)	8(5.37)	0(0.00)	1(0.67)
		협력업체	39(45.88)	38(44.71)	6(7.06)	2(2.35)	0(0.00)
8	뇌심혈관질환 예방 자료 게시나 정보제공	모기업	75(50.34)	63(42.28)	9(6.04)	1(0.67)	1(0.67)
		협력업체	28(32.94)	47(55.29)	9(10.59)	1(1.18)	0(0.00)
9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모기업	66(44.30)	66(44.30)	13(8.72)	3(2.01)	1(0.67)
		협력업체	23(27.06)	49(57.65)	13(15.29)	0(0.00)	0(0.00)
10	적합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모기업	105(70.47)	39(26.17)	5(3.36)	0(0.00)	0(0.00)
		협력업체	55(64.71)	24(28.24)	6(7.06)	0(0.00)	0(0.00)
11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MSDS) 게시	모기업	98(65.77)	44(29.53)	5(3.36)	1(0.67)	1(0.67)
		협력업체	42(49.41)	33(38.82)	9(10.59)	1(1.18)	0(0.00)
12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모기업	87(58.39)	50(33.56)	11(7.38)	0(0.00)	1(0.67)
		협력업체	34(40.00)	33(38.82)	16(18.82)	2(2.35)	0(0.00)
13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	모기업	97(65.10)	46(30.87)	6(4.03)	0(0.00)	0(0.00)
		협력업체	43(50.59)	34(40.00)	8(9.41)	0(0.00)	0(0.00)
1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등 조치-일반 및 특수검진	모기업	86(57.72)	51(34.23)	11(7.38)	1(0.67)	0(0.00)
		협력업체	39(45.88)	32(37.65)	13(15.29)	1(1.18)	0(0.00)
15	작업장 환기장치 작동상태 파악	모기업	90(60.40)	47(31.54)	11(7.38)	0(0.00)	1(0.67)
		협력업체	41(48.24)	29(34.12)	13(15.29)	2(2.35)	0(0.00)
16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	모기업	71(47.65)	64(42.95)	12(8.05)	2(1.34)	0(0.00)
		협력업체	32(37.65)	43(50.59)	9(10.59)	1(1.18)	0(0.00)
17	옥외근로자 작업환경 파악 및 조치	모기업	78(52.35)	58(38.93)	11(7.38)	2(1.34)	0(0.00)
		협력업체	38(44.71)	37(43.53)	9(10.59)	1(1.18)	0(0.00)

연번	항 목	구분	필요한 정도 빈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작업장 안전·위생상태 파악 (미끄럼, 낙하물, 해충 등)*	모기업	91(61.07)	51(34.23)	7(4.70)	0(0.00)	0(0.00)
		협력업체	42(49.41)	31(36.47)	12(14.12)	0(0.00)	0(0.00)
19	작업 공간 정리정돈 상태파악	모기업	92(61.74)	47(31.54)	10(6.71)	0(0.00)	0(0.00)
		협력업체	42(49.41)	30(35.29)	13(15.29)	0(0.00)	0(0.00)
20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모기업	87(58.39)	51(34.23)	10(6.71)	1(0.67)	0(0.00)
		협력업체	38(44.71)	34(40.00)	13(15.29)	0(0.00)	0(0.00)
21	안전보건 표지판 게시 및 게시상태 확인	모기업	73(48.99)	63(42.28)	12(8.05)	1(0.67)	0(0.00)
		협력업체	37(43.53)	36(42.35)	12(14.12)	0(0.00)	0(0.00)
2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확인	모기업	70(46.98)	56(37.58)	22(14.77)	1(0.67)	0(0.00)
		협력업체	27(31.76)	41(48.24)	16(18.82)	1(1.18)	0(0.00)
23	모기업(원청)과 정기회의 및 회의준비 (모기업 협력회의) 및 결과의 조치*	모기업	65(43.62)	69(46.31)	11(7.38)	4(2.68)	0(0.00)
		협력업체	24(28.24)	43(50.59)	17(20.00)	1(1.18)	0(0.00)
24	사업장 순회점검	모기업	87(58.39)	49(32.89)	12(8.05)	1(0.67)	0(0.00)
		협력업체	38(44.71)	33(38.82)	13(15.29)	1(1.18)	0(0.00)
25	보건교육실시 및 결과의 보관*	모기업	71(47.65)	63(42.28)	15(10.07)	0(0.00)	0(0.00)
		협력업체	34(40.00)	31(36.47)	20(23.53)	0(0.00)	0(0.00)
26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모기업	91(61.07)	51(34.23)	7(4.70)	0(0.00)	0(0.00)
		협력업체	37(43.53)	34(40.00)	13(15.29)	1(1.18)	0(0.00)
27	산업보건관리조직 구성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모기업	83(55.70)	57(38.26)	6(4.03)	3(2.01)	0(0.00)
		협력업체	34(40.00)	27(31.76)	24(28.24)	0(0.00)	0(0.00)
28	응급의료 비상연락망 관리*	모기업	95(63.76)	46(30.87)	7(4.70)	1(0.67)	0(0.00)
		협력업체	38(44.71)	31(36.47)	16(18.82)	0(0.00)	0(0.00)

5)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업무별 담당자

연번	항목	기업	빈도(%)				p-value (χ^2 -test)
			근로자 개인	조(반)장	현장 책임자	시무직 관리자	사업주
1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조퇴 근로자 현황 파악	모기업	5(3.6)	46(32.9)	66(47.1)	21(15.0)	2(1.4)
		협력업체	4(4.9)	19(23.2)	37(45.1)	21(25.6)	1(1.2)
2	(불안정한 상태 등으로)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	모기업	3(2.1)	62(42.8)	63(43.5)	11(7.6)	6(4.1)
		협력업체	3(3.8)	19(23.8)	49(61.3)	6(7.5)	3(3.8)
3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신규입사 근로자	모기업	2(1.4)	60(41.1)	74(50.7)	7(4.8)	3(2.1)
		협력업체	3(3.7)	24(29.3)	44(53.7)	8(9.8)	3(3.7)
4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신규 채용 근로자*	모기업	1(0.7)	65(44.5)	65(44.5)	12(8.2)	3(2.1)
		협력업체	3(3.6)	24(28.6)	40(47.6)	11(13.1)	6(7.1)
5	당일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	모기업	2(1.4)	61(41.5)	79(53.7)	5(3.4)	0(0.0)
		협력업체	5(5.9)	33(38.8)	39(45.9)	5(5.9)	3(3.5)
6	배치 전 감진 실시 여부 - 신규입사자, 작업 전환자	모기업	5(3.6)	24(17.4)	45(32.6)	55(39.9)	9(6.5)
		협력업체	6(7.4)	11(13.6)	30(37.0)	30(37.0)	4(4.9)
7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칙 게시나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모기업	24(16.4)	54(37.0)	56(38.4)	11(7.5)	1(0.7)
		협력업체	15(18.3)	30(36.6)	28(34.2)	8(9.8)	1(1.2)
8	뇌심혈관질환 예방 자료 게시나 정보제공	모기업	6(4.4)	13(9.6)	41(30.2)	62(45.6)	14(10.3)
		협력업체	4(4.9)	8(9.8)	27(32.9)	37(45.1)	6(7.3)
9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자료 게시나 정보제공	모기업	4(3.0)	10(7.4)	43(31.9)	62(45.9)	16(11.9)
		협력업체	3(3.6)	7(8.4)	31(37.4)	36(43.4)	6(7.2)
10	적합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귀마개,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모기업	18(12.2)	51(34.7)	65(44.2)	8(5.4)	5(3.4)
		협력업체	16(18.8)	31(36.5)	30(35.3)	6(7.1)	2(2.4)
11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MSDS) 게시, *해당작업 시	모기업	6(4.3)	30(21.3)	68(48.2)	34(24.1)	3(2.1)
		협력업체	5(6.0)	17(20.5)	42(50.6)	15(18.1)	4(4.8)
12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모기업	0(0.0)	14(10.2)	64(46.7)	35(25.6)	24(17.5)
		협력업체	2(2.4)	12(14.5)	37(44.6)	19(22.9)	13(15.7)
13	간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 -일반 및 특수감진	모기업	10(7.3)	14(10.2)	26(19.0)	68(49.6)	19(13.9)
		협력업체	3(3.6)	5(6.0)	25(30.1)	39(47.0)	11(13.3)
14	간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등 조치 -일반 및 특수감진	모기업	7(5.5)	5(3.9)	33(25.8)	64(50.0)	19(14.8)
		협력업체	7(8.9)	4(5.1)	25(31.7)	32(40.5)	11(13.9)
15	작업장 환기장치 작동상태 파악(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모기업	9(6.3)	28(19.6)	85(59.4)	12(8.4)	9(6.3)
		협력업체	8(9.8)	21(25.6)	42(51.2)	6(7.3)	5(6.1)
16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냉·온방 장치 작동상태)	모기업	14(9.7)	39(26.9)	76(62.4)	8(5.5)	8(5.5)
		협력업체	10(12.1)	24(28.9)	41(49.4)	6(7.2)	2(2.4)
17	옥외근로자 작업환경 파악 및 조치(미세먼지, 냉·온열질환 예방) *	모기업	5(3.5)	29(20.4)	91(64.1)	8(5.6)	9(6.3)
		협력업체	9(10.7)	27(32.1)	42(50.0)	5(6.0)	1(1.2)
18	작업장 안전 -위생상태 파악(미끄럼, 낙하물, 해충 등)	모기업	16(11)	32(22.1)	89(61.4)	3(2.1)	5(3.5)
		협력업체	14(16.5)	28(32.9)	40(47.1)	2(2.4)	1(1.2)
19	작업 공구 정리정돈 상태파악(적정 위치 및 정리정돈)	모기업	57(38.8)	41(27.9)	48(32.7)	10(7)	0(0.0)
		협력업체	33(38.8)	24(28.2)	24(28.2)	4(4.7)	0(0.0)
20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모기업	11(7.8)	17(12.1)	66(46.8)	25(17.7)	22(15.6)
		협력업체	7(8.2)	10(11.8)	45(62.9)	14(16.5)	9(10.6)
21	안전보건 표지판 게시 및 게시상태 확인	모기업	7(4.9)	21(14.7)	75(62.5)	30(21)	10(7.0)
		협력업체	7(8.2)	13(15.3)	45(62.9)	16(18.8)	4(4.7)

2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확인	모기업 협력업체	10(6.9) 6(7.1)	10(6.9) 8(9.5)	49(34.0) 28(33.3)	53(36.8) 28(33.3)	22(15.3) 14(16.7)	.951
23	모기업(원청)과 정기회의 및 회의준비(모기업 협력회의) 및 결과의 조치	모기업 협력업체	10(7) 2(2.4)	11(7.8) 5(6.0)	47(33.3) 36(43.4)	53(37.6) 26(31.3)	29(20.6) 14(16.9)	.443
24	사업장 순회점검	모기업 협력업체	10(7) 3(3.6)	17(12.3) 6(7.1)	84(60.9) 54(64.3)	21(15.2) 8(9.5)	15(10.9) 13(15.5)	.201
25	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의 보관*	모기업 협력업체	0(0.0) 4(4.8)	21(14.9) 5(6.0)	50(35.5) 27(32.1)	58(41.1) 43(51.2)	12(8.5) 5(6.0)	.016
26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모기업 협력업체	5(3.4) 3(3.6)	27(18.4) 12(14.3)	52(35.4) 38(45.2)	48(32.7) 24(28.6)	15(10.2) 7(8.3)	.671
27	산업보건관리조직 구성(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모기업 협력업체	10(7) 2(2.4)	13(9.0) 5(5.9)	46(31.9) 34(40.0)	42(29.2) 24(28.2)	42(29.2) 20(23.5)	.488
28	응급의료비상연락망 관리	모기업 협력업체	10(7) 2(2.4)	16(11.4) 11(13.1)	53(37.9) 38(45.2)	54(38.6) 29(34.5)	16(11.4) 4(4.8)	.319

*p<0.05

6)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확인주기

연번	항목	기업	빈도(%)						p-value (χ^2 -test)
			매일	매주	매달	3개월	6개월	1년	
1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조퇴 근로자 현황 파악	모기업	75(53.6)	9(6.4)	32(22.9)	9(6.4)	3(2.1)	0(0.0)	.162
		협력업체	38(46.3)	14(17.1)	18(22.0)	3(3.7)	0(0.0)	1(1.2)	
2	(불안정한 상태 등으로) 작업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 파악	모기업	74(51.0)	20(13.8)	21(14.5)	11(7.6)	3(2.1)	0(0.0)	.820
		협력업체	40(50.0)	13(16.3)	12(15.0)	5(6.3)	1(1.3)	0(0.0)	
3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신규인사 근로자	모기업	56(38.4)	25(17.1)	24(16.4)	11(7.5)	4(2.7)	0(0.0)	.166
		협력업체	24(29.3)	11(13.4)	24(29.3)	5(6.1)	4(4.9)	1(1.2)	
4	작업 미숙련자 파악 - 신규 채용 근로자	모기업	57(39.0)	18(12.3)	24(16.4)	10(6.9)	5(3.4)	0(0.0)	.242
		협력업체	26(31.0)	13(15.5)	22(26.2)	3(3.6)	3(3.6)	2(2.4)	
5	담당 업무 중 위험 작업 제시 및 주의사항 설명	모기업	89(60.5)	15(10.2)	4(2.7)	7(4.8)	1(0.7)	0(0.0)	.129
		협력업체	51(60.0)	14(16.5)	6(7.1)	2(2.4)	2(2.4)	1(1.2)	
6	배치 전 건강 실시 여부 - 신규 입사자, 작업 전환자	모기업	18(13.0)	20(14.5)	35(25.4)	13(9.4)	3(2.2)	4(2.9)	.724
		협력업체	15(18.5)	10(12.4)	22(27.2)	10(12.4)	3(3.7)	3(3.7)	
7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칙 제시나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모기업	84(57.5)	18(12.3)	12(8.2)	19(13.0)	0(0.0)	1(0.7)	.529
		협력업체	48(58.5)	11(13.4)	5(6.1)	9(11.0)	2(2.4)	2(2.4)	
8	근직활동제한 예방 자료 제시나 정보제공	모기업	9(6.6)	4(2.9)	37(27.2)	32(23.5)	26(19.1)	15(11.0)	.562
		협력업체	8(9.8)	3(3.7)	27(32.9)	17(20.7)	10(12.2)	6(7.3)	
9	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 예방 자료 제시나 정보제공	모기업	7(5.2)	2(1.5)	27(20.0)	34(25.2)	31(23.0)	22(16.3)	.144
		협력업체	8(9.6)	3(3.6)	26(31.3)	19(22.9)	11(13.3)	8(9.6)	
10	작업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귀마개, 마스크, 안전화 등)	모기업	92(62.6)	14(9.5)	14(9.5)	6(4.1)	5(3.4)	0(0.0)	.976
		협력업체	52(61.2)	8(9.4)	10(11.8)	2(2.4)	2(2.4)	0(0.0)	
11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칙(MSDS) 제시, 해당작업 시*	모기업	17(12.1)	15(10.6)	42(29.8)	17(12.1)	14(9.9)	10(7.3)	.003
		협력업체	18(21.7)	13(15.7)	14(16.9)	11(13.3)	6(7.2)	7(8.4)	
12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실시에 따른 조치*	모기업	6(4.4)	3(2.2)	15(11.0)	18(13.1)	63(46.0)	9(6.6)	.026
		협력업체	9(10.8)	4(4.8)	12(14.5)	14(16.9)	23(27.7)	13(15.7)	
13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의 확인 -일반 및 특수검진*	모기업	2(1.5)	8(5.8)	23(16.8)	24(17.5)	15(11.0)	35(25.6)	.010
		협력업체	4(4.8)	7(8.4)	7(8.4)	8(9.6)	19(22.9)	29(34.9)	
1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등 조치 -일반 및 특수검진	모기업	5(3.9)	5(4.7)	31(24.2)	22(17.2)	15(11.7)	23(18.0)	.172
		협력업체	6(7.6)	5(6.3)	12(15.2)	9(11.4)	15(19.0)	22(27.9)	
15	작업장 환기장치 작동상태 파악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모기업	43(30.1)	12(8.4)	33(23.1)	19(13.3)	16(11.2)	4(2.8)	.799
		협력업체	21(25.6)	10(12.2)	23(28.1)	10(12.2)	5(6.1)	4(4.9)	
16	작업장 적정온도 파악 (냉·온방 장치 가동상태)	모기업	70(48.3)	14(9.7)	17(11.7)	13(9.0)	14(9.7)	0(0.0)	.185
		협력업체	35(42.2)	12(14.5)	17(20.5)	5(6.0)	4(4.8)	2(2.4)	
17	육외근로자 작업환경 파악 및 조치 (미세먼지, 냉·온물질환 예방)	모기업	52(36.6)	22(15.5)	16(11.3)	12(8.5)	10(7.0)	0(0.0)	.492
		협력업체	32(38.1)	11(13.1)	16(19.1)	3(3.6)	5(6.0)	1(1.2)	
18	작업장 안전·위생상태 파악 (미끄럼, 낙하물, 해충 등)	모기업	79(54.5)	15(10.3)	20(13.8)	5(3.5)	2(1.4)	0(0.0)	.361
		협력업체	49(57.7)	11(12.9)	13(15.3)	1(1.2)	4(4.7)	0(0.0)	
19	작업 공간 청리정돈 상태파악 (작정 위치 및 정리정돈)	모기업	90(61.2)	18(12.2)	14(9.5)	5(3.4)	0(0.0)	15(10.2)	.126
		협력업체	51(60.0)	14(16.5)	6(7.1)	2(2.4)	4(4.7)	5(5.9)	
20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모기업	10(7.1)	9(6.4)	31(22.0)	19(13.5)	17(12.1)	21(14.9)	.368
		협력업체	14(16.5)	5(5.9)	16(18.8)	10(11.8)	15(17.7)	10(11.8)	
21	안전보건 표지판 제시 및 게시상태 확인	모기업	18(12.6)	14(9.8)	47(32.9)	23(16.1)	13(9.1)	2(1.4)	.454
		협력업체	13(15.3)	12(14.1)	21(24.7)	15(17.7)	9(10.6)	4(4.7)	

2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확인	모기업 협력업체	10(6.9) 5(6.0)	3(4.2) 8(9.5)	27(18.8) 17(20.2)	24(16.7) 14(16.7)	23(16.0) 17(20.2)	28(19.4) 11(13.1)	9(6.3) 5(6.0)	17(11.8) 7(8.3)	.655
23	모기업(원장)과 정기회의 및 회의 준비(모기업협력회의) 및 결과의 조치	모기업 협력업체	4(2.8) 5(6.0)	6(4.3) 4(4.8)	55(39.0) 30(36.1)	38(27) 25(30.1)	10(7.1) 3(3.6)	6(4.3) 5(6.0)	5(3.6) 2(2.4)	17(12.1) 9(10.8)	.849
24	사업정준화점검	모기업 협력업체	34(24.6) 22(26.2)	34(24.6) 15(19.1)	35(25.4) 23(27.4)	20(14.5) 8(9.5)	2(1.5) 2(2.4)	1(0.7) 3(3.6)	10(7.3) 6(7.1)	2(1.5) 4(4.8)	.471
25	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의 보관	모기업 협력업체	3(2.1) 3(3.6)	5(3.6) 3(3.6)	52(36.9) 31(36.9)	39(27.7) 23(27.4)	8(5.7) 6(7.1)	14(9.9) 8(9.5)	6(4.3) 4(4.8)	14(9.9) 6(7.1)	.993
26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모기업 협력업체	2(1.4) 3(3.6)	0(0.0) 2(2.4)	19(12.9) 12(14.3)	26(17.7) 12(14.3)	19(12.9) 16(19.1)	61(41.5) 29(34.5)	5(3.4) 3(3.6)	15(10.2) 7(8.3)	.393
27	산업보건관리조직 구성(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모기업 협력업체	2(1.4) 4(4.7)	4(2.8) 3(3.5)	17(11.8) 11(12.9)	35(24.3) 19(22.4)	19(13.2) 14(16.5)	42(29.2) 25(29.4)	9(6.3) 3(3.5)	16(11.1) 6(7.1)	.714
28	응급의료비상연락망 관리	모기업 협력업체	5(3.6) 7(8.3)	4(2.9) 2(2.4)	29(20.7) 19(22.6)	34(24.3) 16(19.1)	26(18.6) 14(16.7)	15(10.7) 13(15.5)	14(10.0) 8(9.5)	13(9.3) 5(6.0)	.684

*p<0.05

4. 협력업체 보건관리 우수사례

1) 근로자 마음을 움직이는 일터조성으로 건강관리 향상시키기

[개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877명의 본사 근로자,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5개 협력업체 근로자 190명과 외부협력업체 79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총괄팀장과 4명의 안전관리자, 2명의 보건관리자 등 총 7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환경에너지 경영방침으로 ‘내/외부 상황분석을 철저히 해서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인다’의 슬로건으로 전문기관을 적극적 활용하고 근로자의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여 직업병 Zero 전략으로 건강증진 보건 활동을 강화하였다.

높은 참여율과 흥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비흡연자와 함께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요구도가 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동료가 함께 금연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팀 활동으로 참여하고 성공 시에도 함께 포상함으로써 참여도와 흥미를 더하고 파트너십을 길러주는 프로그램과, 여성 전문형 시크릿 금연프로그램 및 2년 미만 재흡연자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였다.
- 운동프로그램의 편견을 배제하고 누구나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여 근력왕, 출석왕 포상을 신설하여 참여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한 운동프로그램 활동을 도입하였다.
- 교대근무로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형평성 향상으로 근로자 건강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였다.
- 선행적 작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법적 기준치 준수에 그치지 않고 소음호소 작업자 공정 전체를 대상,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청력보존프로그램과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위험공정의 선행적 관리 활동을 하였다.

-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수유부 근로자는 유해, 위험요인 미사용 공정으로의 전환배치와 야간작업 제외, 임신부 차량스 티커, ID카드 색깔 구분 등으로 모성과 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근로자건강검진 관련하여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 미수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장 내 유해인자 통합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며 부서이동예정 자는 자동알림 시스템 운영으로 검진누락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다.
- 유해인자 생산공정에 출입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간헐적인 유해인자 노출 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사전 건강보호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 건강증진 활동의 최대 효과를 보기위해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을 고 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새해에 금연시작, 여름휴가 전 운동프 로그램 시작, 여름엔 손씻기 캠페인, 늦가을에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으 로 최적의 시기를 공략하여 높은 참여율과 홍보전략을 활용하였다. 사 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직원이 많이 모이는 식당, 휴게실, 흡연장 등과 사내의 영향력 있는 경영진, 조합대표 관리자협의 회, 협력사 협의회에서 건강행동 수기 및 참여사례를 게시하고 조직 책 임자를 건강증진 활동 롤 모델로 설정하여 건강증진활동 홍보에 활용하 였다.
- 심리전을 활용한 건강관리 성과 높이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선착순, 참 여자의 특별혜택 제공하기, 홍보물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CPR 교육,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헌혈 등 생명존중활 동의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 미션 부여하기(식사, 운동일기작성, 걷기 5천보), 경쟁심리 활용(건강랭 킹제, 건강 포인트, 관내 사업장 친선대결), 체험형 프로모션(손씻기, 안 전교육장 암실체험장, 이동대차, 무소음, 무진동화 개선캠페인, 하루 금 연체험 캠페인)과 간접 체험형 프로모션(실제 참여자의 체험 수기, 성공

현황, 참여효과, 포상혜택) 등 게시판과 뉴스에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강화 활동을 하였다.



[모기업-협력업체 소통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

- 모바일, 비대면 헬스케어프로그램 활용, 통합보건관리시스템 개발 예정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안전작업허가시스템, 보건관리시스템 각각운영예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활용, 홍보물 제작 무료플랫폼 활용,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실속 높이기(금연지원센터, 중독관리센터, 국민체력10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한마음 혈액원, 기업단체 헌혈 지원, 계층별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구체화하여 관리수

준 향상, 생산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감독자 실무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다.

- 현장주관 안전보건 공유회 패트룰 운영지원 등으로 현장주도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보건 문화 내재화, 관리감독자 현장점검 실무 가이드 제정 및 배포, 현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우수보건 문화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나눔실천, 사업장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적극 참여 등, 보건관리자 능력 향상 활동을 하였다.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활동 결과

- 지역자원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참여율의 개선과 비흡연자를 참여시킨 후 금연성공률 개선되었고, 경영환경, 비대변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관리 사각지대의 형평성 개선으로 건강증진사업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근로자 보건활동 참여율 62.6%, 금연 성공률 28.1%, 교대근무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 28.3%).
- 향후 생산현장 근로자의 자발적 목표수립과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자율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를 넘어선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병원’

[개요]

직원 3,500명, 협력사 350명이 함께 근무하는 보건사업장으로 안전과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법규 제 준수, 안전한 병원 환경, 안전 문화의식 고취,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보건 관리활동으로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넘어선 재충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활동

- 직원의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상병자 업무 복귀 시 업무배치 적합성 면담을 실시하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갈등 발생시 직원전담 심리상담과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연계하고, 건강한 생활 복귀를 위한 ‘코로나19 치유프로그램’(원예치료, 셀프 치유 북카페, 심 케어 심리지원, 코로나19 극복 뉴스레터) 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여한 직원의 97%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모기업-협력업체 마음 건강 힐링 활동]

12주의 기적, 모바일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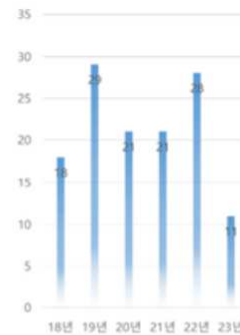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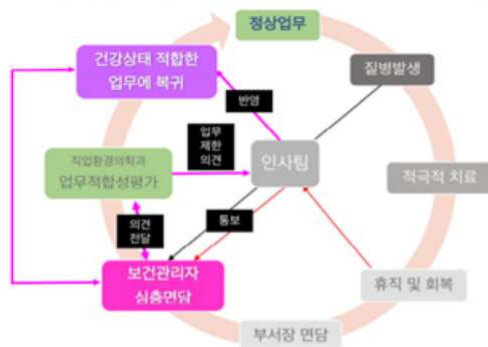
- 혈압기 혈당기, 체중계의 개별제공과 헬스코치 APP 연동 건강관리와 8주 동안 웰니스 건강식단을 주 2회 제공하여 생활습관개선 활동을 하였다. 검사결과에서 생활습관, 걸음 수, 측정기록의 미션성공 시 기프트상품 증정으로 참여도 증진 활동을 하였다.

- 복약습관, 식사습관, 운동습관, 정기검진(self care) 등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앱을 활용하였고, 혈압, 혈당, 체중조절, 목표, 건강메니저의 건강메시지 등으로 생활습관개선 활동을 지지하였으며, 기기를 활용한 측정기록표와, 운동기록, 식사기록, 건강메니저가 전송 메시지 확인 등 모바일앱을 활용한 횡수로 지표달성 성과로 분석한 결과 82%의 참여자에서 자가 생활습관 개선결과를 보였다. “Pleasure(즐겁게), Less calorie, Less sodium(열량과 염분은 적게), Alive(활력 넘치게), Together(동료와 함께), Easy(쉬운 방법으로), The 건강해집시다.”의 표어와 함께 음식별 열량을 제공하고 건강레시피 교실 등 식생활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보건관리자는 상병에서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의학과에 보건관리자의 면담의견을 개진한다

1개월 이상 상병 휴직 또는 건강문제로 인해 업무에 부적합하여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보건관리자 심층면담 및 업무적합성 평가 실시



건강레시피 교실 진행

일정: 10월 ~ 12월 (3차수) 16:00 ~ 17:00

장소: R스퀘어 직원식당 내 5라운지 ★강사 및 진행: 영양팀장

내용: 저칼로리 저염 드레싱 실습 및 체험

(저칼로리 허니머스터드 드레싱, 요거트 비트 드레싱, 저칼로리 발사믹 올리브 드레싱, 저염쌈장, 요거트 드레싱, 저칼로리 발사믹 크림 드레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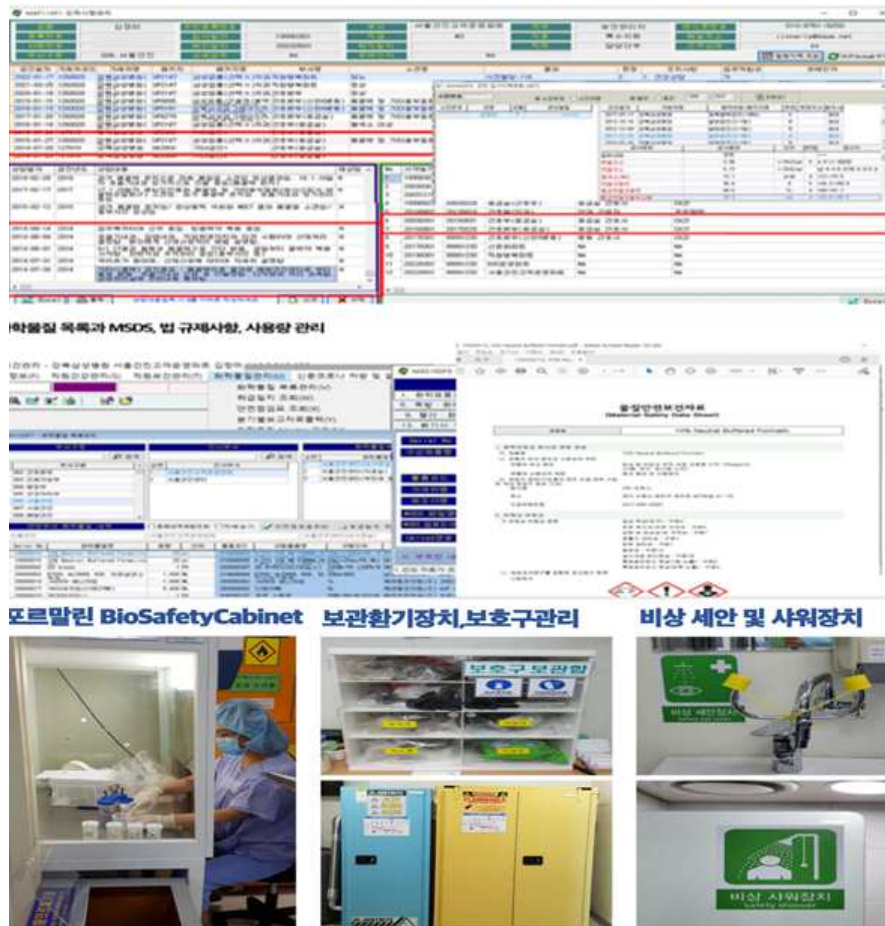
참석: 순환기내과 의사, 병동외래 간호사, 조무사, 지원이동반, 물리치료사, 약사, 진단검사 임상병리사, 원무접수 및 인사총무 행정직, 건진 등 약 60여명

평가: 전반적 만족도(100%) 실생활 활용도(100%) 건강 도움 정도(100%)



[모기업-협력업체 모바일 활용한 건강관리 활동]

- 유해화학물질 risk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수칙, 노출시 행동요령, 화학물질 유출보고서, 보관, 환기장치, 보호구 관리, 비상 세안 및 샤워장치등 관리와 인사 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직원 명단, 입·퇴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검진기록과 사후관리 면담내용 등의 관리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미검진 직원에게 안내문자 전송 등의 활동을 하였다. 관리절차는 사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안전, 보건담당자와 사전협의 후에 담당부서에게 전달하여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으로 작업환경 개선 활동]

-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직문화 진단과 행복 충전 카트라이더 게임과 경영진과 함께 정신건강 힐링캠프 활동 등으로 코로나 상황 내 직원의 누적된 피로와 조직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입사 5년 차 미만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사 자유 체험 활동과, 플라워 테라피, 소통의 저녁식사 등 경영진의 격려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였고,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직의 건강 정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우협의회와 모든 전 직원, 경영진이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영진과 함께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활동]

-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활동으로 조기 선별검사 실시와 물품지급, 직원 전용 휴게실, 릴렉스 룸 운영, 전동 안마의자, 네일케어 운영,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운영, 근력 강화 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압박 스타킹, 인간 공학적 마우스, 키보드 손목 받침대 등을 제공하였다.

□ 근골격계질환 조기선별 프로세스 구축



제 목 :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물품 지급 안내

하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인간공학적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품목

구 분	디자인	특 징
압박스타킹 (무릎형 살액)		· 종아리 압박력 우수 · 하지정맥류 예방효과
인간공학력 마우스 (유선)		인체공학력 디자인 모델명 : GM-M6800 출품코드 : 468000418
인간공학력 마우스 (무선)		인체공학력 디자인 모델명 : GM-AIRE M73 출품코드 : 468000419
키보드 손목 받침대		손바닥과 손목 보호 모델명 : WRS-01 출품코드 : 427000300

제 목 :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손목 받침용 마우스패드 지급)

직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전 스트레칭」 방법을 기재한 손목 받침용 마우스 패드를 지급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 받침용 마우스패드 1,000개 限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컴퓨터 4시간 이상 집중작업)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 권한
작업전 스트레칭 습관화를 위하여 고용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함

※ 컴퓨터 집중작업 직원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원 또는 부서
願하여 지급하며 건강의학본부의 경우 신문화파트 김경미 책임에게
메일 신청하는 부서에 대하여 선착순 배송예정(부서당 최대 10개팀)

□ 지급기간 : 4.19(목) ~ 25(수), 14:00 ~ 16:00 ※ 토요일 제외

□ 지급장소 : 건강관리실(외래동 5층 31번방)

□ 문 의 : 보건관리자 ☎ 1340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환경개선 활동]

3) 모기업과 협력사의 관심이 만들어낸 근무환경의 변화

개요

전력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는 발전회사로 1,233명의 협력사 직원과 1,234명의 본부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4명과 보건관리자 2명 외 등 총 81명의 안전보건담당 및 6개의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장 현황분석으로 보건관리 전략 확립

- 1,233명의 협력사 근로자는 출입 관리, 초소 근무, 기기 정비, 유해인 자 취급 등의 업무로 공생 협력이 필요하였다.
- 근무지의 특성상 건강관리실 활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불편함에 대한 안전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른 현장중심의 보건활동이 필요하였다.
- 작업장 소음이 지속적 발생하고, 80개소 이상의 밀폐공간 작업장이 있으며, 일반건강진단 C & D 판정자 비율이 50% 이상 발생하였고, 뇌심 혈관질환 발병 고위험이상자가 8% 이상 됨에 따라 건강관리와 작업환

경개선 활동이 요구되었으며, 경미한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과 3차 진료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전	
행복하고 건강한 새울본부	
목표	
- 직업성 질병 재해자수 "Zero" - 사고성 재해자 골든타임 확보	
추진전략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건강증진 활동 및 홍보를 통한 건강관리 인식 개선 - 한수원·협력사 협업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 -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으로 강도를 감소	
분야	중점 추진과제
작업환경 개선	-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개선활동 시행 - 안전보건 지침서의 실효성 확보
건강증진 활동	- 현장 중심의 보건관리 활동 시행 -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 시행
협력회사 협업	- 협력사와 함께하는 캠페인 및 교육훈련 시행 - 자원의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
응급의료 대응	- 지속적 응급의료 교육 시행 - 사내 구급차 적극 활용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상생하는 경영방침 정착]

■협력사와 함께하는 작업환경, 건강증진, 응급의료 대응 체계구축

- 작업환경개선 활동으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 활동과 실효성 있는 지침서의 확보를 위해 작업목록을 상시 공유하고, 화학물질 사고 시 대응 방법과 소음, 밀폐공간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지침서를 게시하고 안전보건 인식개선 홍보와, 평가지표에 안전보건 점수를 반영하였고, 노사 합동 현장 점검시행 활동을 하였다.
- 작업 내용은 인트라넷에서 전체 근로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었고, 작업수행 전 사전검토 회의와 회의 시 안전보건 준수사항에 대해 재강조하는 예방활동을 하였다.
- 관리시스템 등록필증 부착 제품만 사용, 자체 구매 불가, 정비용 화학물질 임시보관함을 운영하고, 월, 분기별 점검과 후드는 상시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

- 협력사와 함께 노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장비대여, 스마트 장비 보유 밀폐목록 최신화, 적정성 평가 시행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시행하였다.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

협력업체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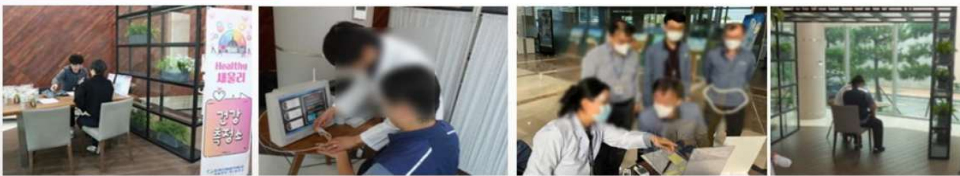
- 사업장의 특성상 건강관리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대상으로 월 1~2회 협력업체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동을 수행하였고,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뇌심혈관 고위험군 집중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온열질환 예방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정기)



유소견자/요관찰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시행(1~2회/월),
건강관리실이 멀어서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

찾아가는 건강관리(수시)



정기적 시행 이외에 **캠페인 형태**로 시행, 하루 동안 건강관리실과 멀리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로비 등에 상주하면서 건강상담 등 시행

[협력업체에 찾아가는 현장 건강관리서비스 활동]

-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해 스트레칭, 작업대 조절, 중량물 취급 관리 등을 협력사와 협업하여 캠페인, 교육훈련, 자원 공유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해당 활동으로 최초 출입자 교육, self 체크리스트,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지속 운영과 부서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건강증진 활동에 반영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질환예방 활동]

-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활동으로 24개의 장소에 AED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출입문,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설치 위치를 부착하여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지속적인 응급의료교육 시행, 사내 구급차를 응급 시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계시를 하였고, 응급신고 번호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구급차 제세동기 운영, 구조 요청기 지급, 부서별 구급함 운영, 밀폐공간 가스 누출 체험교육 운영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협력업체 재난·안전관리 활동]

-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즉시 개선 활동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안전보건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발전운영개선시스템

2. 우려사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용역직 안전 ☐ 발전운영 ☐ 장비관리 ☒ 안전인원 ☐ 화재 ☐ 기타

우려사항 내용 성취 실적에 따라 기록, 필요시 발파 작업 가능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 불거리를 유의 유해화물들을 저장함으로 위험한 비상상황에 고장

나. 문제점, 유해화물들을 누출시 비상상황에 의지함으로써 안전 조종자들의 어려움을 뜻 2년 발파 장기간사수검관한 조치 필요

-조치 요청사항 : 비상안전벨이 경이요청

업무시스템을 이용한 의견제시 > 조치

인트라넷-즉문즉답

☞ '관망나 해당 관련 문서종류와 및 상시 응답자 전원 KPM4 링크크 적용

작성자	***[이명]	등록일	2021-09-01
진행상태	종료	종료일	

매일 근로자 안전지 발생이 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발전소는 다양한 작업자 및 임시 종업자가 매월 방문을 하고 있고, 발전소 종업자 및 임시종업자와 종업자간의 의사 소통은 원활 하므로, 소문한 형태로 된 발전소로, 안전을 위한 링크 크 KPM4에 대한 링크 크를 제공하고 종업자는 임시직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방문 발전소에 안전지 발생시 발전소 운영에 차명직업으로 발전소를 종업하는 한 종업자가 KPM4 링크 크를 제공하고 종업자를 찾아와 조치 필요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제시 > 조치

안전보건활동 평가

내부 경영실적 평가에 안전보건 점수 반영, 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주기적 성과측정/모니터링, 안전보건지침서 54개 운영, 연간 추진계획 수립(본부>부서별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과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보건관리활동]

협력사와 함께한 보건관리 활동 결과를 제시하면

- 직업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의 감소와 소음장소 목록작성으로 작업환경개선 활동을 하였다.
- 밀폐공간 작업장소 적정성 평가로 95% 이상 밀폐공간 목록 최신화로 혼돈을 방지하였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등록필증과 MSDS 대조 발암물질 함유 제품을 원천 차단하고, 개정판 MSDS 비치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작업목록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시로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협력업체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통해 32% 건강상담과 간이검사를 시행하였다.
- 작업환경개선으로 95%이상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공생협력프로그램(14개사) A등급 유지, KOSHA-MS 인증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 뇌심혈관질환 집중관리 진행으로 현재 발병위험도에서 개별 10% 이상 감소효과를 보았고 인근 응급실과 연계하여 신속 후송으로 후유증의 최소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전보건 인식개선, 홍보




Safety Moment

Total: 700 / Now page: 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월 관리자관리 및 Safety Moment 열람 알림		배정경	2023-05
775 [SM-230321] 발암물질관리-선진 조치(차량 대기)		한봉근	2023-03
774 [SM-230320] 구조기물부 Safety Moment		박지현	2023-03
773 [SM-230317]급회PSC Safety Moment		급회PSC	2023-03
772 [2023.3.16. 목] 계측제작부 Safety Moment		김정영	2023-03
771 [SM-230314] 전기부 Safety Moment		김경태	2023-03
770 [SM-230310]한전KPS Safety Moment_전기부		한전KPS	2023-03

>>> 건강생활실천 현수막 게시(분기)



>>> 각종 회의 시 안전보건관련 Safety Moment 발표, 이후 인트라넷을 통한 내용 공유

[안전보건 인식개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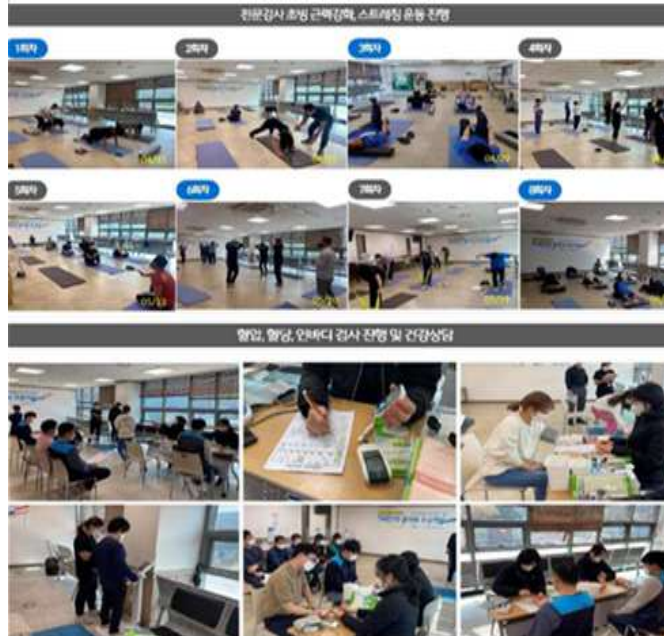
4) 공생 협력으로 건강 수준 UP!

[개요]

물류서비스 운송업체로 안전, 보건, 환경 중시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 지구환경 보호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2인의 안전담당자와 1명의 소방담당, 보건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

-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야간작업 등으로 흡연율 60%, 근골격계질환 관리대상자 20% 과체중 대상 54% 86%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 건강 관리 필요성의 인식 활동과 작업성질환 예방과 만성질환자 관리의 건강 증진 활동이 요구되었다. 전체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45%에서 금연프로그램을, 60%에서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64% 근로자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 이를 토대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뇌심혈관계질환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 등의 활동을 계획하였다. 인근 지역보건기관과 연계하여 테이핑 교육, 뇌심혈관질환예방 관리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고, 전년도 금연성공자의 후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연 이벤트 활동을 하였다. 근력강화운동 프로그램, 운동처방 프로그램 활동, 레드서클 캠페인,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조사 후 마음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체성분 측정, 비만영양 관련 교육 활동을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활동]

작업환경개선 활동과 근골격계 예방활동으로 피로예방 매트를 근로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선호물품으로 설치하여 건강예방 활동을 하였다.



[그림]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활동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한 보건관리 활동 결과를 제시하면,

-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 결과로 70%에서 운동, 영양교육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65%가 마음 토크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예방프로그램의 걷기 챌린지는 50%에서 만족한다는 성과를 올렸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참여자의 85%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한 점과 사전 사업장 내 특성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과 보상체계를 강화시킨 점이 성과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성공 요인	
01 금연 프로그램		01 지역 보건 의료기관 및 지역단체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평가 및 문제점	개선사항 및 적용	02 프로그램별 다양한 중점과제 추진	
- 대전세종 금연지원센터와 MOU협약 진행 - 2021년 진행시 대다수가 교대근무(야간)로 인해 상담 진행의 어려움	- 2022년 금연프로그램 시작 전 상담시간을 17시 ~19시로 진행시간 변경 - 주간 근무자들은 퇴근 전 상담전행 야간 근무자들은 출근 전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상담 시간을 조정 협의	03 SWOT분석을 통한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02 운동 프로그램		04 전년도 대비 참여 지원 물품 및 보상체계 강화	
평가 및 문제점	개선사항 및 적용	05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인바디 측정 후 근력강화 운동 진행 (8회) - 운동 진행 초기 운동 강도가 높아서 오후 근무의 집중 어려움	- 강사님과 운동프로그램 구성 내용 및 강도 조절 필요성 협의하여 3회차부터 운동 강도 낮춰서 진행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활동]

5) 모기업의 협력업체 건강관리체계 지원(신규관리자 중심으로) - 협력사와 함께하는 신규근로자 건강관리

[개요]

공사기간 2년 6월, 2천억원 규모의 건축, 전기, 소방 협력회사와 안전보건의 정착을 위해 본사, 협력사가 안전보건업무점검 및 개선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 5명 외 노사협의체 근로자, 사용자측 위원 32명, 하부조직 7개팀(관리, 공무,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품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력업체의 건강관리체계 지원을 위해 모기업 보건관리자는 협력업체 신규근로자의 건강상태 평가를 통해 근로자 상담과 교육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 관리(고령자 채용지양, 건강민감군 작업배제)에서 능동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된 보건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모기업-협력업체 보건관리협의(협력사 고용주, 담당관리 감독자, 모기업 보건관리자)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초 배치주기에 따라 고혈압, 혈관 위험검사, 기타 질환 등의 증상, 관리상태, 진단결과 등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 주기적 모니터링, 상담일지 작성, 검진결과 보관 등의 업무를 공유하며 진행하고 있다.
- 특히 근로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근로시간, 작업환경 변경, 근무직군 조정 등 근로여건개선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본사 협력 상급병원의 예약대행 혹은 전문의 상담 연계 및 근로자 스스로 인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검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모기업 보건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 결과에 대해 개별 문자발송을 하고, 협력사 고용주, 담당관리감독자와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관련 건강정보와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모기업의 협력업체 건강관리지원 세부내용과 운영결과

-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신규근로자 건강평가 지원으로 양팔혈압 측정 후 결과에 따라 모기업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진료 지원과 인근 기관에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 직무스트레스 체크(만 60세 이상자), 심박수, 동맥혈관 탄성도 등 혈관 건강 측정 후에 혈관단계, 신체적 스트레스 정도, 이상 심박 수 상태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병원진료를 권유하고, 근로여건 개선조치 등 예방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건강관리에 참여한 근로자 중에서 동맥죽상경화증 조기발견으로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 건강하게 근무하는 사례보고 등이 있다.
-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개선활동으로 관절상태, 관절가동범위, 자세, 통증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지도, 수시 현장순회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 모니터링과 상담지도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통역교육 실시 등 취약근로자를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모든 근로자는 세이펜 스트레칭과 국민체력 100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악력,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심폐지구력, 하지근력 강화 등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 문진표, 추후관리 가이드를 개발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고성 요통,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 특별교육, 스마트 가스측정기, 보호구, 출입금지 A형간판 비치, 작업종료 후 건강상태 확인,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 명단작성 및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시트작성, 위험성 평가 시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주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작업별 VR 체험교육 등의 업무를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신규근로자 건강평가 및 상담 과정]

연구진

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희걸 (교수, 가천대학교)

연구원 : 이연숙 (조교수, 화성의과학대학교)

연구원 : 김지윤 (교수, 가천대학교)

연구원 : 임미영 (교수, 서일대학교)

연구원 : 김희량 (조교수, 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 강현선 (조교수, 군장대학교)

연구기간

2023. 06. 01. ~ 2023. 10. 3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 방안
(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615)

발 행 일 : 2023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가천대학교 교수 김희걸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55

팩 스 : 052-703-0335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782-93-5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